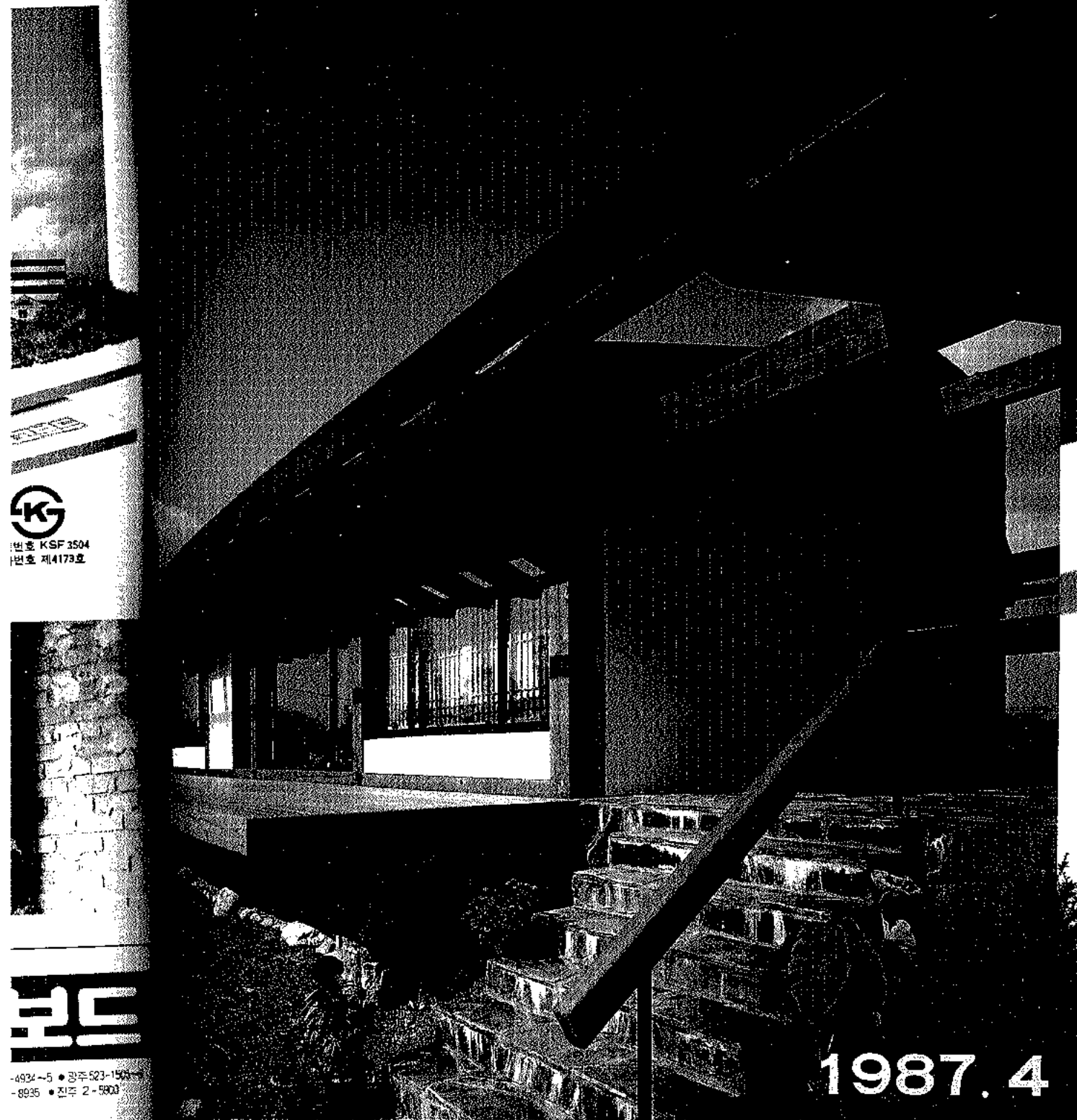


금강
eumkang Ltd.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APRIL 1987. NO.217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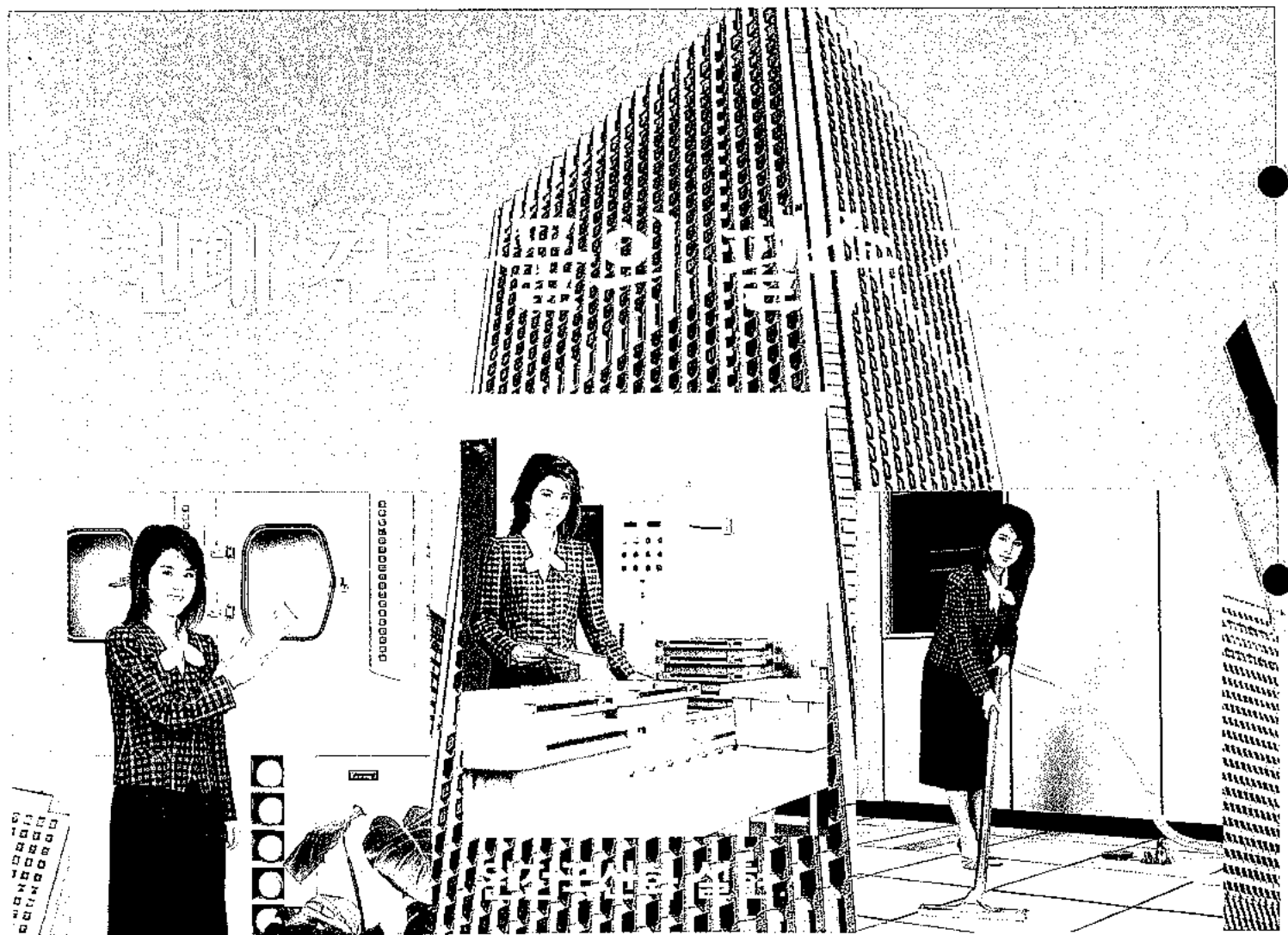


번호 KSF 3504
번호 제4173호

보드

-4834~5 • 광주 523-1500~9
-8935 • 전주 2-5800

1987. 4



「중외 에어슈터」는 첨단 O.A 시대를 리드하는 최신 설비!

■ 에어슈터란 각종 서류, 전표, 문서, 현금, X-Ray 필름 등을 보내고 싶은 층(層)의 방(房)까지 자동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최신 설비로 고급 인력의 시간 절약은 물론 전사원의 업무 능력 향상의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특징

- 각종 서류, 문서 등의 신속한 전달
- 사무자동화도 인건비, 관리유지비 절감
- 조작이 간편하며 극소음적 차지
- 기존 건물에도 사용 가능
- 서비스 및 이미지 향상

용도

- 병원, 호텔, 은행, 오피스빌딩, 공장, 경비장
- 유통기관, 보도기관, 도서관, 관공서 등

에어슈터

빌딩 및 공장 건물 속의 작은 트럭!

■ 「중외 버티컬 콘베어」는 중량 30kg 이하의 운송 물품을 원하는 층, 방까지 자동으로 신속, 정확하게 운송해 드리는 운송장비입니다.

특히 병원의 각종 약품, 은행, 오피스의 각종 종서적 및 장부류에서 공장에서의 각종 소형 운송물품을 신속하게 전달해주므로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특징

- 전자동 연속 작동으로 내량 운송 가능
- 사용, 취급이 간편함.
- 수직, 수평 이동이 가능함.
- 안전설계로 사고 방지
- 서비스 및 이미지 향상

용도

- 병원, 호텔, 은행, 오피스빌딩, 공장,
- 유통기관, 보도기관, 도서관, 관공서 등

버티컬 콘베어

현대인을 위한 건강 청소 중외 센츄럴 크리너!

■ 「센츄럴 크리너」란 종래의 습식 청소방식에서 탈피, 선진국형인 건식 청소 설비입니다.

건물이나 공장내에 산적해 있는 먼지나 오물을 자동으로 흡입식 공기 압력으로 완전 제거하는 최신 청소 장비입니다.

특징

-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 위생적입니다.
- 청소작업이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 서비스 및 이미지 향상

용도

- 병원, 호텔, 은행, 오피스빌딩, 공장,
- 유통기관, 보도기관, 도서관, 관공서 등

센츄럴 크리너

주식회사 중외상사

서울·동작구 신대방동 698 (대표) 841-1212, (직통) 841-2721~3

建築士の使命

張起仁

삼성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을 위시하여 각지방 도시를 돌아보면 팽창한 市街에도 놀라겠지만 대규모 고층빌딩과 아파트群이 들어선 것을 보면 감탄할 따름이다. 이들 建築群이 모두 우리 협회원인 建築士의 두뇌와 솜씨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면 더욱 찬사를 보내지 아니할 수가 없다.

건축사의 사명이 이처럼 완성된 것은 사회의 여건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건축사 각자의 刻苦努力한 결과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선진기술과 도전적으로 새로운 지혜와 참신한 기술의 연마에 힘쓴 結晶이라 하겠다. 이 우주공간에서 새롭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으로도 우리의 앞날에는 무한한 발전만이 있어야 한다.

이 땅에 근대적 건축설계업무가 시작되고 한국인 설계자가 등장한 것은 1920년대 이후이고 朝鮮市街地計劃會와 관계법이 제정공포된 것이 1930년대이다. 여기에서 建築代書士의 면허를 받아 설계업무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때의 큰 건축사사무소는 외국인(주로 일본인)이 경영하였고 한인으로는 朴吉龍 선생이 유일무이하게 그들과 손색없는 지위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그후 鐘路通에 한인 건축사사무소가 연이어 등장하였으며 이 시기에서부터 分讓韓屋의 건설이 가회동, 역바동과 기타 한인촌에 활발하여 졌다. 특히 신설동·안암동 일대의 도시계획사업이 실행되면서 한옥과 양옥(일본질층식)이 건설되기도 하였다. 그 건물의 종류로는 주택외에는 2층점포가 많고 목조보다는 벽돌조로 전환하는 시기였고 일반 사무실건축·병원건축 등은 철근콘크리트조 3·4층 정도이고 관공서로는 지방청사나 학교 건축이 많았다. 이후부터 철근콘크리트조의 현대식 건물과 현대고전양식건물이 유행되기에 이르렀다.

意匠構造面으로 살펴면 목조건축의 흠벽에서 시멘트벽(평벽)으로, 다음은 벽돌조·석조의 2·3층 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의 4·5층의 구조로 변천되었다. 여기 서양 고전건축의 意匠과 室内裝飾이 존중되었으며 현대성·모더니즘도 추구되었다. 목조트러스는 철재 앵글트러스로 바뀌고 목조마루바닥에서 철근콘크리트 슬랩바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 고금문화주택과 극장·미술관 등 대형 고금건축의 성행을 보게 되었다. 여기에는 석고조각이나 양옥의 고전 장식무늬가 필수적이었으며 곡선처리에 능해야 했다.

당시의 설계자는 一人全能이어야 했고 계획에서 의장설계·구조계산·시공도·적산시방서작성·허가수속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였다. 다만 대규모건물일 때에는 분업작업도 있었다.

이제 수십층이 되는 대형종합건축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으니 50년전의 건축과 비교하면 그 기술이 월등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건물의 설계는 분업적으로 해야하지만 책임자로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건축이란 인간생활을 담는 케이스로 생각하던 때는 옛날이고 이제는 생활자재를 알고 그 생활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대응하여 오래 평가받는 건축기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턴키베이스란 새로운 건설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하고는 있지만 공사 수주량, 건설업체의 설계팀의 완전확보 등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設計·檢證·審査팀의 구성 방법론이 확립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인가 한다. 결할기식의 무책임한 심사제도로서는 그 방대하고 오묘한 내용을 可否·優劣의 판단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를 전담하는 기구도 예산도 없이 몇몇 권위자의 피상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흔히 工事監督과 工事監理를 혼돈하고 있는 듯하다. 공사하자가 났을 때의

절대적 책임이 감독자에게 있다면 감리자는 그 보조적인 입장에 서게 되고 감리자가 최후책임자라면 공사감독은 집행절차에서부터 공사관리·예산통제·공사추진까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서는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한다.

건축물의 設計用役에 있어서의 公正去來란 用役費節減을 위한 人札制에 있는 것이 아니라 最適設計者를 선정하는 데에 있다. 건축은 충실한 내용과 질향상을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을 구하는 방법·수단으로 되어야 한다. 용역비절감의 가격경쟁으로서는 성실한 내용·향상된 질과 함께 창의적이고 예술성이 함유되는 작품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건축사 사무소의 대형화가 요구되고 또 바라는 바이지만 그 대형물의 용역건의 수지타산이 맞지 아니하면 無望한 일이며 턴키베이스 등의 시행에도 각 참가업체의 막대한 용역비 부담을 유발하는 손실을 감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비된 설계팀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발주량이 충분하여 허실되는 인건비·용역비가 가산되지 아니하면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도 턴키베이스의 성공도 불가능할 것이다.

설계업무는 한때 좋은 시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시기도 있을 것에 대비하여 어떠한 곤경에 이르더라도 堪耐하면서 새로운 개개로 이겨내야 한다. 아울러 동료동참에게도 도움을 베푸는 아량이 절실한 때이기도 하다. 침단을 알리는 신재료의 출현·공법의 개발 등과 아울러 전산화의 설계 기술에 재부자가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우리 사회의 선도자가 건축물이라면 새로운 기법으로 건축중흥을 일으키는 선각자로서 사회에 보답하는 길이 建築士의 使命이라 할 수 있다.



건축사

차 례

1987년 4 월호 (통권 217호)

표지설명: 삼하리 A씨댁
설계: 류춘수(건축사사무소 이공)
사진: 정장웅

발행인 안 가 태
편집 출판사업부

편집위원회

위원장 안 장 원
부위원장 김 린
위원 강 태 석
위원 변 용
위원 김 기 석
위원 박 영 호
위원 김 정 동

발행=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55
우편번호 135
전화: 서울(02) 581-5711(대)
5712, 5713, 5714
등록번호 제 라-1251
등록일자 1967년 3 월 23일
U.D.C. 69/72(054-2): 0612(519)
인쇄: 광문정판사
인쇄인: 전윤규

Publisher: An, Kie-Tae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Editorial Department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Ahn Chang Won
Vice Chairman: Kim Lin
Member: Kang, Tae-Suck
Byun, Yong
Kim, Ki-Seok
Park, Young-Ho
Kim, Chung-Dong

Editorial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Kangnam-gu, Seoul Korea
☎ Seoul 581-5711 ~ 5714
Zip Code: 135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J. D. C.: 69/72(054-2): 0612(519)

Print: Kwangmoon Printing Co.
Printer: Jeon Yun Kyu

3	論壇 建築士の使命.....	張起仁
6	1987年度 第1回 臨時總會開會辭 業務內容의 質을 높이자.....	安箕泰
	會員作品	
8	삼하리 A씨댁.....	柳春秀
10	경기도 기흥공동주택.....	公日坤
12	수유동 다세대 주택.....	韓忠國
14	군자동 주택.....	黃一仁
16	D연립주거단지.....	郭成文·趙龍植
18	상일동 벽산빌라.....	姜聲益
20	서초동 삼익빌라.....	朴相敦
22	哲學的 散策/建築은 무엇인가? ③ 建築이라는 藝術(Ⅲ).....	安秉義
26	建築紀行 ③ 藝術의 殿堂을 위한 資料紀行(Ⅱ).....	金錫澈
32	寄稿 大學施設計劃과 所要判斷方法.....	黃智顯
37	일하며 생각하며 봄벌이 있는날.....	李珏杓
38	이달의 詩 비둘기가 품고 있는 집.....	金琪碩
40	研究報告 建築과 造景.....	吳尚平
44	전시공간연출.....	韓道龍
48	아파트設計改善 및 新모델 開發.....	朱鍾元
58	건축·토목설계의 컴퓨터이용.....	李相守·朴洪錫
69	淨化칼럼 解決되어야 할 課題들.....	조영재
70	質疑·回信	
71	資料	
83	올림픽광장 ③ 나의 다짐.....	공지영
84	新入會員	
87	협회소식	

서울특별시지부/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55/581-5715~8	
서부본소/서대문구연희동169-16/333-1873	
남부본소/관악구신림동1422-17/882-6744	
북부본소/도봉구수유동191-13/903-3425	
강동본소/강동구성내동317-4/484-6387	
강서본소/강서구화곡동1105-5/604-7168	
동대문본소/동대문구신원동101-7/923-6213	
성동본소/성동구구의동252-16/446-5244	
영등포본소/영등포구당산3가81/634-2143	
부산직할시지부/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711(부산대파르네)	
(051) 23-3584~5	
대구직할시지부/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11-8/	
(053) 72-5141~2	
광주직할시지부/광주직할시동구대인동323-11/(062) 521-759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할시남구간석1동558-1/	
(032) 424-0145, 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대신로3가124-5/(0331) 42-6490	
7072	
안양본소/안양시안양동719-9/(0313) 2-2698, 2-0012	
부천본소/부천시미림동74-6/(032) 63-3144	
성남본소/성남시신촌동5512/(0342) 2-5445	
의정부본소/의정부시외정동182/(0351) 2-1883	
송탄본소/송탄시신장동21/(0333) 4-6153	
고양본소/고양시원당읍우곡리36보력16로트/(0344)63-8902	
구리본소/구리시수택동408-2/(0346) 63-8112	
이천본소/이천시이천읍중리216-8/(0336) 2-3396	
광명본소/광명시철산동464-7/682-2875	
강원도지부/강원도춘천시육천동39-5/(0361) 2-2442	
원주본소/원주시일산동205/(0371) 42-3257	
강릉본소/강릉시성내동6/(0391) 2-2262	
속초본소/속초시중앙동468-66/(0392) 2-5081	
삼척본소/삼척시남양동55-43/(0397) 2-3106	
영월본소/영월군영월읍영흥1리959-35/(03732) 2659	
충청북도지부/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7116-168/	
(0431) 2-2752	
충주본소/충주시역전동673-1/(0441) 2-3082	
제천본소/제천시외리동8-8/(0443) 2-6253	
옥천본소/충북옥천읍삼리139-4/(0433) 2461	
충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흥동487-1/(042)	
22-4088	
천안본소/천안시문화동160-14/(0417) 2-4551	
충성본소/충성군충성읍오관리239-1/(0451) 2-2853	
부여본소/부여군부여읍문리710-2/(0463) 2-2217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륙빌딩508)	
(0652) 3-3881	
익산본소/익산시남동동1가77-22/(0653) 52-3304	
군산본소/군산시중앙로1가85/(0654) 2-4060	
남원본소/남원시하정동106-2/(0671) 2-6002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서귀포시정동783-23(추진회관)	
(062) 364-7567	
목포본소/목포시호남동1/(0631) 2-7280	
순천본소/순천시정전동51-3/(0661) 2-7892	
여수본소/여수시관동435/(0662) 64-1144	
경상북도지부/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가285번지/	
(053) 45-4904	
포항본소/포항시죽도동96-70/(0562) 74-9713	
경주본소/경주시노동동9-1/(0561) 2-2680	
구미본소/구미시원평동356-2/(0546) 52-7903	
안동본소/안동시삼산동125-19/(0571) 2-3641	
김천본소/김천시남산동23-10/(0547) 2-2263	
영주본소/영주시영주4동470-17/(0572) 2-4566	
문경본소/문경시점촌동261-2/(0581) 2-2706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2가1-16/	
(0551) 2-4530~1	
울산본소/울산시남구신정동585-6/(0522) 74-8836	
74-2555	
전주본소/전주시본성동7-20/(0591) 2-6403, 42-3434-5	
충무본소/충무시서호동177-101/(0559) 2-2504, 2-7420	
김해본소/김해시부림동25B-171/(0594) 2-3155	
밀양본소/밀양군밀양읍삼문동184-108/(0527) 52-3456	
거창본소/거창군거창읍하동483-9/(0598) 2-3777	
양산본소/양산군양산읍다방리500-3/(0523) 4-2669	
거제본소/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0558) 32-1086,	
2-3372	
제주도지부/제주도제주시2가1동1283-6/(0641) 22-3248	
52-3248	
서귀포본소/서귀포시서귀동425-1/(0642) 62-3920	

CONTENTS

April 1987 Vol 217

PLATFORM

Architects' Mission	Jang, Kee-In	3
---------------------------	--------------	---

OPENING ADDRESS OF THE 1987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For Betterment of Architects' World	An, Kie-Tae	6
---	-------------	---

WORKS

Samha-ri A's Residence	Ryu, Choon-Son	8
Keeheung Multi-Housing	Kong, Il-Kon	10
Sooyou-dong Multi-Housing	Han, Choong-Kook	12
Kunja-dong Residence	Whang, Il-In	14
D-Multi Housing Town	Kwak, Sung-Moon & Cho, Yong-Sik	16
Sangil-dong Byucsan Villa	Kang, Sung-Ik	18
Seochong-dong Samik Villa	Park, Sang-Don	20

ESSAY

Truth in Architecture	An, Byung-Ui	22
-----------------------------	--------------	----

TRAVELS

Travel for the Sanctuary of Art for Collecting Materials	Kim, Suk-Chul	26
--	---------------	----

FEATURE

Facilities Plan of University and Method of Requirement Judgement	Whang, Jee-Hyun	32
---	-----------------	----

WORKING THINKING

A Spring Shiny Day	Lee, Kak-Pyo	37
--------------------------	--------------	----

POEM

.....	Kim, Ki-Seok	38
-------	--------------	----

REPORT

Architecture and Landscape	Oh, Sang-Pyung	40
Production of Display Space	Han, Do-Ryong	44
Improvement of Apartment Design & Development of New Model	Joo, Chong-Won	48
Computer Application on Architectural & Civil Design	Lee, Sang-Soo & Park, Hong-Seok	58

COLUMN FOR PURIFICATION	Cho, Young-Jae	69
-------------------------------	----------------	----

INTERROGATION & RESPONSE		70
--------------------------------	--	----

MATERIALS		71
-----------------	--	----

OLYMPIC PLAZA		83
---------------------	--	----

NEWLY ADMITTED MEMBER		84
-----------------------------	--	----

KIRA NEWS		87
-----------------	--	----



業務內容의 質을 높이자

會長 安 箕 泰

1987년도 臨時總會를 개최하면서, 본협회 歷代 會長님과 代議員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開會辭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협회의 지난 1년을 결산하고 앞으로의 發展과 進路를 모색하는 날로서, 특히 本協會가 당면하고 있는 懸案妥結을 위하여 진지한 의견을 교환해 주시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총회는 2천6백18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2백75명의 代議員이 모여 성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꽤 기쁘게 成年協會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게 되어, 그 어떤 총회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本協會가 이처럼 큰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그동안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라고 믿으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회원의 數的 成長과 협회의 눈부신 발전에 비례하여, 大小 難題들도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지난해 부터 公正去來委員會와의 관계를 비롯, 建設技術管理法, 建設工事合理化方案, 技術用役育成法 등등에 얽힌 建築士業務에 危害로운 根源的인 문제들이 야기되어 한편 대응하고 또한편 협의와 설득을 펴, 원만한 妥結을 위해 노력해야 했는가 하면 또한 年金制度의 실시와 獨立豫算體制로의 轉換에 따른 定款 및 諸般規程問題로 연속되는 긴장 속에서 對內外的인 협회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協會現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협회의 危機까지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公正去來 關係業務에 있어서는 우리 입장의 강력한 주장과 끈질긴 접촉·협의로 當局으로 하여금 건축사업의 특수성을 납득하게 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던 대로 극적인 타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간 협회의 精力이 다량 소비되고 念慮도 컸읍니다만은 오히려 이제는 관계당국이 建築士業務의 特性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轉禍爲福의 성과를 거두게 됨으로써 일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本人은, 이 시점에서 일단 관계당국과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하겠지만은 우리 建築士 業務活動如何에 따라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문제발단이 좌우될 소지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公表할 수는 없지만 회원 상호간 利害의 대립과 競爭意識에 따른 陳情과 投書로 문제화 일보 직전 상태에서 계류되어 있는 事件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며 모처럼 건축사의 業務地位를 어렵게 固守하고있는 이 마당에 그 모든 것을 다시 無爲로 돌려버리게 할 불행한 사태가 勃發되지 않을까 저으기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협회는 이같은 潜在的 危險要素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연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회원 전체의 權益을 擁護하고 追求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沮害要素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차체에 밝혀 두고자 합니다.

본협회가 신중하게 對應中인 顯案을 몇가지 더 말씀드리다면,
건설부에서 제정작업중인 建設技術管理法, 과거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技術用役育成法,
경제기획원에서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한 建設工事制度改善 및 合理化對策 등이 있으며, 우리 건축사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관련 문제를 해결하던 努力과
精力에 못지 않게 強力하고 泊力있게 우리의 입장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당국에서는 이 결과, 상당한 이해를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이 문제들도 역시
우리가 바라는대로 圓滿한 結論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展望을 가능케하고 있습니다.

또 본협회가 추진중인 중요업무의 하나로서 獨立豫算體制를 목표로한 획기적인 轉換作業이 있습니다.
88년 1월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그 기틀 마련을 위한 여러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아직
연구결과가 미흡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獨立豫算體制의 실시는 聯合會制度로 가기 위한 첫 단계이며
정부가 地自制를 실시하는 時機가 도래하게 될 때 본협회도 때맞추어 대당의 聯合會制度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한가지 留意해야할 점은, 獨立豫算體制라는 權利賦與에 상응하는 責任과 義務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건축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별도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事務所를 運營하고 業務를 處理해 나감으로써 業務內容의 質을 높이는 길 뿐입니다.
이 책임과 의무의 이행은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建築士界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건축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나 자세가 전회원에게 至大한 影響을 미치는
까닭입니다.
최근 몇몇 예에 의하면 地域間・支部間에서 不協和音이 울려 나오기도 하고 회원 상호간에
紛爭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不美스러운 業務受注
處理過程에서 아끼되는 부끄러운 作態도 발생되고 있으며 본인은 이같은 불미스러운 事例와 資料에
접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검토중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본협회가 추진중인 중요업무중 또하나로, 古建築에서부터 우리會員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現代建築에
이르기까지를 총망라한 가칭 建築誌라는 방대한 책자의 發刊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建築物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데에도 그 뜻이 있지만 우리 建築士가 이룩해 놓은 業績을 널리
홍보한다는 데에도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본책자는 발간되는대로 關聯機關과 社會團體에 빠짐없이 배부함은 물론 駐韓 外國公館을 통해 세계
각국에 널리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 建築士의 才能과 수준높은 建築文化를 萬邦에 과시하고자
합니다.
本誌의 발간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기관의 관심있는 인사들로부터 큰 호응과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특히 李圭孝 건설부장관께서도 이 발간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한 바 있습니다.

본협회가 회원의 福利增進을 도모하고 老後生活의 안정을 기약할 수 있도록 실시중인 建築士 年金制度는
인생의 가장 高貴한 活動期에 있어서나 그 活動기를 보내고 난 老齡期에 있어서나 始終如一하게
建築士로서의 品位를 유지하고 社會로 부터 尊敬받는 品格 높은 생활을 確保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본제도의 취지라 하겠습니다.
건축사의 社會的 地位向上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尊敬하는 代議員 여러분!

오늘의 이 자리는 大韓建築士協會 2천6백여명 회원여러분이 다시 한번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며
희망찬 도약을 示現하는 뜻깊은 動機賦與의 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開會辭에
가뭇하고자 합니다.



'87京郷하우징페어 大賞 受賞作 사진: 정정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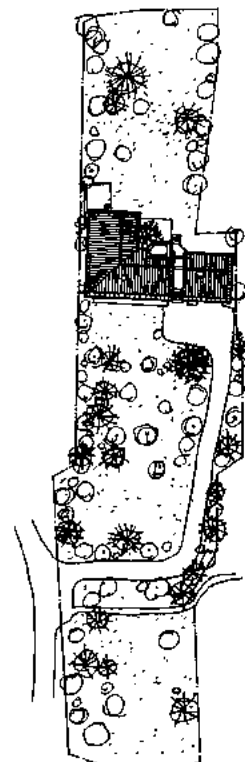
회원작품

삼하리 A씨 주택

柳春秀/종합건축사사무소 異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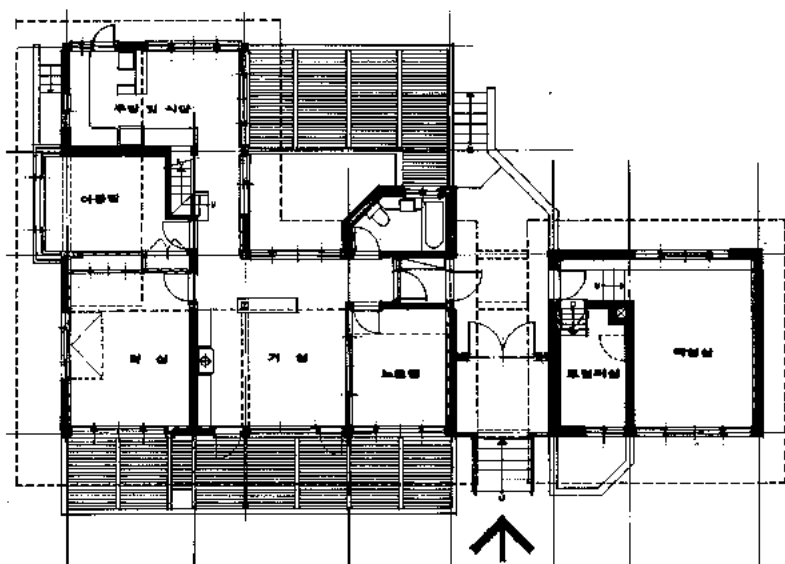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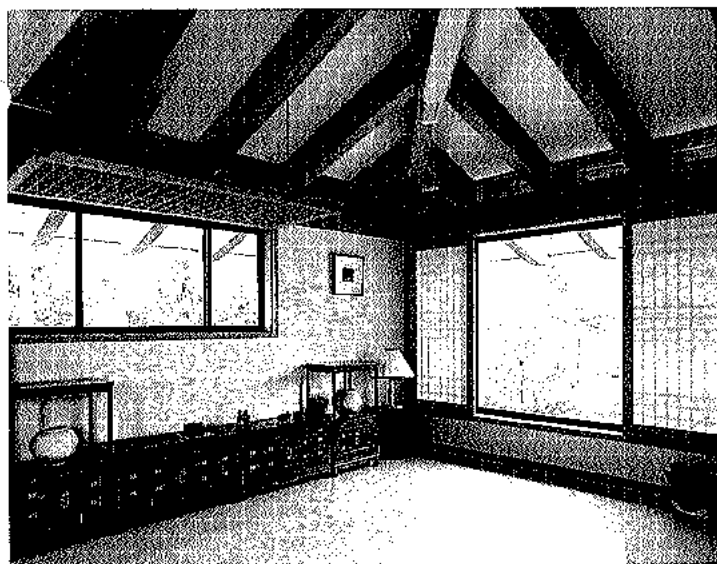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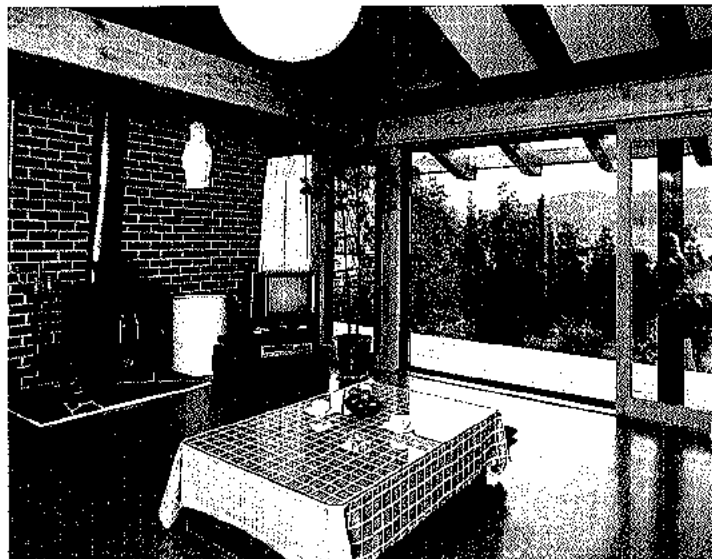
■
Samhari A's Residence
Designed by Ryu-Choon-Soo

■
대지위치: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대지면적: 약 1,000평
연면적: 40평 (주거동: 30평, 부속사: 10평)
구조: 목구조
마감재료: 외부 - 불탈위 백색수성페인트
일부자연석
지붕 - 천연스레이트
내부 - 바닥: 판넬히팅위 쿨크가공판
천정: 미송널위 스테인마감 및
합판위 창호지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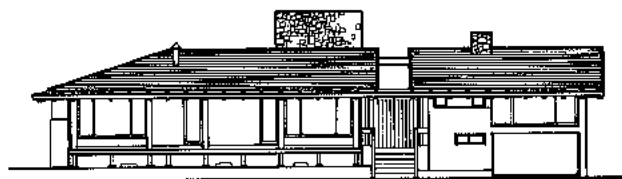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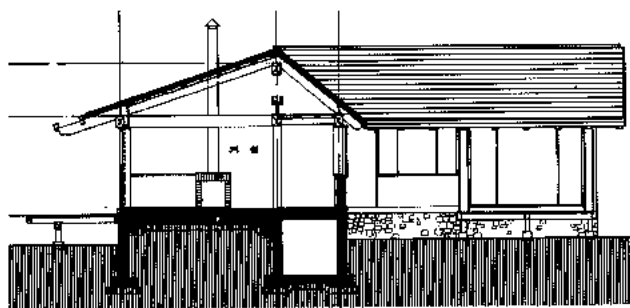
柳春秀/종합건축사사무소 異空/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31-28/587-2020~2022



● 1층평면도



● 정면도



● 단면도



회원작품

경기도 기흥 공동주택

公日坤/향중합건축사사무소

■

Keeheung Multi-Housing
Designed by Kong, Il-Kon

■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교매리

대지면적: 1,977㎡

건축면적: 139㎡

외부마감: 벽돌치장쌓기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자방마감: 오지기와

용적율: 25.75%

진폐율: 20.79%

규모: 4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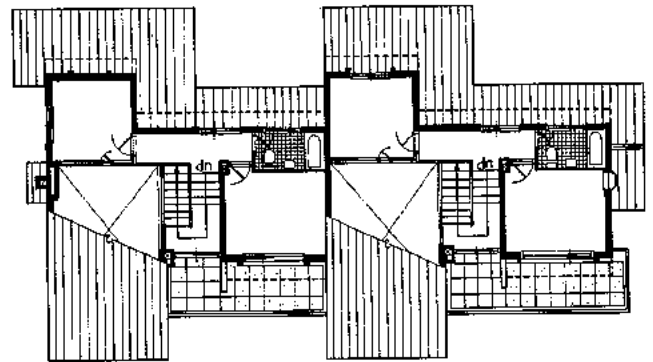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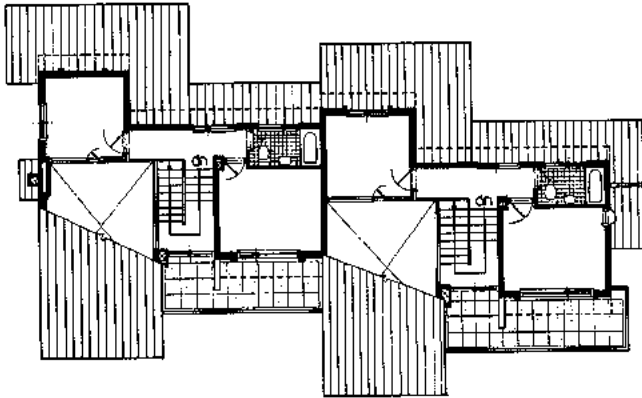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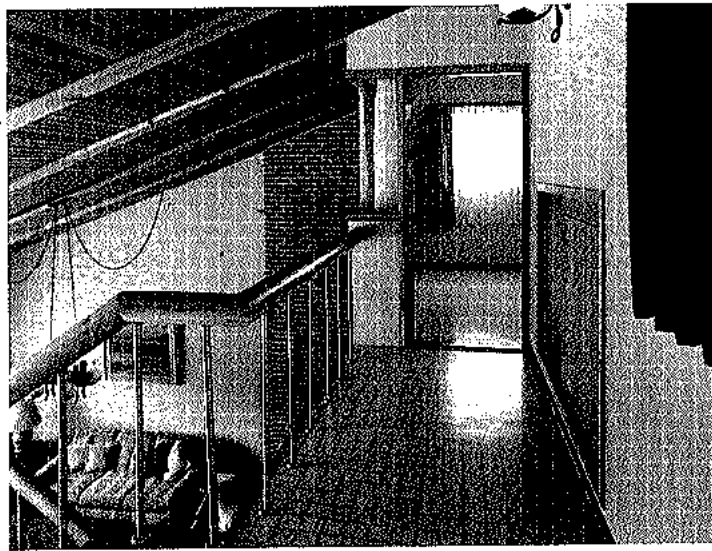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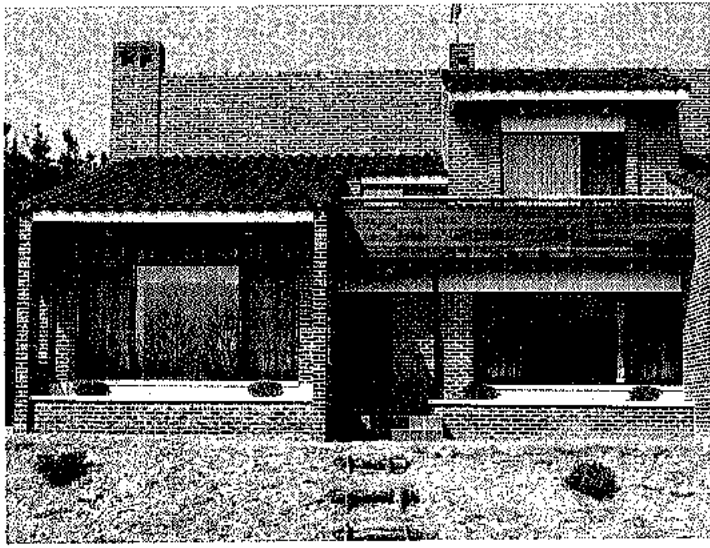
■ 설계소요

도시에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넓은 대지를 활용
할 수 있는 잇점을 충분히 살리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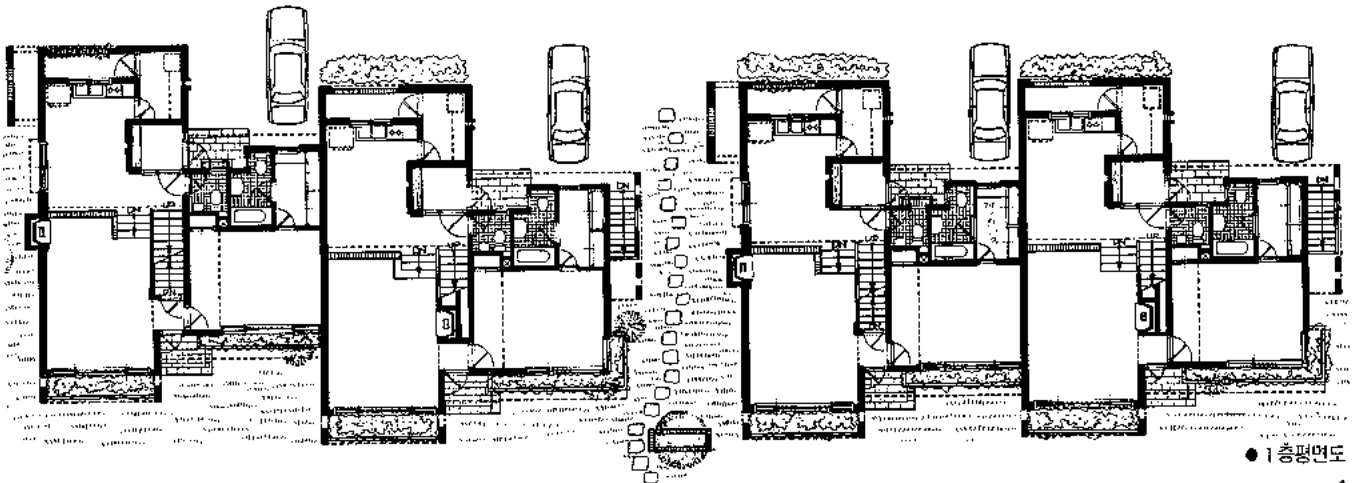
일반적인 다세대주택이나, 전원주택, 별장주택으로도 활용
될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총 4세대가 거주, 2세대씩 한블락으로 연결시켜
블락사이에는 정원과 통하는 통로를 두었다. 각각의 세대는
완전히 독립되어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혼합한 방식에
가깝다. 다세대주택과 같이 대문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정원과 마당도 같이 사용하는 구조이다.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설계된 내부는 1층엔 주방과 식당,
그리고 한 레벨 낮추어 계단으로 거실과 이어지게 하였고,
넓은 방 1개와 그에 딸린 욕실을 두었다. 2층은 주로
자녀들의 공간으로 방 2개와 욕실을 설치했다.



● 2층평면도



● 1층평면도



'87京郷하우징페어 金賞 受賞作

회원작품

수유동다세대주택

韓忠國/중합건축사사무소 증원건축

Sooyou-dong Multi Housing
Designed by Han, Choong-Kuk

대지위치: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535-298

지역지구: 주거지역 풍치지구

규모: 지하1층, 지상2층(3세대)

대지면적: 166㎡

건축면적: 65.73㎡

연면적: 223.48㎡

지하층: 92.02㎡

1층: 6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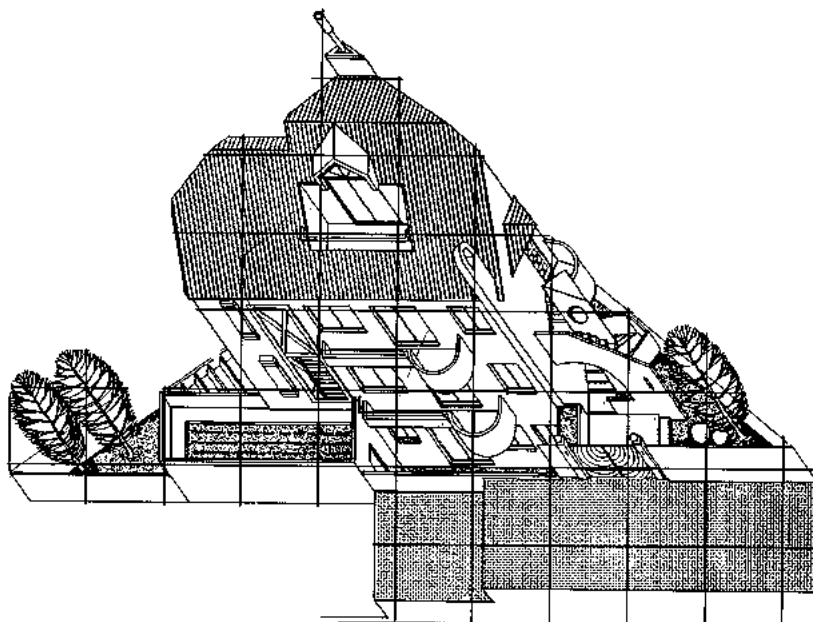
2층: 65.73㎡

구조: 조적조

지붕: 스페니쉬오지기와 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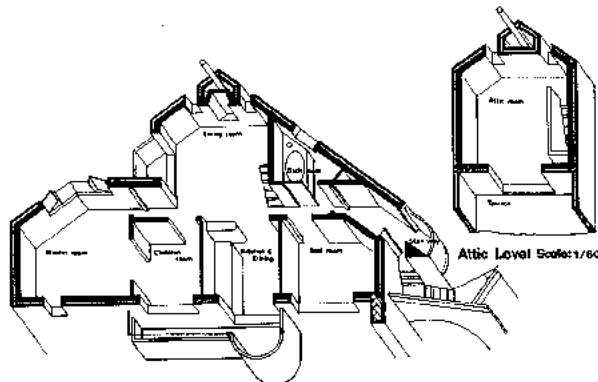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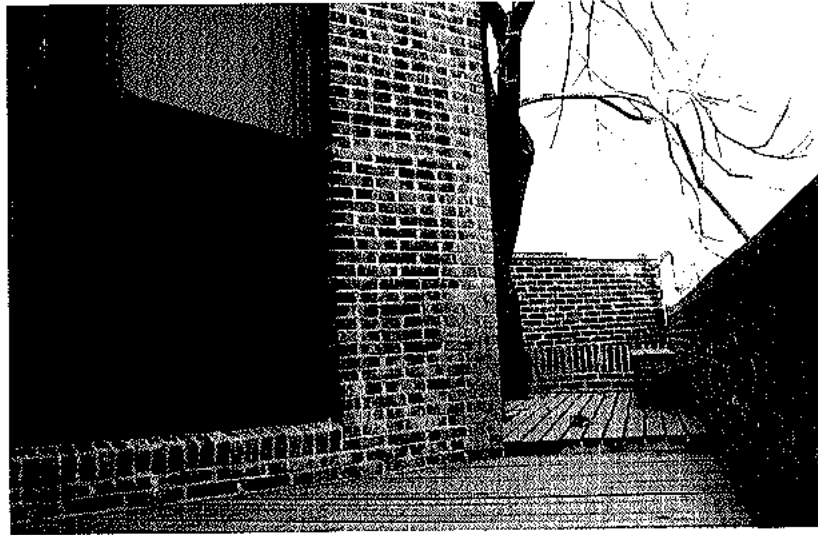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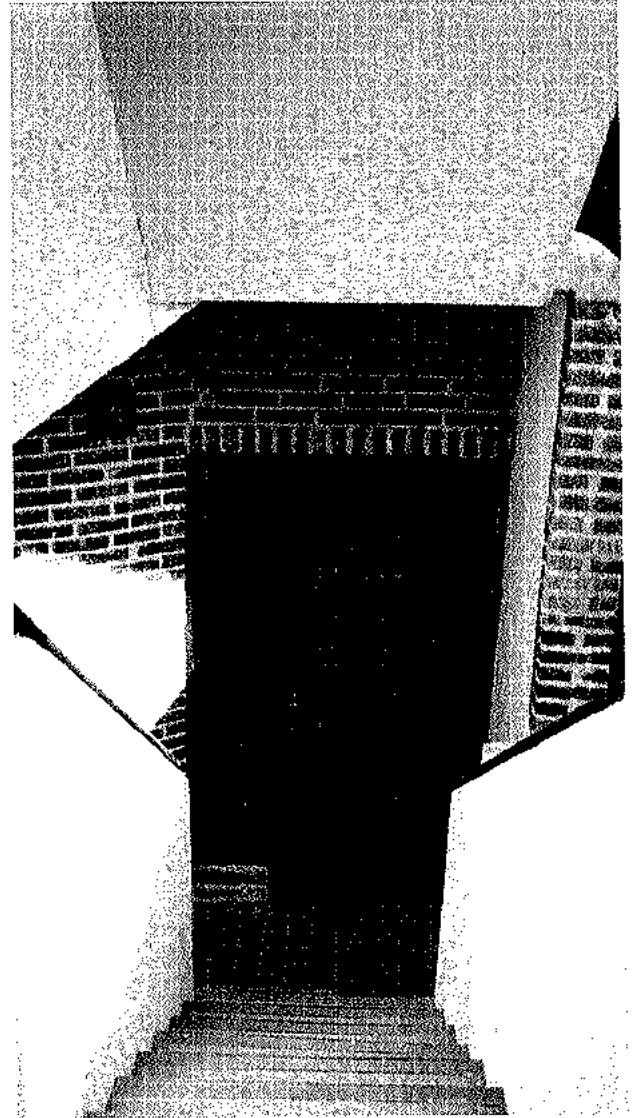
외벽: 파벽돌치장쌓기

창호: 84mm칼라알미늄바/3mm투명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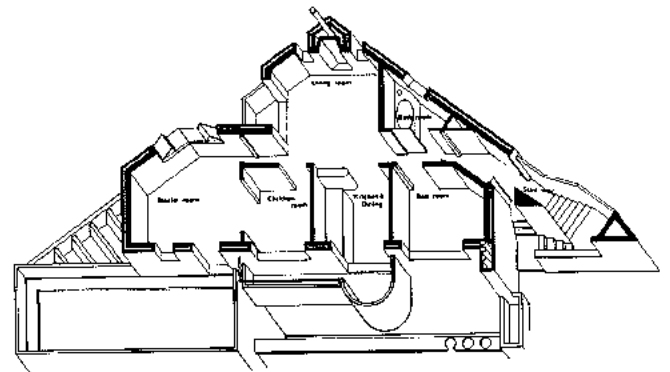


●아이소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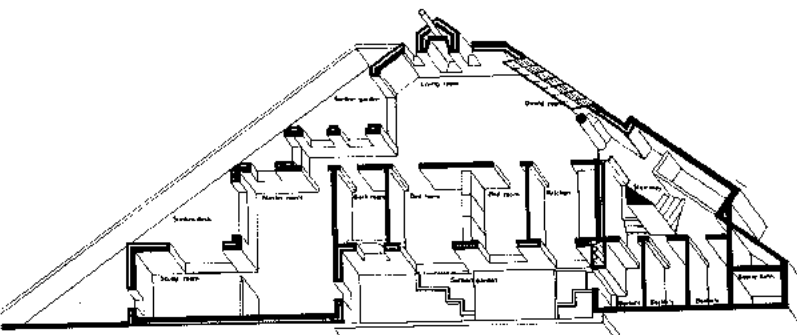
韓忠國/중합건축사사무소 증원건축/서울시 강남구
서초동427-3/585-1185



● 1층평면도



● 2층평면도



● 지하층평면도



'87京郷하우징페어 銀賞 受賞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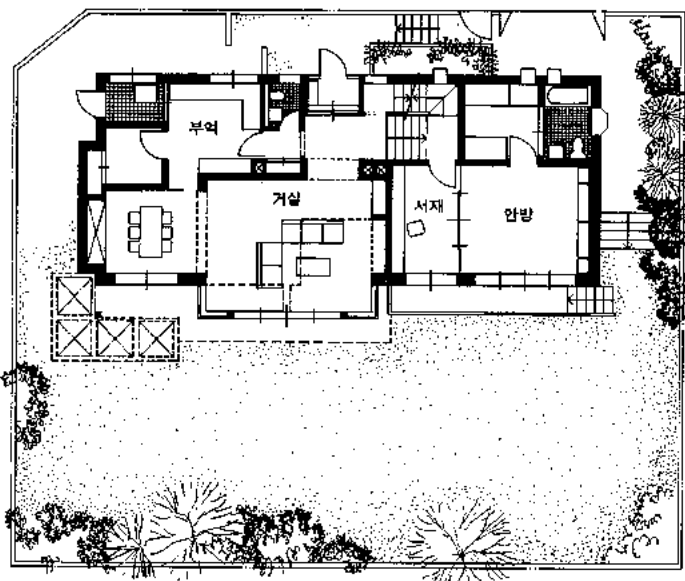
회원작품

군자동 K씨 주택

黃一仁/종합건축사사무소 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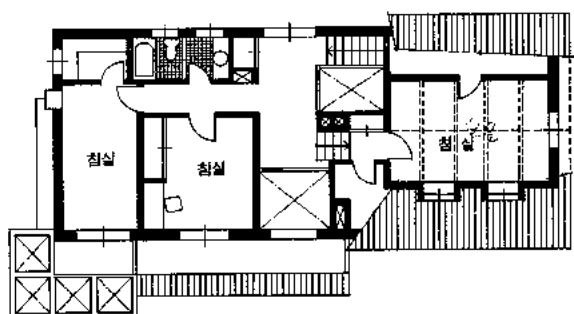
■
Koonja-dong K's Residence
Designed by Hwang, Il-In

■
대지위치: 서울시 성동구 군자동
대지면적: 428.4㎡
연면적: 260.9㎡
구조: 벽돌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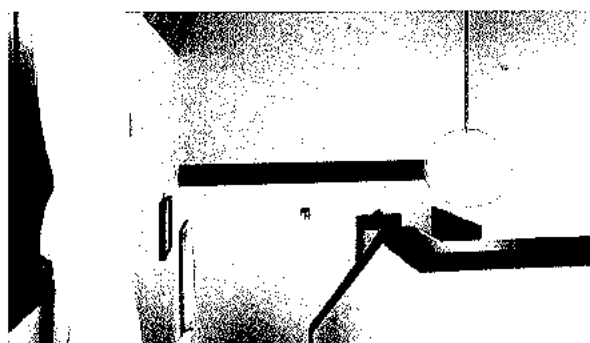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평면도

黃一仁/종합건축사사무소 일건/서울시 강남구
방배로동792-10/532-8521



● 2층평면도





'87京郷하우징페어 銀賞 受賞作

회원작품

D-연립주거단지

郭成大+趙鏞植/중합건축사사무소 그룹-원

D-Low Rising Housing

Designed by Kwak, Sung-Moon + Cho, Yong-Sik

대지면적: 9,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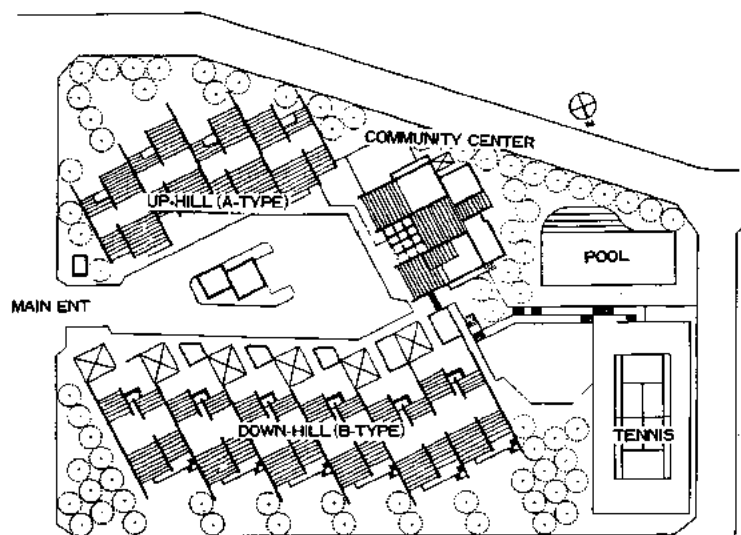
건축면적: 2,400㎡

연면적: 3,680㎡

규모: 연립주택10세대+커뮤니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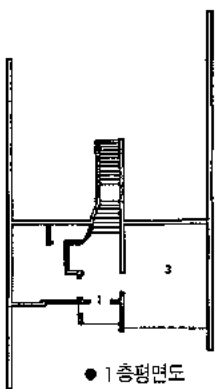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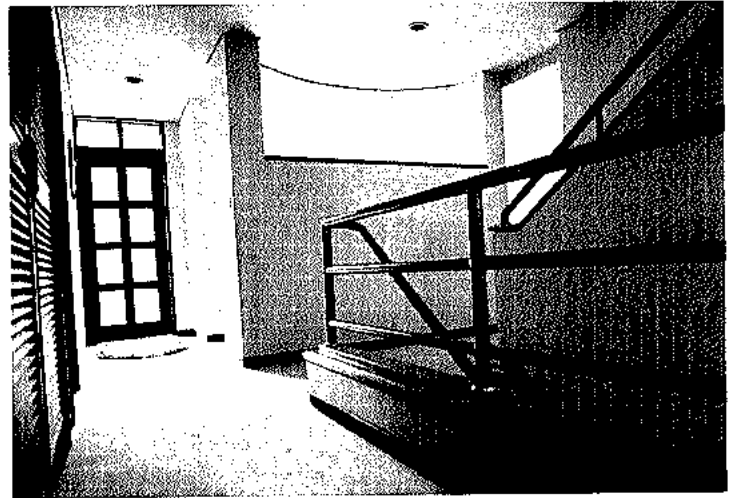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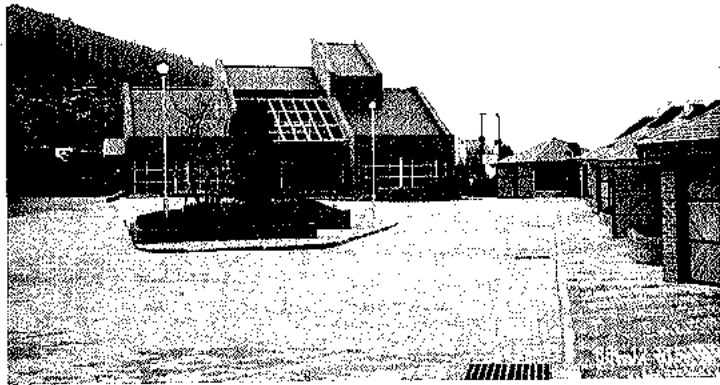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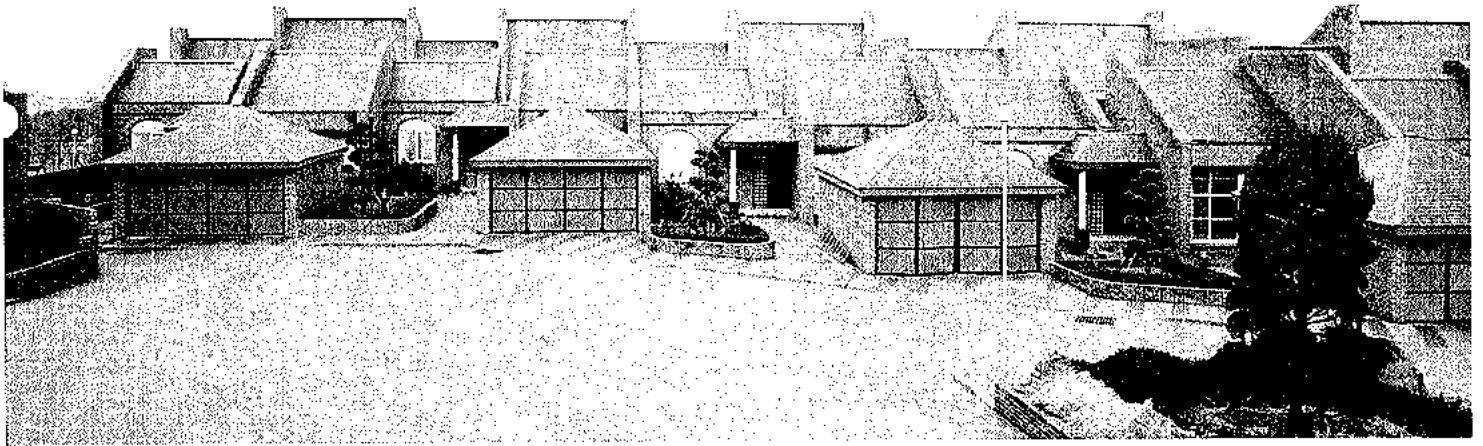
외부마감: 적벽돌치장쌓기, 본타일붙칠

저붕재료: 천연슬레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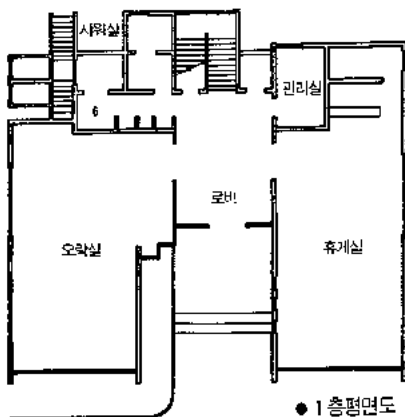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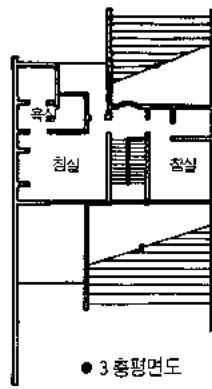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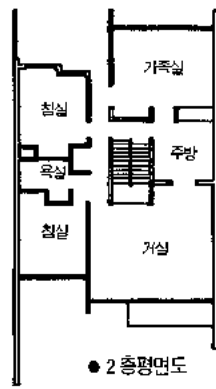


郭成文+趙鏞植/중합건축사사무소 그룹원/서울시
강남구 논현동90-7/549-2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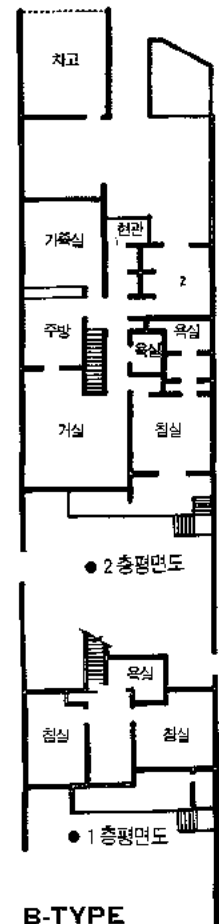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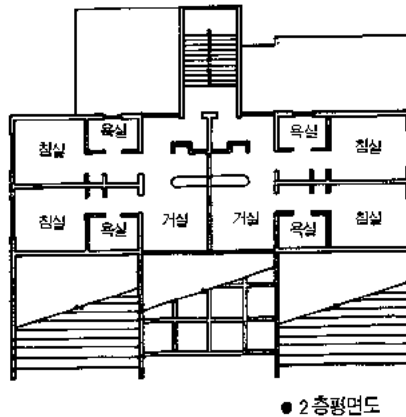
●배치도



A-TYPE



COMMUNITY CENTRE



B-TYPE





'87京郷하우징페어 銅賞 受賞作

최원작품

고덕벽산빌라

姜聲益/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
Koduk Byuk San Villa
Designed by Kang, Sung-Ik

■
대지위치: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대지면적: 5,224.15m²

건축면적: 1,559.55m²

연면적: 6,283.60m²

전폐율: 29.85%

용적율: 9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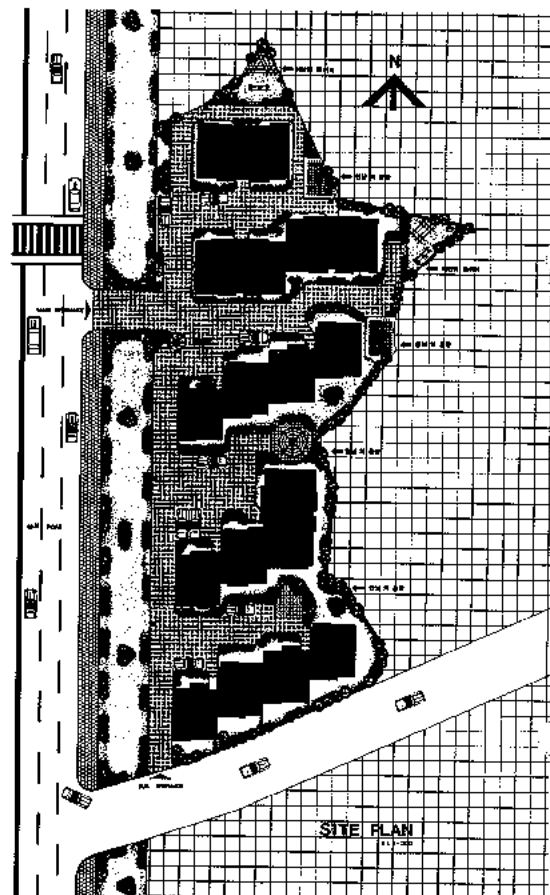
규모: 54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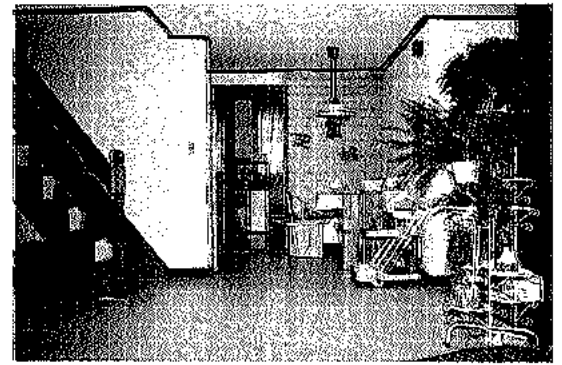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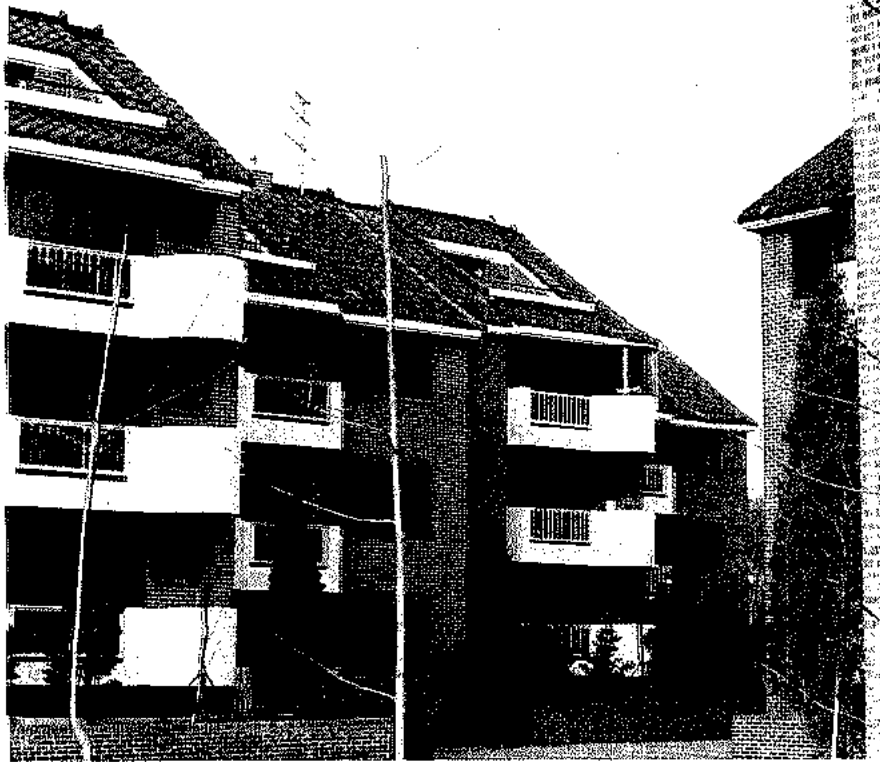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외부마감: 붉은벽돌치장쌓기

지부마감: 스페니쉬기와잇기

姜聲益/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7-38/543-9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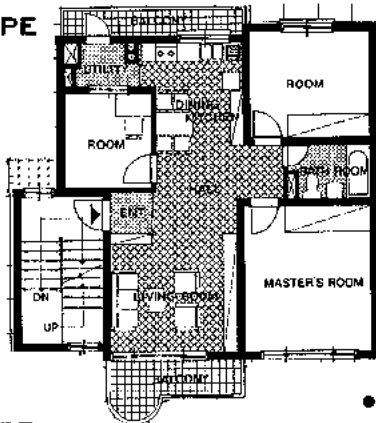


■ 설계의도

모양이 고르지 않고 그저 남북으로 길쭉하기만 한 대지는 도로와도 높이가 3M 이상이나 차이가 진다. 그렇지만 보통 이런 문제들은 다양한 배치와 갖가지 형태의 평면구성으로서 한결 개성있는 건축물이 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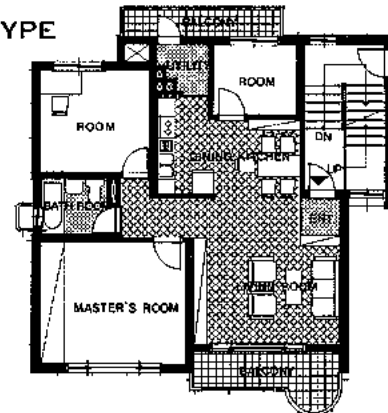
더구나 대지의 동편에 자리한 공원에서는 새 소리가 끊이지 않아 전원적인 주거환경이란 천혜가 주어져 있다.

UNIT-A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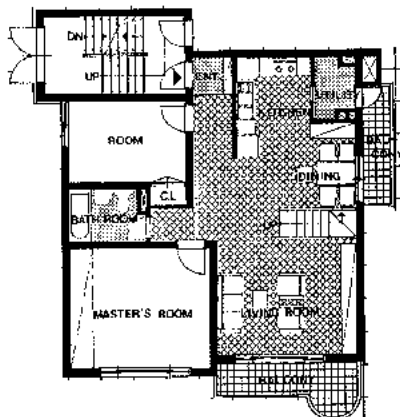
● 2층평면도

UNIT-B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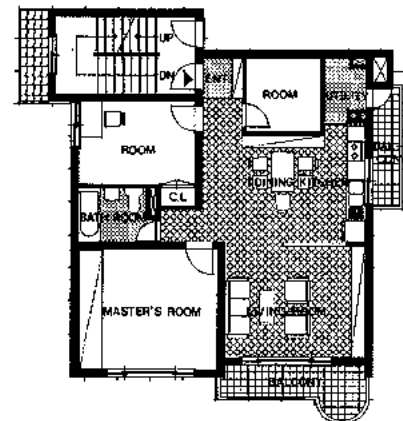
● 2층평면도

UNIT-C TYPE



● 1층평면도

UNIT-TYPE





회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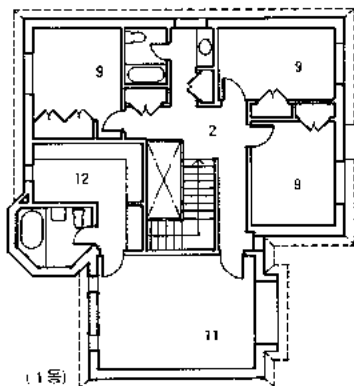
서초동 삼익빌라

朴相敦/종합건축사사무소 (주)범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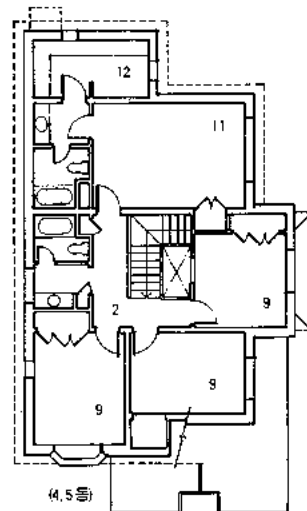
Seocho-dong Samik Villa
Designed by Park, Sang-Don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대지면적: 3,359㎡
건물내용: 단독주택단지 - 9동
평형: 89⁷⁷, 75⁹⁸, 90⁴⁷, 96⁹¹, 96⁹¹, 98⁸⁹, 98⁸⁷,
93¹⁸, 79⁴²평, 각 1동
건물면적: 1,227㎡ (36%)
연면적: 2,709㎡ (67% 2층)
구조: 조적조

- ① 현관
- ② 홀
- ③ 거실
- ④ 식당
- ⑤ 부엌
- ⑥ 가족실
- ⑦ 세탁실
- ⑧ 가정부실
- ⑨ 침실
- ⑩ 서재
- ⑪ 주인침실
- ⑫ 드레스실
- ⑬ 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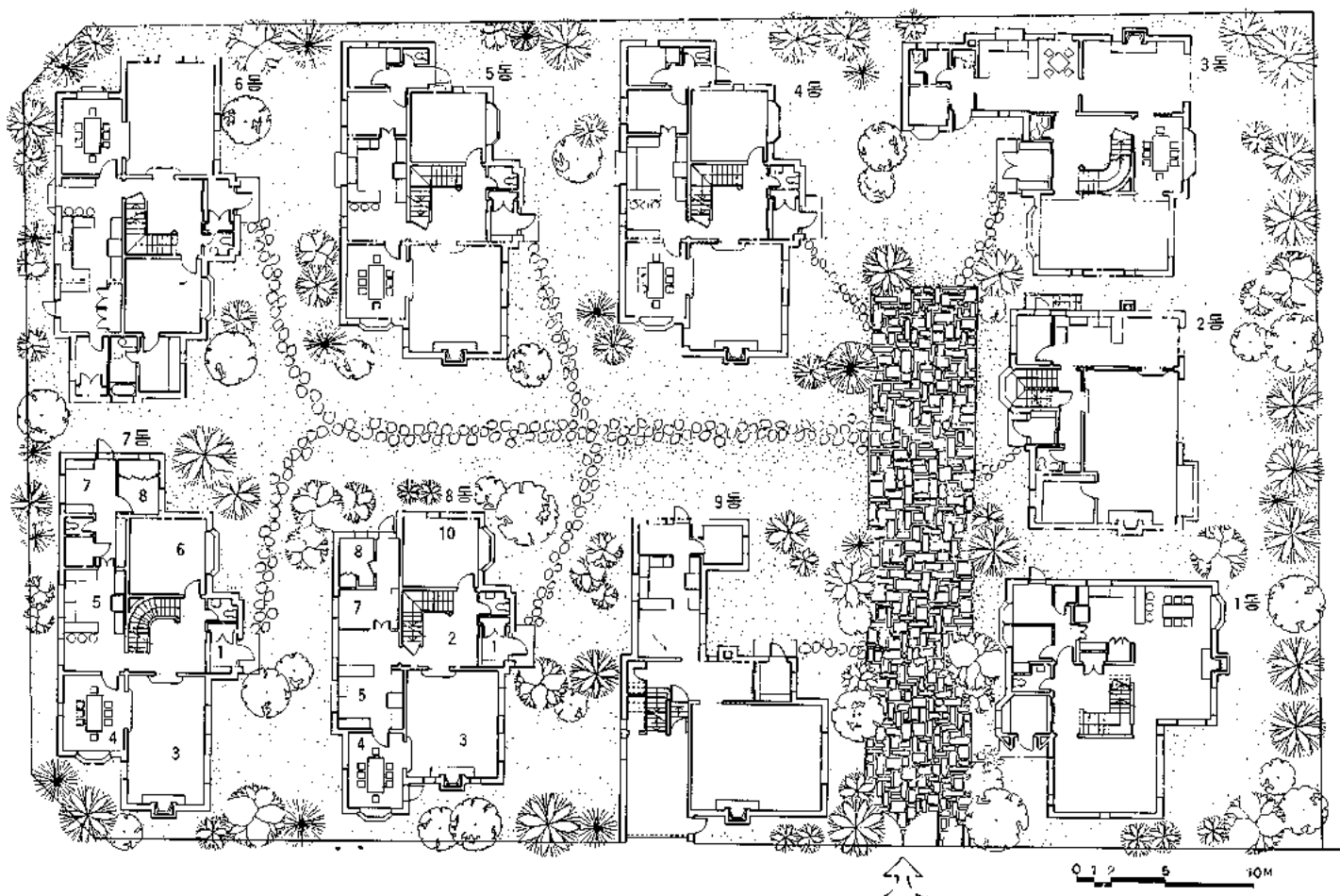
(1동)



(4, 5동)

朴相敦/종합건축사사무소 (주)범건축/서울시 강남구
신사동573-2/544-4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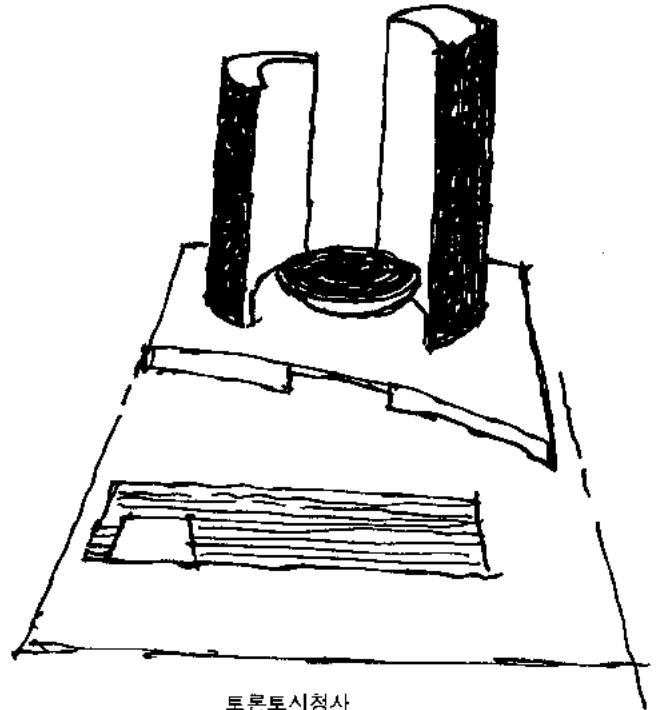
● 2층평면도



●배치도 및 1층평면도

建築이라는 藝術 (Ⅲ)

Theme Essay
Truth in Architectural (Ⅲ)
by An, Byung-Ui



토론토시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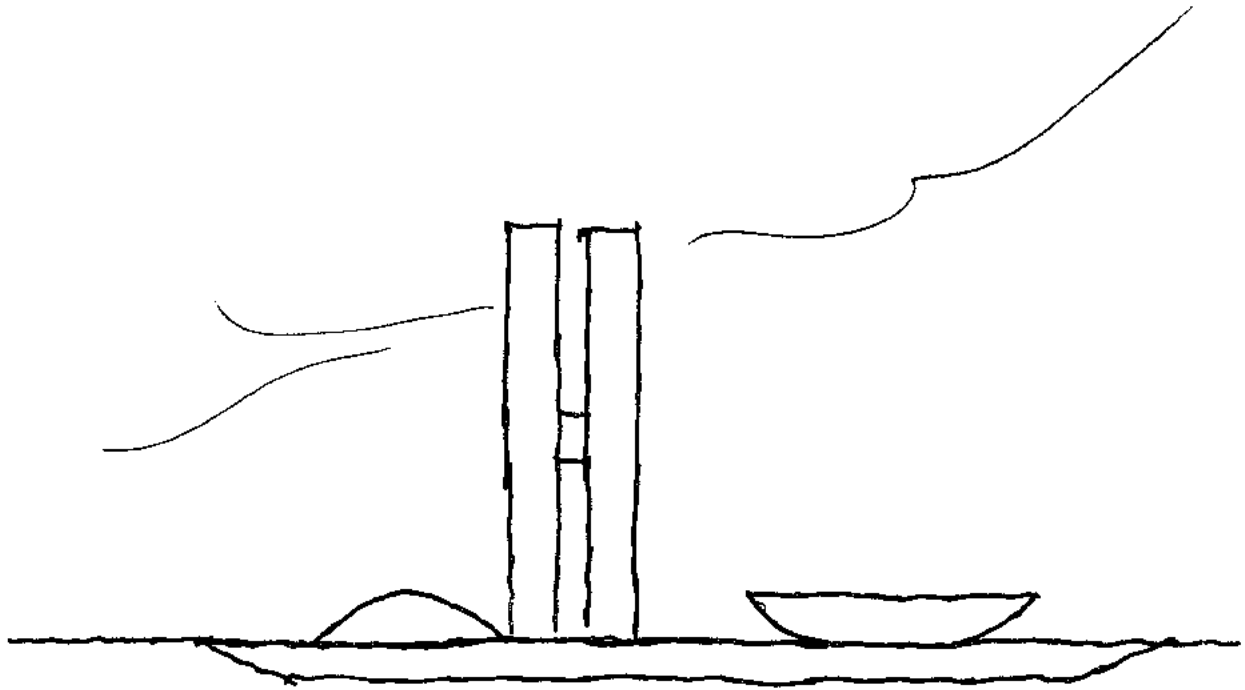
「住宅은 살기 위한 器械이다.
「宇宙는 無秩序하다.
인간은 幾何學 創造했다.
기하학은 秩序이다.
인간은 秩序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精神에 깊은 感動을 주는
藝術作品은 기하학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建築은 빛속에 演出하는
거대한 造形의 藝術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축의 본질을 그 内部空間에서 찾으려는 系列의 작가가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外部空間, 말하자면 建物の 造形에 뜻을 둔 作家들이 있다. 「르 코르뷔지에」는 그 대표적인 작가겠다. 우리들이 어떤 作品을 鑑賞할 때, 그 작가가 어떤 의도에서 그 건축을 構想했는가, 또는 그 작가가 表現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등 작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특히 나의 실력이 그 작가보다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로, 사리넨」처럼 건축가란 작품이면 그만이지, 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고 말이나 글로서 표현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했던 작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다행히도 「르 코르뷔지에」는 많은 저서가 있어 그의 사상과 작품을 이해하는데 그리 힘들지 않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 몇개를 간추려 보자.

「住宅은 살기 위한 器械이다.
「宇宙는 無秩序하다. 인간은 幾何學을 創造했다. 기하학은 秩序이다. 인간은 秩序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精神에 깊은 感動을 주는 藝術作品은 기하학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建築은 빛속에 演出하는 거대한 造形의 藝術이다.
그는 또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합리적인 기능이 주는 형태의 아름다움을 역설했다.
다른 작가는 물체치고 적어도 「르 코르뷔지에」는 작품구상의 첫 단계가 평면의 기능이 아니라 외부공간의 조형이었다는 것은 그의 많은 스케치가 거의 모두 조형이라는 것을

安秉義

종합건축사사무소 항건축



브라질리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우선 기하학이 느껴지는 형태라야 했다. 그것도 가장原始的인 형태, 즉 直方體.

인간의 질서있는 生活空間을 象徵하기 위해서는 「피로티」로서 무질서한 宇宙—大地—에서 독립시킨다. 뿐만아니라 壁面은 모두 콘크리트로 감싸고 窓문을 뚫어 놓는다. 이렇게 질서있는 테두리의 상자를 만들어 놓고 나서 생활의 기능에 맞추어 내부공간을 구성한다. 이것이 「사보이」邸이다.

내부공간은 꼭 차있는 「스페이스」가 아니라 움직인 Ramp, Void, Open 테라스 등으로 자연에 대해 개방돼 있고 위 아래층으로 공간이 相通한다.

「발세이유」APT에서는 더욱 강한 「피로티」, 옥상 부분의 강한 테두리로 말미암아 조형은 이것으로서 완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하다. 그것은 하나의 빈틈없는 힘찬 結晶體이다.

그의 후기의 작품은 더욱 강한 조형을 보여준다.

「통상」禮拜堂은 건축이라지 보다는 차라리 자유스러운 형태의 거대한 彫刻이다.

「오스카 니마이어」의 브라질리아의 建築群도

「르 코르뷔지에」와 같은 계열에 속한다.

우선 視覺적으로 강한 造形感을 느낀다. 그것은 원시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쌍둥이塔처럼 선 사무실동, 넓게 깔려있는 基壇—그 내부에 Public Space가 있다—위에 놓여진 球의 일부를 잘라 낸 듯한 조형을 하나는 얹어 놓고 또 하나는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議事堂建物. 전자는 그 형태가 暗示하듯이 保守를, 후자는 革新을

象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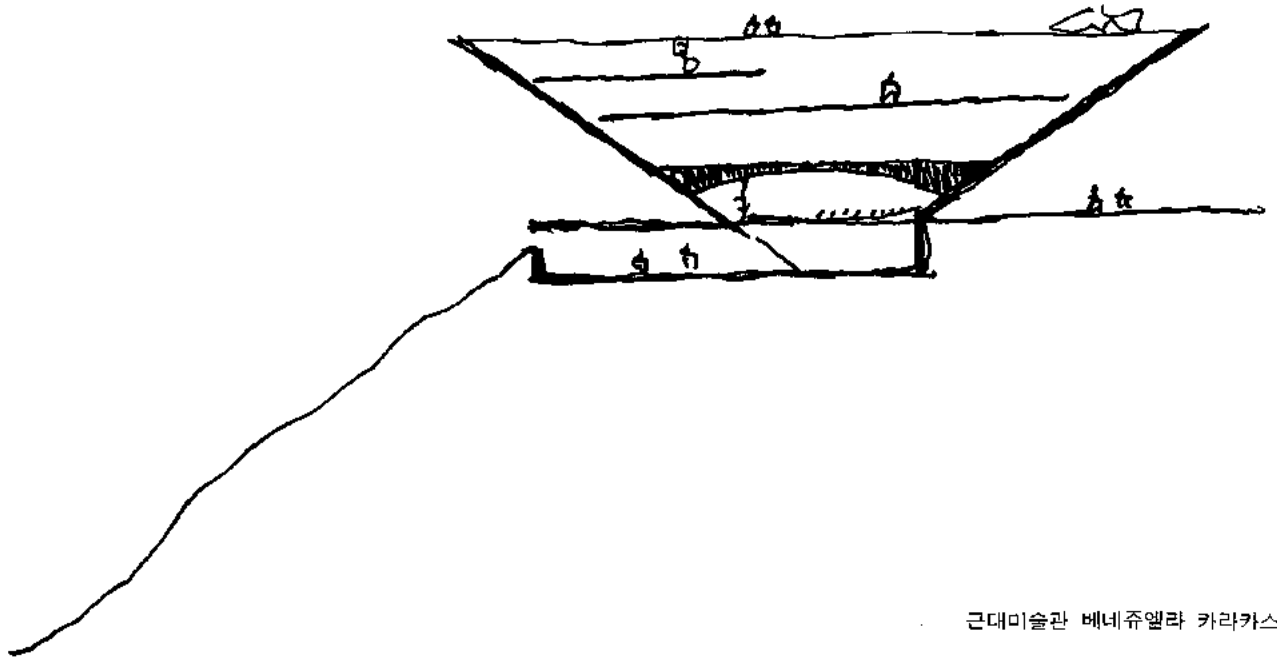
그렇지 여성적인 우아한 꿈의 宮殿 대통령 官邸가 바라 보인다.

넓은 별원에 세워진 높은 것과 낮은 것, 직방체와 半球,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매우 고전적인 美의 方程式과 같은 것이다.

「오스카 니마이어」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미술관이 생각난다. 깎아세운 듯한 絶壁위에 「피라밀」을 거꾸로 세운 듯한 조형은 다이내미즘의 극치라 하겠으나 솔직히 말해서 미술관으로서의 내부기능이 제대로 만족되어 있는지 의심이 간다.

北歐 出身의 「비리오 리벨」의 「토론토」 시청사는 현상설계 당선작으로 빛을 보게 된 작품이다. 당국에서 내세운 조건은 오래된 시의 이웃 환경과 조화되며 시의 심볼로서의 「이미지」에 맞는 작품을 원했는데 많은 응모작이 어긋과 어울리는 고전적인 조형이었는데 반해 「리벨」은 어긋과 대립되는 강하고 특출한 조형으로 당선의 영예를 차지했다.

스케치에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듯이 충분한 넓이의 Public Space가 들어있는 基壇 위 한가운데 회의장이 떠 있는 듯이 놓여지고 이를 둘러 쌓듯이 주와 서, 두개의 「오피스빌딩」이 높이를 달리하면서 반달모양으로 서있다. 이 두개의 사무동의 가로에 면한 외부측은 벽으로 둘러 쌓여있고 이와 반대로 내부로 면한 부분이 유리창으로 회의장은 그 성격을 표현하듯이 완전한 원형이다. 회의장을 보호하고 감싸는듯 안으로 열려있고 밖으로는 폐쇄된 강한 상징성을 느낀다.



근대미술관 베네쥬엘라 카라카스

흔히 현상설계의 당선작은 단순하고 힘찬 조형이 많은 것은 이러한 작품이 이해되기 쉬워 심사위원에게 「어필」되며 象徵性이 강해 好感을 받기 때문이다. 「리드」라는 평론가는 현대건축은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시민들은 그들의 건물인 시민회관, 시청사, 기념관, 공공건물의 웅장함, 華麗함, 자랑스러움을 바란다. 그것은 즉 내부기능은 둘째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힘찬 조형이어야 한다.

이상 건축의 본질을 그 내부공간에 두는 작가와 외부공간의 조형에 중점을 두는 작가의 계열로 나누어 보았다. 매우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前者는 有機的인 建築이고 後者는 機能主義 建築인 셈이다. 그러나 까다롭게 따져보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분류될 것도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건축디자인의 첫시발점에서 내부공간이나 조형이나 보다 더 마음을 써야 할 문제, 즉 그 건물이 놓여지는 환경이 특이해서 이에 더 중점을 둔 작품이 많기 때문이다. 「웃존」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항구라는 대지조건에 웃트라는 이미지를 부각한 경우이고, 「라이트」의 「마린」 군청사는 그 내부공간은 별볼일 없고 차라리 골짜기에 놓여지는 조형으로 어떤 것이 어울리겠는가에 관심을 둔 작품이다. 「라이트」는 환경에 부리없이 調和시키는 작가이지만 그중에서도 「미린」군청사만큼 잘 처리된 경우는 드물다. 이웃의 언덕을 이용해 마치 골짜기에 나리를 놓듯이 건물이 시원히 앉혀지고 둥글게 건물을 감싸는 듯한

초가지붕같은 파란색의 지붕이 「캘리포니아」의 언제나 맑은 하늘과 숲과 너없이 좋은 조화를 이룬다. 그의 유명한 낙수장도 계곡을 흐르는 물과 숲속이라는 자연조건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뉴욕」의 「굳센하임」 미술관은 언젠가는 재개발될 허름한 거리가기는 하지만 이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차라리 시각공해를 일으키고 있어 도시 한복판 보다는 공원 한모퉁이에 있으면 어울릴 것 같다.

「르 코트뷔지에」의 「사보이」邸는 외부의 조형이 돌보여 내부공간을 잊기 쉽지만 호트는 공간이 변화있는 멋있는 분위기이다. 그가 젊었을 때 즐겨 그렸던 「휴리즘」의 그림, 투명판 유리컵과 병들이 열리고 설키고 「오파렛」 하는 것처럼 공간이 서로 열키면서 인간의 심층심리를 엿보이는 듯하다.

近代建築의 세 사람의 巨匠이라면 누구든 서슴치 않고 「르코트뷔지에」와 「라이트」와 그리고 「미스 환델 로」를 들것이다. 그러나 「미스」는 현대건축에 특히 미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잘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건축철학은 애매모호하여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Universal Space라는 것도 글자 그대로 설명하면 융통성 있는 공간,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 되겠지만 건축이란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그 존재자유로부터 따져 나간다면 융통성있는 공간이란 손쉽게 말하자면 어른도 어린이들도 임용 수 있는 옷 따위가 되어 누구에게도 맞지않는 옷이 되어 버린다.



Alvar Aalto

「Less is More,」 또한 말하자면 적은 것이 장땡이다 라는 뜻인데 무엇인가 너무 깊은 철학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여 알듯 모를 듯하다. 그러나 그의 대표작인 「발세로나 미술관」이나 「레이크쇼 드라이브 아파트」 등 그의 작품에서 살펴보면 두가지 생각이 든다. 하나는 건축공간의 구성요소가 단순하다는 것이다. 기둥, 보, 유리창, 바닥, 벽, 천정 등 이 이상 단순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단순화시켜 나간 작품들이다. 숲중나리 만치 꼭 같은 디테일—그러나 매우 세련돼 있다—로 건축을 감싼다. 피아노의 건반은 기본적으로는 12개의 음階를 가지지만 그것으로 만들어진 음악은 부궁무진한 변화를 가져 온다. 名曲이나 拙作이라는 오직 작곡가에게 달려 있다. 「미스」의 작품도 이와같은 것을 암시하는 것일까. 둘째로 그가 말한 「유니버설 스페이스」란 사무소나 학교 미술관 등 어느 기능에도 맞는 공간이란 뜻이 아니라, 그 자신이 생각하는 순수한 건축공간—비례, 조화, 미 따위를 위한 공간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禁慾的인 淸教徒的인 것, 「앙드레 지드」의 문학같은 것. 「미스」에게는 순수한 공간이야말로 건축의 본질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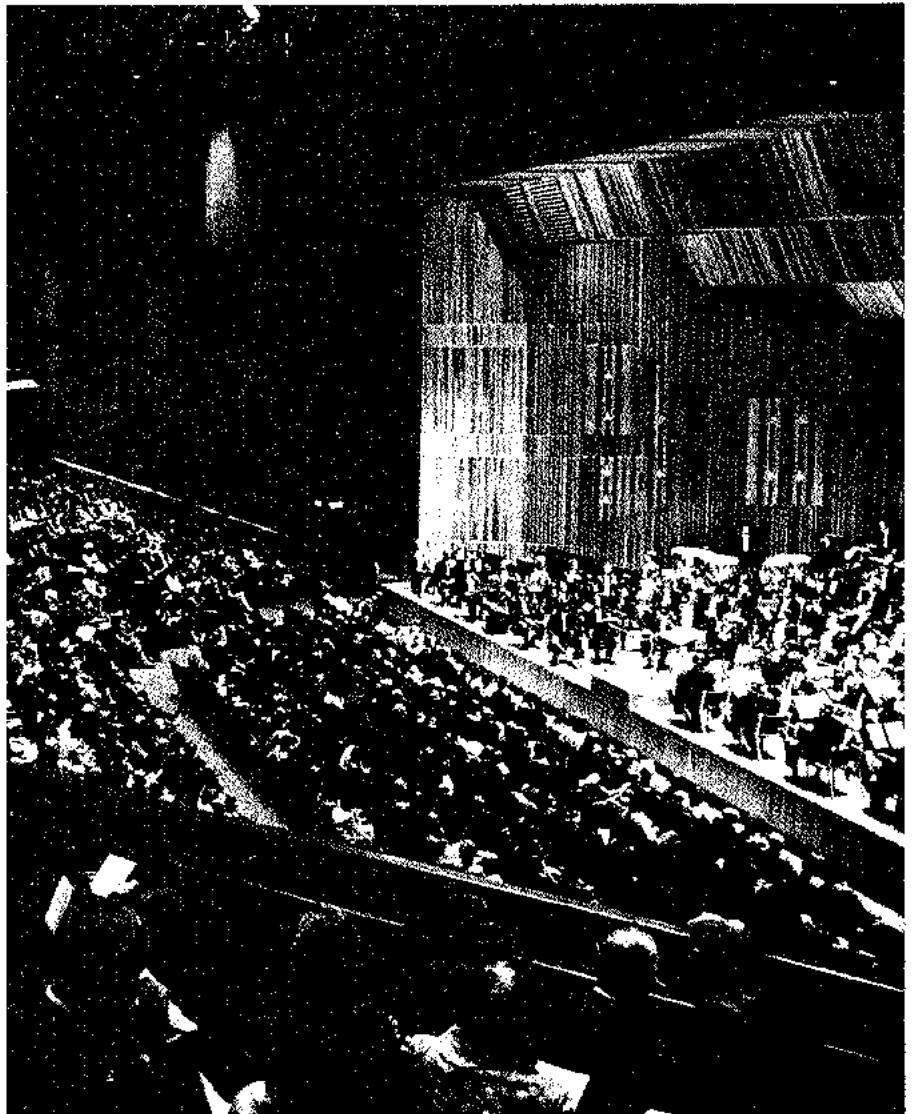
예술가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 헤메는 순례자와 같은 것이다하여 모든 건축가가 자기 과거의 작품을 부정하고 초월하여 새로운 세계를 보여 준다. 뛰어난 건축가일수록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다. 그러나 「미스」는 이점에서도 특이한 작가이다. 미국으로

전거간 이후의 작품은 변하지 않고 그가 추구해온 순수공간의 비례와 조화와 디테일을 다듬고 다듬어 왔다. 말하자면 같은 「테제」를 깊이 좀더 깊이 좀더 순수하게 추구한 작가였다.

이제 이 거장들이 돌아가신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많은 유산들을 남겨 놓았다. 건축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많은 「샘플」을 남겨 놓았다. 그 선배들의 발자취, 探索의 정신을 우리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공간, 시간, 건축의 저자 「G.기나운」은 그의 저서에서 현대는 많은 Play Boy 건축이 득실거리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 여자 저 여자로 옮겨가면서 채신바리 없이 떠돌아 다니는 「플레이 보이」처럼 잡지에서 소개되는 유행을 따라 차분하지 못하고 깊이가 없는 건축들이 범람한다는 이야기 이다. 우리현실은 어떨지? 다음호에는 계속해서 건물의 평면을 안에서 부터 밖으로 종합, 전개해 나가는 「알발·알토」의 방법과 이와반대로 전체에서부터 내부공간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르 코르뷔지에」의 에프로우치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藝術의 殿堂을 위한 資料紀行

■
Travels
Collects Material Travel for
The Sanctuary of Art
by Kim, Suk-Chul



Barbican Hall

바비칸 센터

깨어 시간을 보면 여섯시 전후다. 서울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일 시작하기전 세시간이나 그냥 있는 것이다. 그만큼 더 사는 셈이다. 그러기도 하고 식전시간은 그대로의 독자적 시간이다. 일상이 섞이지 않은 자신의 시간이기도 하다. 영어를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BBC의 아침시간은 흥미롭다. 어제의 교육성 대변인인 여자 의원이나 오늘 아침 주인공인 여성 세트디자이너 코스로브스키등 매일 새로운 사람을 알게되는 곳모닝 프로그램이 훌륭하다. 어제 잊은 기억의 잔해를 다시 모으기도하고 밤술집에서 떠올랐던 빗길 햇살같이 스쳐 가던 생각들을 그려 보기도 한다. 아침이른 시간은 밤의 즐거운 피로를 예고한다. 이번 여행중 모처럼 수확이라면 30년 경력의 담배를 끊어 버린일과 식전시간의 쓰임새를 알게된 것이다.

오늘은 요크가 바비칸 센터의 뒷 부분들을 직접 설명하며 보여주기로 한 날이다. 열시반 부터 두사람의 세시간에 걸친 여행이 시작된다. 벌써 네번째 이곳을 방문하였으나 퍼블릭 코스만 다녔지 이번같은 백스테이지투어는 처음이다.

金錫澈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키반

제한된 부지에 꾸겨 넣다보니 생긴 무리가 도처에 보인다. 센터 전부를 관장하는 운영관리 부분을 자세히 본다. 박스오피스센터와 세틀리트오피스, 건축상회 같은 영선반, 천창 밑에 자리한 퍼블리시티 오피스, 거대한 플란트를 연상시키는 기계실 등에서 큰 백여명의 스태프가 이 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백스테이지는 셰익스피어 극장과 바비칸홀 양측으로 별도 구성되었다. 극장 뒷 부분인 제작실, 분장실, 의상실, 연습실, 기술실 등은 서로 다른 레벨에 위치해 중요한 본체와의 연계가 흐트러져 있다. 제작실은 그런데로 같은 레벨이나 분장실, 의상실들은 엉뚱한 레벨에 있다. 건축가가 큰 줄거리에 소홀했던 부분이다. 객석, 무대, 뒷무대를 다 다시 돌아 보았는데 바비칸홀의 분장실과 기술실인 뒷무대는 비교적 완벽하다. 분장실은 이곳이 런던 심포니오케스트라의 홈인 관계로 홈 오케스트라와 비지팅오케스트라를 위한 두 시설이 부분적으로 겹쳐있다. 지휘자 분장실, 독주자 분장실, 2인 분장실

그리고 6인 분장실인 세가지 스타일의 분장실이 바로 무대와 연결되어 있다. 가운데 바가 있다. 우리 뒷무대가 과다시설인 듯하여 걱정 하였는데 좀 더 체계화 할 수 있으면 미래지향적일 수 있을 듯하다. 바비칸홀의 무대가 뒷무대와 레벨 차이가 있는 것은 큰 실수였다.

런치타임 비사이틀이 있어 베토벤 소나타 서클중인 릴의 연주를 보면서 정식 연주회가 아니므로 이곳저곳 자리를 옮겨 시각과 음향을 조사해 보았다. 부체형상이라 거리감은 좋으나 양력이 떨어져 친화감이 부족하고 경질 재료만에 의한 내부공간으로 해서 음의 포근함이 보지란 듯하다. 소리가 명료하기는 하나 풍부한 느낌이 덜하다. 역시 가운데 좌석은 음이 모자란다. 무대와 뒷무대가 레벨이 달라 입퇴장시 불편해 한다. 음악당은 컨퍼런스홀로도 많이 쓰여 네 동시통역 부스와 한 영사부스가 스몰뮈 리빙 및 사운드룸과 나란히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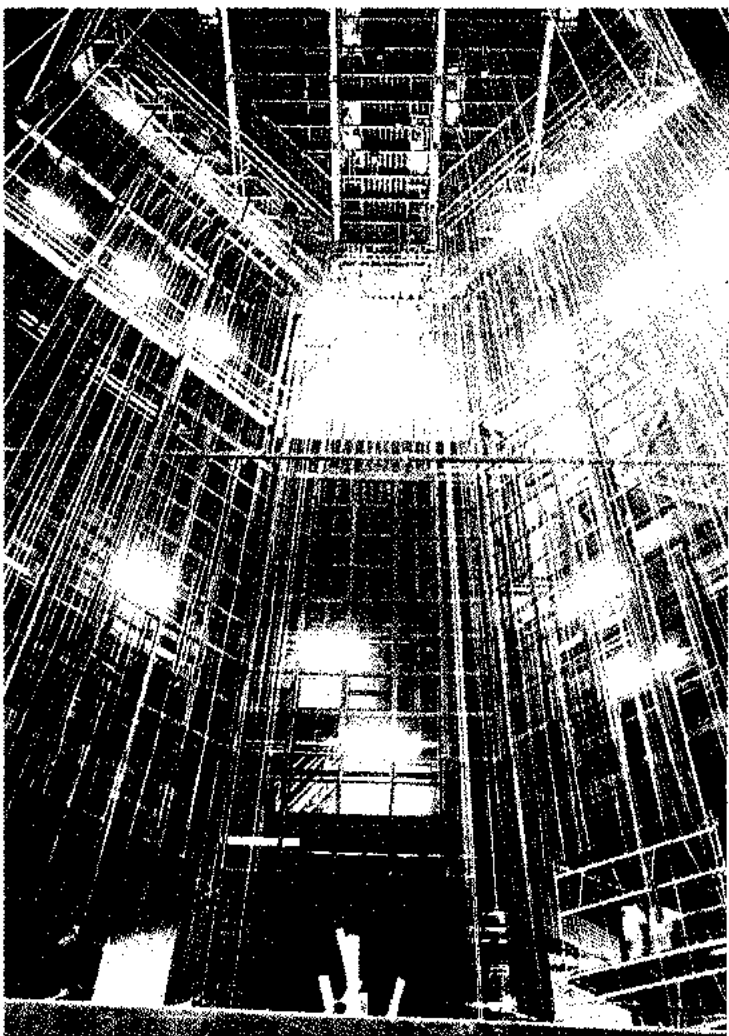
한 로비는 공유하는 시네마홀과 다목적 실험극장인 핏트는 가장 쉽게 많이 이용되는 시설이다. 마침 핏트는 연습중이라 가보지 못한다. 셰익스피어 극장 역시 연습중이라 내부로 가지 못했다. 운영총책이라해도 연습중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예술가들을 번덕스럽고 말쑥하고 약간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들 있다. 극장에 속한 분장실들은 1인용, 2인용, 6인용의 세종류다. 1인용에는 화장실, 욕실이 딸리고 개인록커와 긴 분장대, 열린옷장과 옷접섯트가 있고 2인용 분장실에는 샤워, 록커, 분장대, 열린옷장 그리고 약간의 의자들이 있고, 6인용에는 개별록커와 분장대만 있다. 메니징 워드روب에는 세탁장치가 부속되는데 별도의 환기 및 온도 조정장치가 연결되어 있다. 바로 옆 위 2층에는 막 머리를 새로 손질해 주고 있다. 바로 같은 층에 기술자들의 방이 있는데 주로 조명기술실이다. 조명기구와 부속들이 한방 가득하다. 엔지니어들 방이 바로 붙어있다. 우리는 엔지니어의 방과 기술실을 따로 두었는데 이렇게 붙여두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무대와의 연결이 수직교통만이어서 불편하다. 보일러실은



Barbican Art Gallery

에너지 컨트롤 장치가 되어있는데 특이한 것은 플랑타위를 두지않고 앞의 거대한 연못으로 대신하고 있는 점인데 잘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스텝텐턴이 극장, 음악당 모두 한군데만 있어 불편해 한다. 설명을 들으면서 보나 또 다른 국면이 많이 보인다. 여태 퍼블릭 스페이스만 보았었는데 세시간 가량 뒤를 다니면서 보고나니 이제야 전후의 윤곽이 들어난다. 열심히 하기는 하였으나 요구대로 따르다 보니 전체구성의 결구가 복잡다단하다. 복잡하고 다기한 기능군일수록 단순명료한 체계속에서 디테일이 풀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링컨센터가 규모에 비해 일단은 단순히 체계화 된 것과 좋은 비교가 될 것이다. 센터 전부를 조감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외부공간형식도 사방의 어플로치가 생김테로 이어졌고 내부공간 형식은 대규모 집합 기능군에 필수적인 메이저 스페이스와 연쇄공간의 위계가 모호하고 사인시스템만으로 이어진다. 단순공간인 지하철식의 수 없는 사인시스템은 혼란을 줄이기는 하나 예술의 공간다운 느낌을 많이 손상시킨다. 홀 하나하나를 훌륭하나 이 전부를 묶는 대공간의 단계적 개화가 부실하고 공간적 디테일이 산업미술적 디자인에 그쳐있다.

거대한 대공간들이 이차원적으로 다뤄져있다. 디자인 통합이란 공간형식의 위계가 주가 되어야지 세부디자인의 반복을 뜻하는 것이 아닌데 무엇이 잘못되었다. 미술관 같은 경우 공간설정의 경직성으로 해서 원래는



Barbican Theatrytower

전사실이었던 부분이 창고가 되고 사무실이 되어있다. 건축가의 패턴화된 사고가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표면적으로만 수용한 예가 될 것이다. 이 건물은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다가 차츰 그럴싸만 하더니 이제는 여기저기 부실한데가 자꾸 눈에 뜨인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한참 더 뛰어야겠다. 한 삼년은 절에 간샘하고 일찍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 나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그곳을 찾을 사람을 위해서 삼년만 더 일하자. 세시간을 아래위로 레벨 1에서 레벨 7까지 오르내리다보니 키가 2m가 넘는 요크도 헉헉거린다. 산에 열심히 다닌덕을 좀 보았으나 토요일 마다 술을 마셔 많이 까먹은 셈이다. 토요일 밤샘 술은 이제 그만 두어야겠다.

9/12/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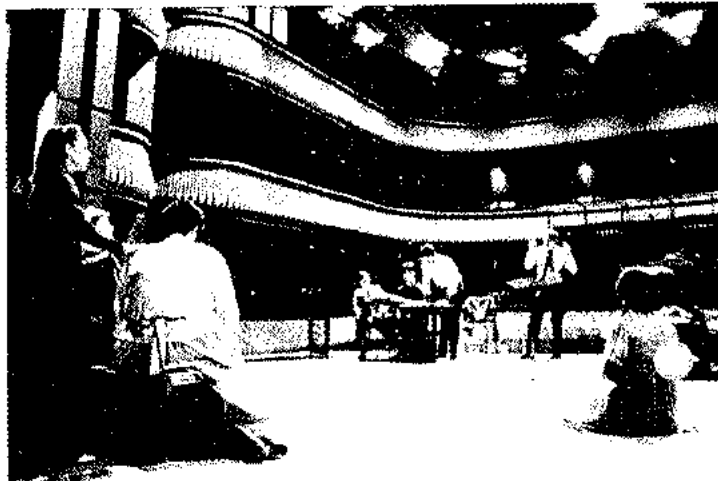
브리튼 오페라 시어터

마침 이교수가 찾아와서 어제 보기로 약속했던 로열컬리지 오브뮤지의 새로운 오페라하우스인 브리튼 시어터로 가기로 한다. 바비칸이 런던 동쪽끝이고 RCM이 있는 캔싱턴이 서쪽끝이라 시내를 관통해야하므로 튜브를 이용하기로 한다. 지난번 각시와 같이왔던 포럼호텔 근처다. 빠기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비교적 몰려있는 알버트홀을 위시해 많은 거대한 규모의 뮤지엄과 왕립음악대학, 미술대학 등

아카데미들이 모여 어느거리에 서면 300년전 런던과 전혀 같은 정경이 도처에 나타난다. 장외집에 가서 모처럼 맛있게 식사한다. 와인을 마셨더니 약간 딸딸하지만 오전내내 걸은 피로가 풀린다. RCM은 알버트홀과 마주보고 있다. 아직 일반공개가 되지 않은 홀을 연습중에 보지는 것은 결례인줄 알지만 이교수가 학부형이고 우리가 서울아트센터를 설계하는 중이라고 말해 간신히 보게되었다. 오래된 대학구내 한 중정에 서있다. 400석 규모의 고전적 형상을한 아담하지만 장려한 느낌이 있는 음악극장이다. 일듯 보기에 옛 형식이 반복된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전형적 오페라하우스가 갖는 장점은 대부분 수용하면서 그들이 잃고있는 경제성, 기술적 효율성, 공학적 합리 등을 보완한 건물이다. 건축가가 자기를 뽐내기보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충분히 공부하고 당대의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일을 한 경우다.

중정속에 짓는 건물이라 주위 건물의 재광을 차단치 않기 위해서 벽은 경사지게 하고 사방의 건물에서 내려다 보이므로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 중정에 집을지어 없어진 정원을 복원한 것이나 외부형태를 기존건물 형식과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우선한 것들이 좋아 보인다. 루이칸의 에일 아트갤러리의 경우처럼 오래된 환경으로 부터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본질적인 욕심이 있는 건물이다. 프론트 오브하우스를 거실같은 분위기로 처리한 것은 이 오페라하우스가 학교안의 건물임을 자연스럽게 암시한다. 두 갤러리와 핏트리의 복스로 이루어진 삼개층인 전형적 오페라하우스 스타일이지만 자세히 보면 시각적 애로가 있는 측면 좌석을 최소화하고 천정부분은 테크니컬 갤러리를 겸하게 해서 항상 고전형상의 오페라하우스의 문제인 무대조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음향적 고려를 위해 고전형상의 갤러리 커브가 공학적으로 수정되었고 오케스트라 핏과 무대위의 성악가의 소리가 서로 느껴지며 객석으로 함께 전달되도록 핏트 상부의 평판이 객석 커브를 따라 돌고있고 바로 이 부분이 테크니컬 갤러리가 되어 교묘한 일타이매적 기법을 구사한다. 발코니 표면을 세줄로 길게와 음향적 효과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바로앞 브라켓

Britten Opera Thea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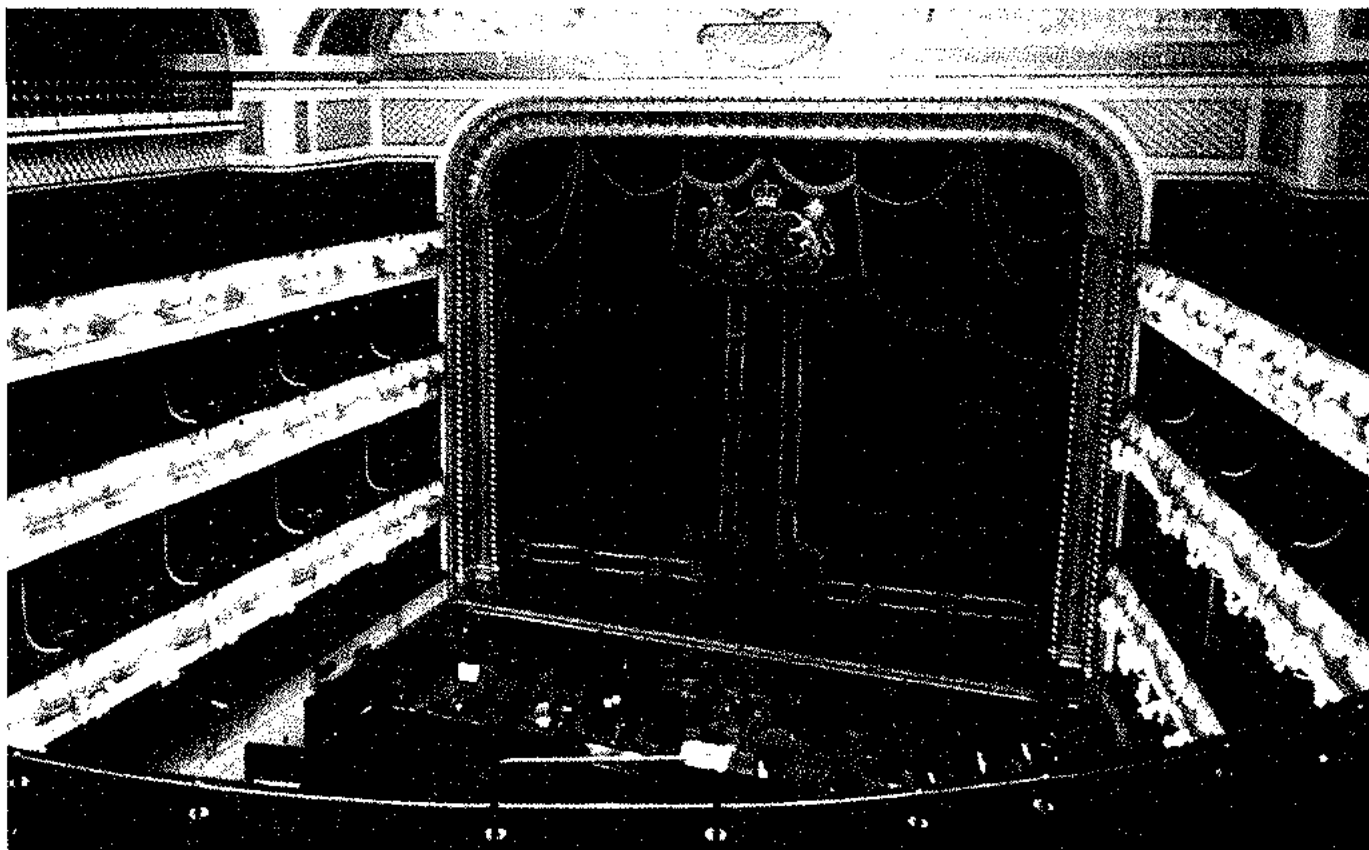


Britten Opera Theatre

조명효과에 의해 단순한 선이 다양한 장식적 효과를 주게하는 등 이곳저곳 세심한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데 자세히 돌아보니 조금더 하는 아쉬운 느낌이 있다. 발코니의 패턴을 좀더 우아하게 할 수 있었을것 같고 천정을 구성하는 테크니컬 실링과 중앙천정에는 좀더 환상적인 처리가 있었어야 했을 것 같다. 다 잘되었는데 좀 딱딱하다. 프로세니움이 격식을 완전히 갖지 못한것도 옥의 티다. 좀더 우아하고 좀더 환상적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최근 건축가들의 주제파악안된 치기들에 비하면 단연 높은 경지의 작업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브리튼 오페라 시어터를 보러왔기 때문에 다른부분은 자세히 보지 못하였지만 알버트홀과 마주선 불란서풍의 화샤드나 곳곳의 중정들과 중정과 대응된 내부 대공간과 사이사이의 계단들과 복도들이 증후한 환경적 분위기를 주고 있다. 모처럼 좋은 옛건물과 새건물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았다. 알버트홀 옆의 왕립미술대학은 하이드파크를 내려다보는 고층 현대건축인데 비교적 담담해서 덜 거북스럽다. 일층에 헨리뮤어 갤러리가 지난달 개관되었다. 브리튼 오페라극장이 11월5일 헨리뮤어 갤러리가 11월27일 개관이였다. 재수가 좋았다. 무어 갤러리는 하얀 암천한 미술관이다. 바닥이 그냥 한 단 올라가 에어콘을 처리한 기법이 눈에 띄는 정도로 조촐하고 건실한 홀이다. 한층으로 중정이 연결되었는데 그곳에 무어의 조각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 갤러리를 이용케 하였으면 더 훌륭했을 듯하다.

하프문 시어터

왕립음악대학이 있는 쪽은 런던의 서쪽 끝인데 하프문 시어터가 있는 곳은 동쪽 끝이어서 끝에서 끝으로 가야했다. 튜브를 갈아타고 다시 택시를 타고 간신히 도착한다. 비가 추적거리는 밤빛길을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에는 가슴을 적시는 잔향이 있다. 밖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다. 키가 작은 당돌한 꺾직한 여감독을 만나 멀리서 와서 내일가나 보여달라고 사정하였다. 내가 극장들을 설계하고 있는 중이라 하자 눈을 반짝인다.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가 오면 대환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갤러리에 그의 목을 매달겠다. 이집은 도저히 극장이라고 할 수 없는 창고다. 크기도 맞지않고 배치도 틀렸다. 연극이 무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거나 알아도 해낼 수 없을 열간이가 한 건물이다. TV나 신문잡지에 요란히 나고 건축가가 빠지고 다니는 것은 아는데 미친자식이다. 당신도 이런 극장을 만들면 나같은 수많은 연극인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떨결에 피고가 되었다. 말하는 여자의 진실한 눈빛을 보자 갑자기 이 여자가 좋아진다. 이렇게 여자만 보면 또 맥을 못쓴다. 극장되는 이 아가씨의 저주처럼 내가봐도 못보아 주게는 되어있다. 이교수들이 좋다면 극장내부는 대단히 건축적이다. 옆 갤러리와 뒤 기술실 부분을 건물벽 같이 처리해서 옛 극장이 시작되었던 장터 거리의 느낌을 만들어낸 것들은 일견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나도 이제 삼년넘어 이 일에 몰두 하다보니 대뜸 여기 또 한 거창한 딜레탄트가 있다는 것을 안다. 먼거리를 온 보람이라면 이런 건물이 되지않도록 다시한번 더 다짐한 일과 다이나마이트 같은 여자를 잠시 스치게 된 것이겠다. 그 먼거리를 다시 되돌아온다. 벌써 아홉시간을 내내 서서 다닌다. 그래도 오늘 또 연극을 하나 보기로 한다. 웨스트엔드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극장그룹인 메이박스 극장군의 첫 극장인 윈드햄극장으로 현재 영국 공산당 리더인 여자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유령들"을 보러간다. 웨스트엔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장의 하나인 윈드햄극장은 유부남 윈드햄과 유부녀인 메리부어의 사랑과 정열이 만든 극장이다. 우리 오페라하우스와 색색의 기본형상과 유사하다. 여전히 박스는 비어있고 사이드 갤러리는 시각이 불안하다. 인터미션에 미로같은 복도와 크지않은 로비에까지 사람들이 밀려 혼잡스럽다. 그러나 이런 계단, 복도, 홀 마다에 먹고 마시며 사람들이 밀려다니는 것도 재미라면 재밌다. 옛극장은 오히려 극장내부 그 자체만 풍성하다. 차츰 메인플로트보다 서브플로트가 더 부각되고 있지만 역시 극장의 극장다움은 극장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윈드햄극장은 정통 연극극장의 한 전형답다.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아도 관객도 배우도 스테이지 아티스트도 다들 좋아하는 극장이다. 엉성한 실험보다 이런 극장이 우선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선 기기부터 하자.



The Royal Opera House

툼 멕카서

다시 툼을 만난다. 이 양반은 만날때 마다 많은 것을 말한다. 20년간 무대를 지휘해온 사람의 깊이를 얼얼도 덜 만나고 다 알고져 한 것이 과욕일지 모르겠다. 내가 지난주 다녀온 스토페라와 브랏셀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었다. "스토페라는 두주전 방문하였다. 무대 부분중 무대는 완벽한데 상부에 몇가지 실수가 있었으나 그런데도 독일식 완벽함이 있다. 객석부분은 좋지 않다. 우선 오페라하우스 다운 분위기가 없고 최고라는 음향도 현악기부분이 흐스러지고 목관악기 측이 과장된다. 연유는 잘 모르겠으나 철골 이층 노출천정과 뽀뽀한 발코니면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음향이 음악적이지 못하다. 브랏셀 오페라하우스는 자료만 받았고 내주에 갈 예정인데 우선 도면과 사진으로 보아 우선 건물이 틀렸다. 좋은 옛건물을 버려 놓았다. 객석이야 옛 그대로나 언급할 것이 없고 스테이지 머신은 텔리스테이지에서 하였는데 실용적이다. 매뉴얼과 모터의 두가지중 크류들이 모터를 좋아해서 스토페라의 경우 전부 모터작동인데 이곳은 어떻게 두고 보아야겠다. 미묘한 지역적 선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제 방문한 바비칸홀에 대해서는 "홀 분위기가 산만하고 무대부분이 영성하게 몰려져 있고 음향이 풍부하지 못하다. 공연장에 대한 근본 생각이 모자란 것 같다. 로열 오페라하우스는 갤러리 뒷 좌석 옆 외는 대체적으로 풍부하고 섬세한 음악적 효과가 있다. 아마도 갤러리의 커브와 천정곡선벽의 디테일과 플라스터와 빅토리안 페이퍼로된 데코레이션이 좋은 음악적 효과를 주는 것 같다."고 한다. 마침 크리스마스 공연을 위한 스테이지 리허설이 있는데 세닉 디자이너와 같이 보았다. 전경과 이미지를 위한 앞 커튼이 환상적인데 비해 세트가

딱딱하다. 로열박스에 어제 참스황태자와 다이애너비가 왔었다는데 그들 말대로 테러블 사이트라인에서 수고한 셈이다. 로열박스는 원래 관객을 위한 의도도 있었던 것이므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이다. 아직 왕가의 문장 커튼을 치우지 않았다. 원래 이집이 지어지던 빅토리아 시대에는 무대가 오케스트라 펫의 중간까지 나와있어 앞 로열박스의 사이트라인이 좋았는데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이번 대수선공사에는 객석부분은 그대로인데 프로세니움을 키워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며 특별한 공연의 경우는 V.I.P를 위해 전면 그랜드 스톨에 임시 로열박스를 장치한다. 스테이지 리허설을 보고 다시 새로 지난 9월에 구입한 지멘스의 라이팅 시스템을 본다. 완벽히 컴퓨터로 조정되는 최신장치다.

향후 10년간은 너 이상의 것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여태 20여년 써오던 영국제인 랭스트랜드 것을 버리고 새로 독일것을 쓴 이유는 엔지니어들이 영국것을 거부한 때문이라 한다. 영국국립극장이나 바비칸의 경우 시스템은 완벽하나 무대조명이나 무대기계의 불안이 메뉴랙취러에 일부 그 책임이 있었다는 말을 듣는다. 싸기만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 시공자들 생각을 하면 문득 맥이 풀린다. 아무도 바라지 않는 경제를 추구하는 그들은 과연 누구의 사람들일까.

바비칸의 로열 셰익스피어극장의 상부 기계장치는 5년내로 다 바꾸어야 한다.

감수록 일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차츰 이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될 것이다. 처음 시작해서 그래도 용하게 여기까지 왔다. 로비에서 연습중인 백여명의 오케스트라를 보니 건물도 잘 지어야 하지만 역시 잘 쓰는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저러나 역시 로열 오페라하우스는 건축으로서도 훌륭하다. 처음 볼 때부터 시년 가까이 되었고 공연도 몇번 보았고 스테이지 리허설은 네번씩이나 보고 객석이나 로비, 무대등은 대여섯번씩 둘러보았는데 다시 올때마다 좋은 곳이 더 보인다. 시각의 개선을 위해 엇갈려 객석배치를 하면서 통로를 가지런하게 하기 위한 반짜리 턱의자 등은 거대한 것들이 갖는 미소로운 수사여서 더 느낌이 좋다.

화랑가를 산책한다. 16, 7세기를 백년전부터 취급해온 것과 램브린트의 동판화로 유명한 곳과 헨리머어등 조각가의 판화를 주로 하는 곳, 최근의 작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전시하는 곳 그리고 작고작가를 재발견하여 전시하는 곳등의 다섯 화랑을 골라 살펴본다. 어느 경우나 그렇지만 예술산업의 경우 독특한 자기의 자리를 가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 같다. 나중 두 화랑이 인상적이다. 중등을 소재로한 독특한 아라베스크식 그림을 그린 영국화가의 작품과 여자의 몸과 눈의 표정을 그린 오십년전의 한 아랍화가의 작품들이 신선한 감각을 준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느 기준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평가할 수 있을 것과 아직 알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회화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인가하는 기초적 의문을 다시 생각한다. 단순히 그린다는 것에서 나아가 어떤 정신적인 것을 표현하지 못하면 평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신적 배경의 깊이나 넓이가 더 본질적인 까닭일 것이다. 다섯시나 여섯시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내일은 새벽에 떠나야 하니 이제 한시간 물건들을 사야겠다. 스카치하우스에 가서 셰타를 들, 근처 케미스트숍에 가서 인형하나를 샀다. 간단히 끝나서 즐겁다. 외국에 나와서 그들의 상품을 구경하는 일은 또 하나의 재미지만 사기로 하고 다니면 여러가지로 지친다.

다시 로열 오페라하우스로 간다. 드디어 완성된 로열 오페라하우스의 증축 계획안 전시회를 본다. 한달전에 문을 닫은 전시회지만 계속 두어 두는 모양이다. 자세히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였는데 박상 전부를 동시에 붙여놓고 보고 또 대몬스트레이션 모델들과 거의 미술작품에 가까운 투시도 둘을보니 새롭게 많은 것을 알게된다.

기왕의 오페라하우스의 본 건물은 두고 부지내의 다른 기존건물들을 오페라하우스와 대응적인 한 상업건물로 짓고 두 건물 사이를 중간구조로 연결한다. 이 중간구조는 지층은 기왕의 코벤트가든 거리를 재구성하는 형식이고 상부에는 기왕의 오페라하우스에 부족한 뒷무대 기능군을 장치하는 것이 주 골자다. 그런데 건축가가 기왕의 건물과 경쟁 하고저한 중간구조의 내부 로툰다가 현재의 주현관홀과 혼동되고 편심되어 혼란이 예상된다. 흐름에서만이 아니라 공간적 위계의 혼동이 오지 않을까 한다. 과거의 궤적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독자적 표현을 추가하고자한 의지는 알겠으나 열심히 만든 잘 정돈된 디테일들에 비해 기본 결구의 힘이 미약해 보인다. 남이 한 일은 한수 위에서 보이기 마련이지만 우리것을 그들이 보면 어떻게. 공연장과 같은 많은 축제적 흐름을 담는 공간에서는 공간적 위계와 이에 따른 공간형식의 단계적 전개가 자연스러운 전이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점에서 아직 더 연구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이 작가를 만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 간결한 전시방법은 호감이 간다. 우리도 6월중에는 전시회를 가질 생각인데 이들 보다는 내용도 좋아야겠지만 이런 표현에서도 한결을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대충 일은 끝났다. 똥에 가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외식을 즐긴다. 장냄새가 아직 애리다. 간이 맞지는 않지만 런던에 오면 이집에 오는 것이 행사가 되었다. 오다가 런던 대주교가 집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 성회를 우연히 조우하게 되었다. 합창단 성가를 파이프올간과 함께 처음 듣는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온다. 새벽에 떠나야하니 짐을 싸놓고 자야한다. 한참 짐을 챙기다보니 마치 홀아비 같다. 이렇게 혼자 한 열흘쯤 다니다 보면 혼자 사는 일의 사소한 즐거움들이 몸에 베어온다. 집에 갈 생각보다 어디 영뚱한 다른 곳으로 더 가고 싶다. 일단 아니면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되면 호주머니에 가진 것 만으로 일하고자 한다. 정작 일은 시작한 후에 그 일과 잠재된 자신의 가능성으로 부터 더 중요한 생각들이 시작되는 법인데 쫓기는 시간속에서 과연 무슨 창조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다. 그러나 건축가는 본래 사회 그 자체로 부터 시작해야 되는 직업이므로 우리가 현실 운운하는 것은 정치가의 말장난과 다를 것이 없다. 열심히 해서 뭘일이 있고 재능으로 할 수 있는 대목도 있고 역시 사회적 흐름의 물결을 알아야 될 국면도 있다. 어쨌보면 건축은 사회라는 강위에 명제라는 보트에 전인된 수상 스키 같은 느낌도 있다. 모든 흘러가는 것 사이의 각인을 우리는 시도하는 것이다. 밤이 늦어 나른하다. 깊은 잠을 자고싶다.

Wyndham's Theatre



大學施設計劃과 所要判斷方法

FEATURE
Facilities Plan of
University and
Method of Requirement
Judgement
by Whang, Jee-Hyun

大學施設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과정을 거쳐 신축되어야 한다. 대학시설 계획은 전통적인 대학의 기능인 교육·연구·사회봉사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요구조건을 공간의 개념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계획과정을 크게 학사계획(Academic Plan)과 공간계획(Space Program), 그리고 설계(Design)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학사계획과 공간계획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教育示方書(Educational Specification)와 이에 요구되는 대학시설 소요판단 방법의 比較, 檢討를 통하여 대학시설계획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 教育示方書(Educational Specification)

가. 개념규정

교육시방서는 계획할 시설의 空間과 物理的 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정보(Information)를 수집·정리하여 체계화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라 정의한다.

전통적으로 설계하기 전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나열한 것으로부터 현재에는 다양한 방향으로 교육시방서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교육은 동적인 상태로서 장래 변화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 시설의 가변성·융통성을 부여하여야 하며,
둘째, 大學教育의 다양성·전문성으로 시설이용자 즉 학생·교수들의 활동 Pattern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세째, 大學施設使用의 복잡성과 건축물의 격증으로 설계정보가 심층화·전문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시방서의 영역은

포괄적이며 장기적 교육수요와 교육 방법뿐 아니라 수용되어질 活動에서 예견되는 특성이나 기능적 분석과 함께 설계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심리적·미적 고려사항과 세부시설 프로그램까지 포함된다. 즉 교육시방서는 대학시설의 이용·관리자와 설계자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 교육시방서의 역할

교육시방서의 역할을 설계작업前과 설계中 그리고 設計完了단계로 나누어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1) 설계前

- 설계자와 대학관리자 사이의 지침서 및 대화의 도구로 이용된다.

- 대학시설계획에 관련된 정보와 의사결정사항을 체계화하는 과정이다.

- 교육방법, 운영계획, 시설투자규모 등에 대한 여러代案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설계 후에 자주 변경되는 일을 억제할 수 있다.

- 장래의 要求와 必要事項에 대하여 판단함으로써 설계과정에서 시설의 확장 및 융통성을 고려할 수 있다.

2) 설계中

- 설계계획과정의 지침 및 설계의 대안을 創出하게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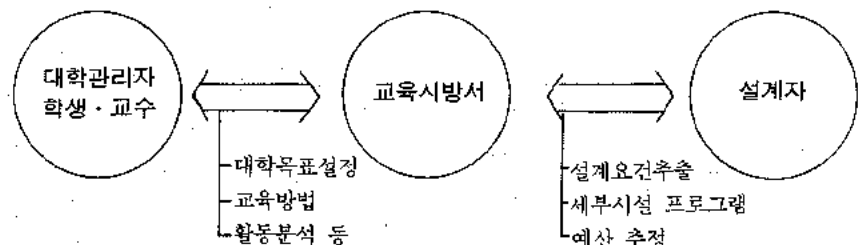
- 설계검토평정에서 대학시설담당자의 검토기준을 제시한다.

- 예산과 시간 등의 제약여건에 기초를 두어 시설의 질과 범위를 결정한다.

- 설계자에게 창의적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하며 대학시설 담당자와의 異見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설계完了後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제공한다.

- 확장과 변경을 고려하여 계획한



黃智顯

문교부 교육시설국 기획과

시설이 되도록 한다.

• 대학관리자들에게 장래시설을 무계획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방향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시방서의 역할들은 결국 시설의 질과 교육적인 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대학관리자 및 계획할 시설의 사용자(학생·교수등)의 의사와 기존시설의 보유 및 利用, 상태 등을 검토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 시간, 인력, 법적규제 등의 제반 制約條件을 검토하여 대학 나름대로의 實現可能하고 妥當한 要求事項을 기술한 總體的인 것이다.

다. 교육시방서의 構成要素

교육시방서에 포함할 일반적인 구성요소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設立目的

계획할 시설의 간단한 설립목적용 기술한다. 즉 시설의 필요성, 사용계획, 일반적인 목적 등을 기술한다.

● 大學 및 地域現況

대학의 연역, 특징, 학생규모와 그 추이, 대학을 위한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사회 내에서의 대학의 역할 등을 광범위하게 기술한다.

● 教育計劃

대학의 교육목표와 목적, 그리고 교육방법에 대하여 제시한다. 계획할 시설에 수용할 학과, 학생, 교수, 이들의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육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細部施設 프로그램

活動空間을 細部施設別로 즉 강의, 집회를 위한 시설, 교수연구시설, 보조기능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使用計劃 및 收容人員을 각 세부시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각 시설간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즉 세부시설소요를 판단하며 그 외 주된 활동을 위한 부속시설의 필요성과 소요규모를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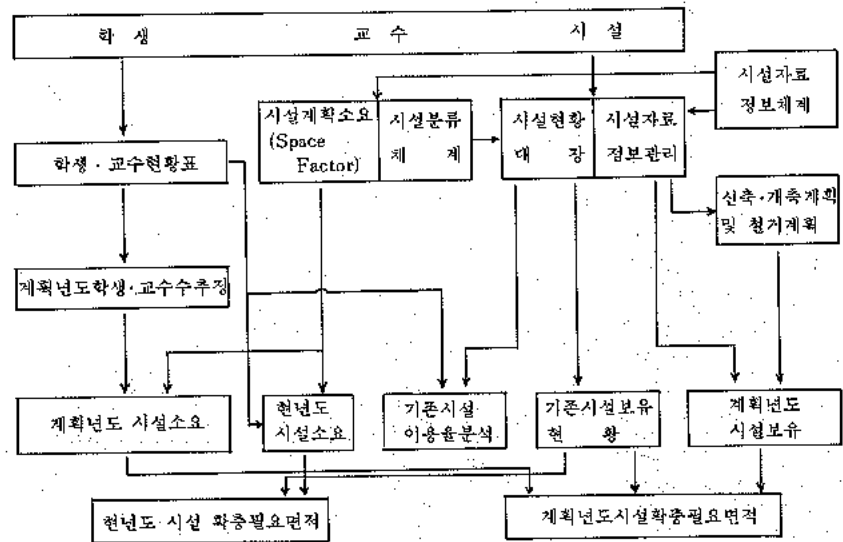
● 環境要素

음향, 시각, 채광, 온도 등의 환경적 요소와 외관적인 면에 대하여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다.

● 所要器械 및 備品

수용할 활동들에 필요한 적정한 소요기기 및 비품등을 나열한다.

● 기타事項



(그림 1) 대학시설소요산출 과정표

건물의 안전성, 경제성, 융통성과 지역사회의 이용편의, 부대시설 등에 대한 필요한 조건들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2. 施設所要算出方法

대학시설의 소요산출 방법은 기존대학 시설 확충을 위한 방법과 신설 또는 이전대학의 시설소요산출방법 등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산출방법의 정밀도에 따라 세부적인 방법(Detailed method)과 계략적인 방법(General method)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대학의 시설확충을 위한 방법은 현 시설의 보유와 이용상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게 되므로 상당히 복잡한 시설소요산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 1, 시설소요산출과정표 참조) 세부적인 방법으로 시설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개설하는 교육과정 과목별로 강좌규모(Class Size)와 수업시간을 추정하고 학과 또는 학문영역별로 학생수 추정 및 교수의 주당 수업시간, 강의실 규모별 좌석당 기준면적, 실험실 학문영역별 좌석당 기준면적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방법은 주로 대학내의 일부학과 증원, 증설에 따른 교육용 시설의 확충을 위한 細部施設計劃時에는 반드시 사용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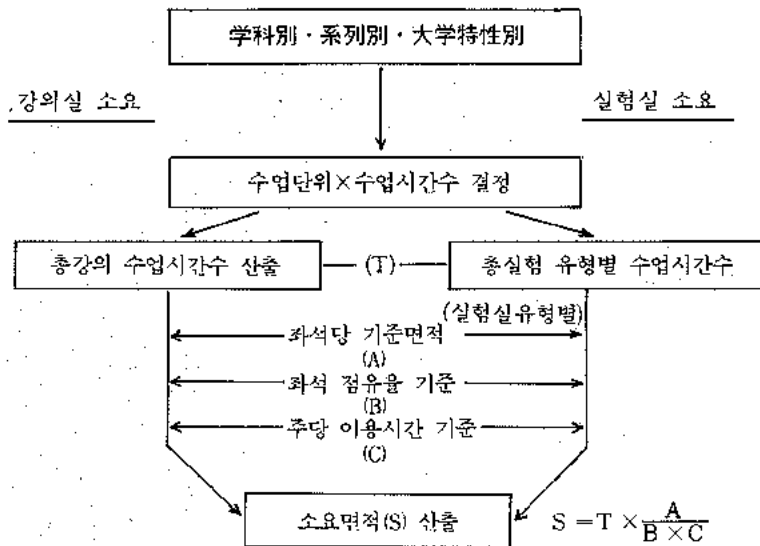
그러나 시설의 장기적인 소요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계략적인 방법(General method)은

5년~10년의 장기시설투자규모 추정에 사용된다.

가. 施設所要 산출단위

대학시설소요 산출단위는 학생수와 총주당 학생 수강시간수(Weekly Contact Hours)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산출단위는 시설의 종류와 산출방법의 정밀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학생수를 單位로 施設所要를 산출하는 방법은 학생 1인당 점유하는 적정단위 면적에 총 학생수를 곱하여 소요면적을 산출한다. 이 방법은 소요면적을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시설기준설정(예, 대학설치기준령)에 사용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강의실, 실험실 등의 所要面積을 산출하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강의실, 실험실의 소요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총 주당 학생 수강시간수(W.C.H)에 학생수당 1시간에 필요한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산출방법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수업시간수에 필요한 가장 정확한 시설소요를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미국의 西部高等教育協議會(Western Interstate Commission for High Education)에서 발간한 Higher Education Facilities Planning and management manual과 서울대학교 관악종합캠퍼스 마스터 포랜을 비롯하여 여러 移轉大學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용되었다.

대학 학사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그림 1) 강의실·실험실 소요면적 산출과정

따라 시설소요를 판단하며 아울러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전제로 한 총 주당 학생 수강시간수(W.C.H) 단위로 교육용 강의실, 실험실의 소요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나. 細部施設別 所要算出

1) 강의실, 실험실

대학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시설로서 학생과 교수의 만남장소로 대학시설중 기본적인 시설이다. 총 주당 학생 수강 시간수(W.C.H) 단위로 강의실, 실험실 산출과정과 시설요소(Space Factor)는 아래와 같다. 강의실, 실험실 소요면적(S)은 아래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S = T \times \frac{A}{B \times C}$$

이 식에서 좌석당 기준면적(A)은 강의실의 경우 그 규모(예: 20명, 40명, 60명, 80명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실험실의 경우 좌석당 기준면적은 실험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강의실 규모 및 실험실의 특성에 따라 좌석당 기준면적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일반적인 경우 아래표에 준하여 좌석당 기준면적을 설정한다. 강의실, 실험실의 시간이용율과 좌석 점유율은 대학시설의 운영방법 강의실 규모 및 실험실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강의실의 경우 시간이용율은 실험실에 비해 높은 것이 일반적이며 좌석점유율은 실험실이 강의실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위에서 제시한 좌석당 기준면적과 시간이용율, 좌석점유율을 결정한 후에 주당 학생 이수시간 1시간당 소요면적($\frac{A}{B \times C}$)을 산출하면 아래표와 같다.

2) 敎授室

敎授室은 대학시설 총면적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는 시설로서 교수들의 사무실, 개인연구(Paper Work), 학생면담 등을 위한 시설이다. 敎授室은 교수연구실 즉 개인적으로 실험을 위한 기기를 설치한 연구용 시설과는 다른

시설이다. 교수실의 기준면적은 일반적으로 18㎡~23㎡까지이나, 건물의 모듈(module)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교수실 산출의 근본이 되는 것은 敎授數의 산정에 있다 하겠다. 기본적으로 전임교수 이상 1인에 1실을 배정하는 것으로 한다. 敎授數 산정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임이상교수의 주당평균수업시간을 산출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총 주당 수업시간중 전임이상의 교수가 부담하는 시간으로 나누어 전임이상 교수의 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전임이상 교수 수 소요

$$= \frac{\text{전임이상부담 총 주당 수업시간수 (B)}}{\text{전임1인당 주당 평균 수업시간수 (D)}}$$

D는 대학별,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당 평균 수업시간수를 정한다. (일반적으로 주당 9시간을 기준으로 함) B는 수업단위, 개설하는 교과과목수, 대학학사 운영방법, 계열특성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대학실정에 적합한 근사치를 적용한다. 이 방법이 교수수 산정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둘째는 전임이상의 교수 1인당 학생수 비율을 분석하여 교수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면

(A) 교육용 강의·실험 좌석당 기준면적표

구	분	좌석당 기준면적	비 고
강 의 실	학 부 용	1.3㎡	40~60명 강의실 기준 20명 이하 강의실 기준
	대학원용	1.7㎡	
실 험 실	이 학	1.7㎡	
	이 학	4㎡	
	공 학	6㎡	
	농 립 학	4㎡	
	약 학	6㎡	
	예·체능	4㎡	

2B) 실험실은 학문분야별 또는 실험과목별로 구분하여 좌석당 기준면적은 정하는것이 바람직함

(B, C) 교육용 강의·실험실 시간이용율 및 좌석점유율 결정

구	분	평균주당 시간 이용율*	평균좌석점유율
강 의 실		65% (39시간)	60%
실 험 실		35% (16시간)	80%

2A) * 평균 주당 시간 이용율은 주당 총 이용가능시간 45시간을 기준으로 이용율임. 세부적인 소요면적을 위해서는 강의실 규모별·실험실 특성별로 시간이용율과 좌석점유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주당 학생이수 1시간당 소요면적표

구	분	W.C.H 1시간당 소요면적	비 고
강 의 실	학 부 용	0.07407㎡	
	대학원용	0.0969㎡	
실 험 실	이 학	0.1349㎡	
	이 학	0.3175㎡	
	공 학	0.4762㎡	
	농 립 학	0.3175㎡	
	약 학	0.4762㎡	
	예·체능	0.3175㎡	

아래와 같다.
전임이상 교수 수 소요

$$= \frac{\text{총 학생수}}{\text{전임이상 교수 1인당 학생수}}$$

위 방법은 대학전체에 필요한 교수수 산정에는 간편하나 계열별, 학과별 교수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研究用 施設

연구용 시설은 수업 이외의 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그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교수의 個人學術研究 및 Project 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실험을 요하는 시설

② 대학원 연구실: 실험 이외의 연구(Paper Work)를 위한 시설로서 특히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원생 연구실

③ 大學附設 研究所 施設

이러한 연구시설은 일률적으로 산출하기는 대학별·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즉 연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지 않고는 소요시설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대학나름대로 연구용 시설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대학의 전체공간을 적절히 配分·管理하는데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학·농학·공학·의학·약학체계의 교수연구용 시설은 교수 1인당 6㎡~15㎡ 사이에서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하며 실험 이외의 연구(Paper Work)를 위한 시설은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원생을 위한 시설로써 대학원생 1인당 4㎡를 기준단위로 대학별로 대학원생 수용 비율을 결정하여 시설소요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4) 大學行政施設

대학행정시설은 학생과 교수의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의 시설로서 학과·단과대학·대학원 및 본부행정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의 소요면적 산출은 다른 시설에 비하여 상당히 간단하다. 학과·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시설은 학생 규모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학과수·단과대학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학본부는 대학조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학생규모에 따라 학생 1인당 대학본부 면적은 줄어드나 총소요 면적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학과 행정시설은 학과장실·사무실·회의실·학과도서관 등이 있으며, 단과대학 행정시설은 학장실·학과장실·사무실·회의실·자료실 등이 있으며 대학원 행정시설은 단과대학 행정시설과 유사한 실을 갖추어야 한다.

5) 지원 및 복지시설

대학의 지원 및 복지시설의 종류로는 도서관·체육관·학생회관·전산실·박물관·학군단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대학의 운영방법에 따라 그 규모는 차이가 있다.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지원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기숙사는 대학의 재정형편·운영방법·학생주거현황·부지가용면적

및 지역여건에 따라 그 수용규모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대학자체의 정책에 따라 수용규모를 판단한다.

라. 총소요시설 규모산정 예시

위 나항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신설 대학의 소요시설(강의실·실험실·교수실·연구실·학과·대학행정실) 규모산정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 시설에는 아래의 표와·복지시설을 제외한 교육용시설로써 인문계열의 경우 학생 1인당 5.38㎡, 공학계열의 경우 9.9㎡, 이학계열의 경우 10.04㎡, 교육(인문)계열의 경우 5.44㎡으로써 평균 학생 1인당(대학원생 포함) 7.79㎡으로 산출되었다.

1) 계열별 학생수 및 강의·실험수업시간수 결정

계열별	학 생 수		주 당 수 업 시 간 수		
	완성년도학부학생수	대학원학생수	학 부		대학원강의
			강 의	실 험	
인문사회계열 (00)	1,600	50	18	0	9
공 학 계 열 (11)	2,200	230	16	6	9
이 학 계 열 (6)	960	120	14	8	9
교육(인문)계열 (8)	1,280	150	18	1	9
계 (65)	6,040	570	-	-	-

2) 계열별 총주당 학생수강시간수(W, C, H) 산정

①	⑦		⑧	⑨	비 고
계 열 별	학 부 시 간 수		대학원강의시간수 ⑨=③×⑥		
	강 의 ⑦=②×④	실 험 ⑧=②×⑤			
인문사회계열	28,800	-	450		
공 학 계 열	35,200	13,200	2,250		
이 학 계 열	13,440	7,680	1,080		
교육(인문)계열	23,040	1,280	1,350		
계	100,480	22,160	5,130		

3) 교육용 강의·실험 소요면적산출

계열명	강 의 실 소 요 면 적 (㎡)			실험실소요면적(㎡)	총 계(㎡)
	학 부	대학원	소 계		
인 문 계 열	2,133	44	2,177	-	2,177
공 학 계 열	2,607	218	2,825	6,286	9,111
이 학 계 열	956	105	1,061	2,438	3,499
교육(인문)계열	1,707	131	1,838	182	2,020
계	7,403	498	7,901	8,906	16,807

※) 소요면적=W, C, H (⑦, ⑧, ⑨) × 주당 학생이수 1시간당 소요면적

4) 교수실 소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재 열 별	강 령 규 모			W. C. H			전임교수 수업시간부담 비 율	교수 1인당 주당수업 시간수	교수수소요
	강 령		실 험	강 령		실 험			
	학 부	대학원		학 부	대학원				
인문계열	40	10	-	28,800	450	-	0.8	9	68
공학계열	50	10	25	35,200	2,250	13,200	0.9	11	119
이학계열	40	10	20	13,440	1,080	7,680	0.9	11	68
교육계열	50	10	25	23,040	1,350	1,280	0.8	10	52
계	-	-	-	100,480	5,130	22,160	-	-	307

$$* ⑩ = \frac{⑦ + ⑧ + ⑨}{③} \times ⑥$$

교수실 기준면적은 실당 22㎡으로 가정함.

5) 연구용 시설

계 열 별	교 수 수	대학원수	연구용실험실	대학원연구실	계
인 문 계 열	68	50	-	120m ²	120m ²
공학(인문) 계열	119	250	1,428m ²	-	1,428m ²
이 학 계 열	68	120	612m ²	-	612m ²
교육(人文) 계열	52	150	-	360m ²	360m ²
계	307	570	2,040m ²	480m ²	2,520m ²

註) • 연구용 실험실은 실험을 요하는 계열의 교수 1인당 면적을 공하여 산출함(공학계열 12m², 이학계열 9m²)
• 대학원 연구실은 대학원생 1인당 4m²에 60%를 수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6)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시설

• 학과행정시설기준(안)

학 과 장 실	학 과 사 무 실	학 과 세 미 나 실	계
30m ²	35m ²	50m ²	115m ²

○ 단과대학 행정시설기준(안)

학 장 실	단과대학사무실	사무부속실	단과대학회의실	단과대학도서관	계
50m ²	50m ²	35m ²	60m ²	80m ²	275m ²

7) 계열별 소요시설 총괄표

계열별 시 설 명	인문계열	공학계열	이학계열	교육계열	계
강 의 실	2,177m ²	2,825m ²	1,061m ²	1,838m ²	7,901m ²
실 형 실	-	6,286	2,438	182	8,906
교 수 실	1,496	2,618	1,496	1,144	6,754
연구용시설	120	1,428	612	360	2,520
학과행정시설	1,150(10개 학과)	1,265(11)	690(6)	920(8)	4,025
단과대학행정시설	275	275	275	275	1,100
소계(Net Space)	5,218m ²	14,697m ²	6,572m ²	4,719m ²	31,206
총 면 적 (Gross Space)	8,610m ²	24,250m ²	10,844m ²	7,786m ²	51,490m ²

註) Net Space×1.65=Gross Space

3. 大學施設計劃의 向後方向

계획의 일반적인 원칙인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시설 계획도 그 과정이나 방법은 유사하나, 대학시설의 특성상 다른 시설의 계획 접근방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학시설계획과 다른 시설과의 큰 차이점을 나열하면, 첫째로 장기적인 대학의 성장발전 속도가 빠르며 또한 이에 대한 추정이 불확실하다. 즉 학문분야의 전문화·다양화, 학생수의 변화, 대학교육내용 및 방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다.

둘째, 건물의 사용연한(일반적으로 50년 60년)에 비하여 대학사회의 발전 속도가 빠르므로 시설의 가변성, 융통성을 타 시설보다 더욱 고려되어야 하며 세째, 대학시설의 이용자가 다양하므로 이들에 대한 시설의 규모와 질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시설규모의 파다에 따라 학과간·단과대학간의 외형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대학시설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이론의 정립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향후 대학시설 계획의 발전방향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실정에 적합한 대학자체의 세부시설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시설공간의 학과간·대학간 배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대학시설에 관한 의사결정을 경험적·단편적 판단에 의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분석과 기준 설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2) 대학시설계획수립에 필요한 전산자료은행(Computerized Data Bank) 설치가 필요하다. 즉 시설에 관한 자료가 방대함으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과거의 Data를 축적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계획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은행의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대학교육프로그램과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설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교육자와 건축가의

의사전달, 상호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계획가가 절실히 요구된다. (4) 과학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기초과학 연구시설의 대폭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과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5) 대학시설의 유지·관리면에 우선 순위를 높여야 한다. 앞으로는 대학시설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건물의 사용연도까지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될 수 있도록 기존시설에 투자확대가 강구되어야 한다.

(6) 대학시설의 합리적인 분류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시설의 관리 및 계획측면에서 요구되는 자료의 분류 및 분석에 용이하고 과거 자료와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시설분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시설의 적정기준에 관한 연구, 1984.
-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시설기준 연구, 1981.
- Hales, Lee A., Computer-Aided Facilities Planning, Industrial Engineering 19, 1984.
- Kenny, Grace and Ken Foster, managing Space in Colleges, The Further Education Staff College, 1983.
- Palmer, Mickey A., The Architect's guide to Facility Programming,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1981.
- WICHE, Higher Education Facilities Planning management, manual One: Planning and management, WICHE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s Division, 1971.

전화를 기다립니다 !

본회 편찬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편집계획을 가지고 여러 회원님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회원작품 편집예정 계획

- 5월 : 업무용건축(Office, 은행, 기타)
 - 6월 : Hotel 등 상업용건축
- 작품이나 글(논문, 기타)을 기고하시고 싶은 분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이 찾아 뵙겠습니다.

☎ 581-5711~4(출판사업부)

봄별이 있는날

李珏杓

66

우리의 일이란 것이 알 속에서 알을 깨는 아픔을 수반하는 작업이라면 알 밖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해서 그 같은 바보같은 짓을 한다는 것이 차라리 행복에 겨운 일인지도 모른다. 오직 그 바보같은 짓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99

오늘 따라 화사한 봄별이 더욱 따사롭다.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어디 양지바른 무덤가 잔디밭에 누워 마른 강아지풀대라도 꺾어물고 봄별을 받아들이고 싶다. 그 봄별속에서 가물 가물한 어릴적 추억도 해보고 즐거웠던 과거의 일을 되새겨 보기도 하고 아니던 그냥 눈 감은 채로 봄별을 만끽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수없이 올려대는 전화, 프로젝트들의 데드라인, 약속, 계약, 잘 안풀리는 계획안들, 심의, 허가, 현장의 골치거리……

이 모든 것들에서 잠시 떠나 또 다른 눈으로 내자신을 바라보며 앞날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밀어붙이는 제약의 회오리 바람의 한가운데서 전더내야만 된다. 제도판위의 연필과 지우개의 작업은 행복스럽다. 제도판에 앉기까지의 바람, 제도판을 떠난 후의 새찬바람이 우리를 불안스럽게 한다. 거대한 장벽에 막혀 막막할 때도 있고 미로(迷路)속에서 맴돌기도 한다. 또 그것을 벗어났어도 물거품으로 변하여 어렵게 사라질때도 있다. 그럴때는 같이 고생했던 동료직원들을 바라본다는 자체가 아픔이다. 아픔과 미련을 가슴에 간직한 채 새로운 기분으로 제도판을 끌어당긴다. 새로 한다는 마음가짐속에는 또 다른 불안의 양금이 가라앉아 있지만 기대감도 그만큼 있다. 그러기에 다람쥐 쳇바퀴돌듯 남이 보기에 바보같은 짓을 되풀이 한다. 동료들과의 작업이 다시 시작되고 그때는 먼저 일은 까마이 잇는다.

어렵게 낳은 자식이 정이 더 든다던가?
세찬 회오리 바람 한 가운데서 태어난

자식이 자랑스럽다. 나와 동료들의 결실이다. 태어난 자식이 오래도록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언젠가는 또 다른 바람에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래도록 남아서 나와 동료들이 가고 없어도 자식덕에 나와 동료들이 기억이 될 수 있다번 거기에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우리의 일이란 것이 알 속에서 알을 깨는 아픔을 수반하는 작업이라면 알 밖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해서 그 같은 바보같은 짓을 한다는 것이 차라리 행복에 겨운일 인지도 모른다. 오직 그 바보같은 짓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동료들과의 고생은 퇴근후의 한잔 술에 에피소드로 녹아버린다.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회오리 바람도 알을 낳후는 별것아닌 에피소드로 남는다.

수없이 걸려오는 전화, 프로젝트의 데드라인, 약속, 계약, 잘 안풀리는 계획안들, 심의, 허가, 현장의 골치거리……

또 다른 자식을 잉태하기 위한 고통스런 과정을 이겨내보자! 오늘 따라 화사한 봄별이 더욱 따사롭다. 봄별을 즐기는 것이 나에겐 사치다. 봄별속에서 다른 나를 만나기 보다는 일속에서 나를 만나자. 연필과 지우개, 종이기가 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료가 함께 있다. 오늘같이 화사한 봄별이 있는날 잘생긴 자식을 얻을 수 있을지 그 누가 아나?

엄·이중합건축사사무소



金琪碩 /

1944년 9월 8일생 경북 김천출생

1972년 제 1 시집 “안”출간

1974년 제 2 시집 “밤바람 속에서”출간

1974년 現代詩學을 통해 추천

1974년~1976년 “달”同人활동

대표작 長詩 “샤먼의 아이”

連作詩 “이파리를 지우며”

長詩 “사라진 사람의 노래” 等

비둘기가 품고 있는 집

金琪碩

바람부는 어느날밤
나는 바람이 들지않는 방에 앉아
하이얀 비둘기를 보았지.
그리고는 생각했지.
저 가냘픈 비둘기가 톱밥을 담은 질그릇위에
웅크리고 앉아 품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차돌맹이를 담은 하나의 조그만 알일까?

비둘기가 품고 있는것은
과연 무엇일까?
비둘기는 무엇을 품고 있으며,
나는 도대체 왜 난데없이
이런 의문을 품게되는 것일까?

아침길에 나는 동화와 같이
아름다운 마로니에 사이를 헤엄치듯
천천히 바퀴를 굴러가고 있었지.
이젠 바람이 들지 않는 따스한 가슴으로
여전히 바람부는 밖을 내다보며
핸들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홀끗 모퉁이 가게의
커다란 유리창 안에서 웃고 있는
판넬 M.M.의 눈빛을 보았어.
그리고 그것이 비둘기가 품고 있는 그것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았지.

그것은 하나의 複製였다.
그것은 단단한 차돌맹이를 담은
어떤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空間의 複製였다.
생명의 複製, 집의 複製였다.

비둘기가 품고 있는 집
그것은 우리가 콘테를 분지르며
그리고 또 그리는 누드와 같은 것이었다.
우리들의 複製
판넬 속에서 만났던 M.M.의 눈빛
되풀이 되는 끼(氣) 같은 것.

즐겁지 않은가
이렇게 되풀이되는 複製를 통하여
나타나는 새로운 우리들의 모습이
되돌아보는 거울 속
그래서 지금 비둘기는 집을 품고 있는 것이다.
마치 우리들이 나날이 집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複製를 품고 있는 것이다.

建築과 造景

— 景觀 속의 建築 —

■
Report
Architecture and Landscape
by Oh, Sang-Pyung



경관 속의 건축

1. 景觀 속의 建築

고속도로, 항만, 공항, 간척지, 거대한 댐에 의한 인공의 호수와 더불어 인간이 행하는 자연에 대한 景觀의 變化 행위중 건축 또한 매우 두드러진 한 경관 변화의 행위일 것이다. 건축물은 계절, 기상, 변화등 자연이 변화하는 環境으로부터 인간의 생활을 보호하며 나아가서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고 生活用品을 생산 조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기도 하면서 그것이 도입되는 경관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건축은 다양한 부재와 공학적 기술 인간의 영감등이 결합된 복합 예술 작품으로서 역사의 변화와 더불어 무단히 발전되어 나왔고 앞으로도 그 발전은 무궁할 것이다. 古代, 中世,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를 거치는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정형식의 건축은 庭園과 苑地를 건축적인 조직화된 개념으로 처리 함으로서 부지의 형태마저 기하학적 사고 방식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과도한 인공적 경관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조경은 건축으로 부터 서서히 이탈하기 시작하여 18세기 英國의 自然風景式과 미국의 自然主義의 公園 개념으로 발전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19세기에 일기 시작한 近代 建築이 절충주의 양식(eclecticism)의 정글로부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근대 건축 혁명은 구조적 형태와 空間組織의 재분석과 20세기 건축의 독자적 개념을 창출하는 경지로 발전하였으며 屋外庭園과 부지 공간에 까지 건축적 디자인으로 확장하는 전 근대적 개념에서 탈피 되었다.

Le corbusier의 open plane
Frank Lloyd Wright의 free wall planes
Miss van der Rohe의 glass walls의 개념들이 구조적인 Design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깊이 있는 문제에 주력을 기울이는 일, 여기에 植栽를 비롯한 造景의 敷地 처리를 오브제 다아르(objet d'art)로서의 건축의 장식적인 배경이라고만 생각치 않게 됨으로서 근대 건축 혁명의 승리를 거두고 역사적 절충주의가 추방되어서 建築家와 造景家의 협력적 관계가 분명해 졌다. 건축은 구조적인 디자인의 세련됨과, 대담함 신평락주의 새로운 절충주의 그리고 구조를 제일로 여기는 도시 디자인 개념에의 발전 방향으로 향할 것이며, 조경은 구조물에 대한 보완으로서 전통적인것과 敷地에 대한 자연성의 도입 내지는 건축에 의해 좀처럼 완성될 수 없는 공간형태의

吳尚坪

(주)正東엔지니어링 代表
국토개발(조경) 기술사



자연적인 경관속의 수공예적인 건축

조화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처리를 디자인하게 됨으로서 상호보완 협력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Open space에서의 植栽 디자인을 위한 근거와 배경은 식물 생태학이며 대지나 암석 Paving 불처리등은 地質學的 근거로서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들은 경관형성의 요소로서 조경 디자인의 영역이고 그 경관의 핵심적 요소의 구조물은 건축이다.

따라서 건축과 景觀은 영구적인 교호작용으로 상대적인 것이며 자원스러운 경관은 부지와 배경으로서 불적자원, 영감, 수양, 판단능력을 길러주고 인간적인 생활을 탐구하려는 인간 통찰력과 충동 그리고 힘을 주는 보고이다.

이와같은 상태의 경관 구성에 있어서 건축의 작용은 그 최선의 경관 질서와 균형적 조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질서와 균형적 조화의 관계에는 이를 유기적으로 유지시키는 상반되는 미묘한 요소의 차이적인 측면이 있는데,

1. 재료의 측면에서 보면 건축은 복잡한 구조 재료를 사용하는 반면 조경은 주로 자연 경관의 재료, 즉 식물, 흙, 물, 암석 등이며 때에 따라 단순한 가공 자재가 부자재로 쓰인다.
2. 기술과 기능의 한 전문 분야는 건축의 경우에는 구조와 기능상

공학적인 요소와 규모, 필요에 따라서는 첨단과학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조경에 있어서는 주로 비공학적인 요소가 지배적이며 부지내의 경관을 통과하거나 조망하는 가운데서 美的 쾌감과 open space에 대한 자연의 공급이라는 디자인적 요소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3. Scale에 있어서도 건축은 Human scale이 기본적인 원단위이며 여기에 구조상 경제상의 척도가 합성적으로 고려되어 부지의 scale에 반영되고 있으나 조경의 경우는 인간척도와 부지 척도의 합성에 주변경관의 scale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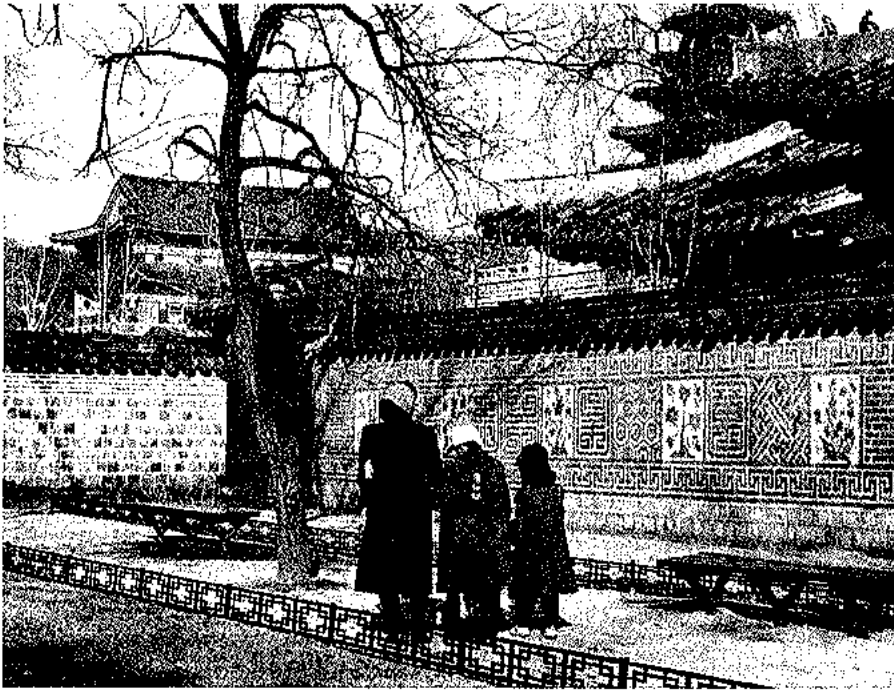
반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 연속성으로 보면 건축은 건물과 부지와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건물 자체가 갖는 자체 완결적(독립적) 자족적인 예술 작품으로서 독자적인 위치가 확고하나 조경은 항상 건물과 부지 주위의 경관과의 관계나 결합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서 open space의 디자인의 연속이라기 보다는 건물을 주로한 개념의 연속성이다.

다만 이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가로 광장 공원이 독자적인 예술성을 갖는 조경으로서의 작품이 아니냐고

매우 인간적인 도시의 경관





수공예적인 건축의 공간

반문한다면 연관되는 open space와 건축물의 경관 구성상 상관되는 요소 전체를 관련지어 광범위하게 보아야 될 것이라는 점이다.

造景家は 건물 가로 및 다른 구조물 사이에 있는 open space 이거나 또는 전혀 개발되지 못한 토지에서 주위 경관과 상호 연관 관계에 있는 여러가지 사물들이 한데 어울어지게 하여 한정된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며 완전한 통합과 철저한 대비라고 하는 양극단 사이의 복잡한 표현 형태나 여러가지 힘의 조화와의 상호 관계야말로 조경예술의 생명이므로 풍경이 가지는 물리적 경관에 대한 외부적이며 감성적 잠재력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는 생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또는 잠재력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며 경관 디자인은 다른 공간 예술과 일반세계, 즉 연속되어 있는 총체로서 경관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조경가는 부지계획, 도시설계, 레크리에이션과 지역 문제들을 다양하게 알아야 하며 분수, 조명, 각종 표지판, 포장, 배수, 운동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토목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등 조경학의 기초 관련 외 분야도 모두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식물 소재 활용을 위주로 하는 디자인

센스도 특별히 길러야 한다.

조경 작품의 예술성은 그것이 언제나 완성된 것이 아니며 식물의 성장과 함께 항상 가변하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경의 디자인은 특정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여 선정된 부지위에 최선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정확히 결정짓는 과정이다. 그것은 일반적 배치로부터 시작하여 미세하고 상세하게 전개되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다. Designer는 문제를 명백히 이해해야

하며 부지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도 익숙해야 하고 건설과정에서 사용될 자재와 설비 및 장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며 그 計劃實現 後에도 그것의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인간적인 景觀・環境・창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관의 환경으로서 自然的인 경관・人間的인 경관・人工的인 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인공적인 경관 환경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실용적이란 명목으로 가장 반자연적이고 반 인간적인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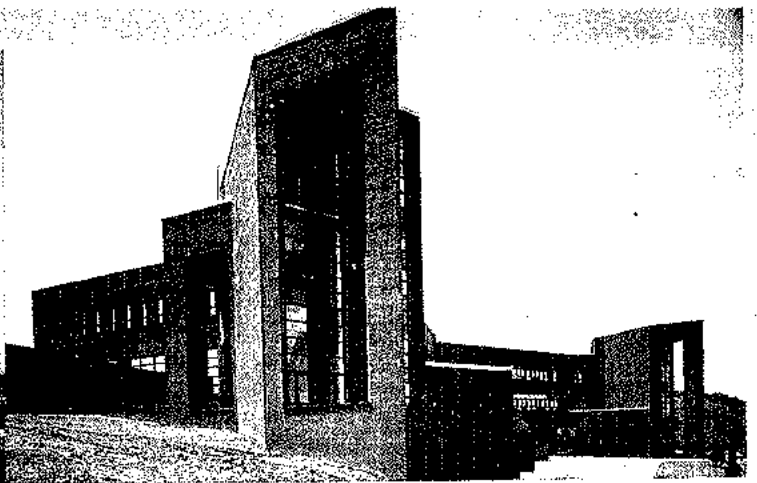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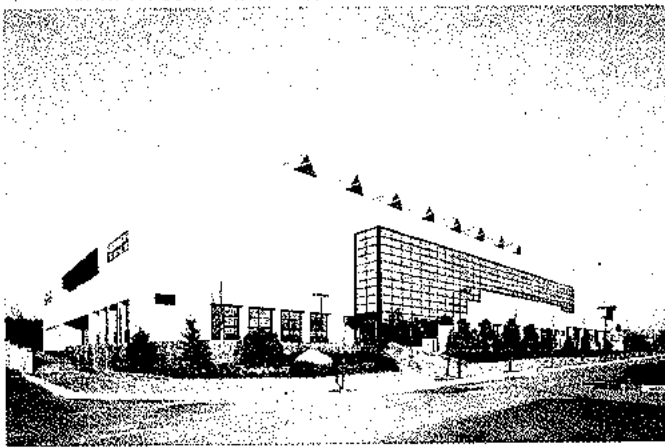
「We shape our buildings, and afterward our buildings shape us」

우리는 建築家이든 造景家이든간에 항상 이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말의 본보기는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거대한 공통같이 누워있는 새운상가 빌딩처럼 한치 앞을 못본 도시 건축물의 실패작 처럼 물지각한 인간의 욕구와 무지에 의한 실수로 만들어진 표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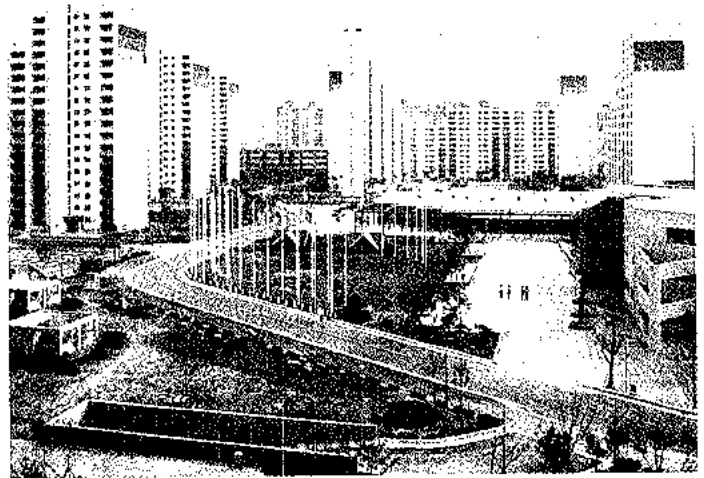
「도시의 건축물 가로 시설물들이 일단 형성된 후에는 그것이 인간의 의식과 태도 결정을 구속하는 강한 외적 요소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공간과 건축의 조화





'87 建築士 設計作品展示會 出品作 公募



본협회에서 회원의 건축설계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인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건설부 후원 아래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87년도 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전시회가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조형창작예술인의 긍지를 높이는 전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회원으로부터 수준높은 작품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 출품요령

1984년부터 1987년 7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된 작품중 본협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작품.

■ 패널제작 방법

1. 패널크기 / 90cm×90cm (가로×세로)
2. 제작요령 / • 패널에 게첨된 내용이 순회 운송중 파손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유리, 스티로폼 등 충격에 약한 재료 사용 금함).
• 벽면에 간편하게 걸 수 있도록 패널후면에 견고한 고리를 부착할 것.
•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할 것.
3. 패널수량 / 1작품당 3개 이내

4. 공통사항

우측 상단에 출품자 사진(명함판)을 부착하고 건축사 사무소명을 기재할 것 (단, 작품명, 사무소명,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 출품마감

1. 종합작품집 제작에 필요한 자료
패널에 게첨된 내용과 동일한 별도의 흑백사진·설계개요 인물사진을 8월30일까지 제출 (작품명, 사무소명·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2. 패널은 9월20일까지 제출

■ 시상내용

- 대 상 (1) 건설부장관상
최우수상 (1) 협회장상
우 수 상 (2) 협회장상
장려상 (6) 협회장상

■ 기타 유의사항

1.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만이 시상대상이 됨.
2. 제출처 및 문의처 / 본협회 출판사업부, (581-5711~4)

전시공간연출

럭키금성 제1연구단지(안양)
Show Room —

■
Report
Production of
Display Space
by Han, Do Ryong



입구에서 본 전시장내부

1. 전시장 概要

럭키금성 제1연구단지는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연구기관으로서 1층에 위치한 쇼룸은 연구단지내 非商業的인 전시장으로 일반대중보다는 연구단지를 방문하는 V.I.P에게 企業精神인 '인간, 기술, 미래'를 부각시키고, 기업의 첨단기술지향과 그에 연유되는 기업 이미지를 좀 더 높이고자 하는 공간으로 연구단지내 조용한 액센트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시공간을 하나의 無限空間으로 그 공간 속에 기하학적인 형태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신비스러움과 첨단 未來空間氣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첨단과학기술의 시스템을 고려하여 단순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의 전시효과를 꾀하였다.

- 규모 : 1.2m × 1.2m (약 43.6평)
- 천정고 : 2.7m
- 기본모듈 : 0.6m

2. 디스플레이 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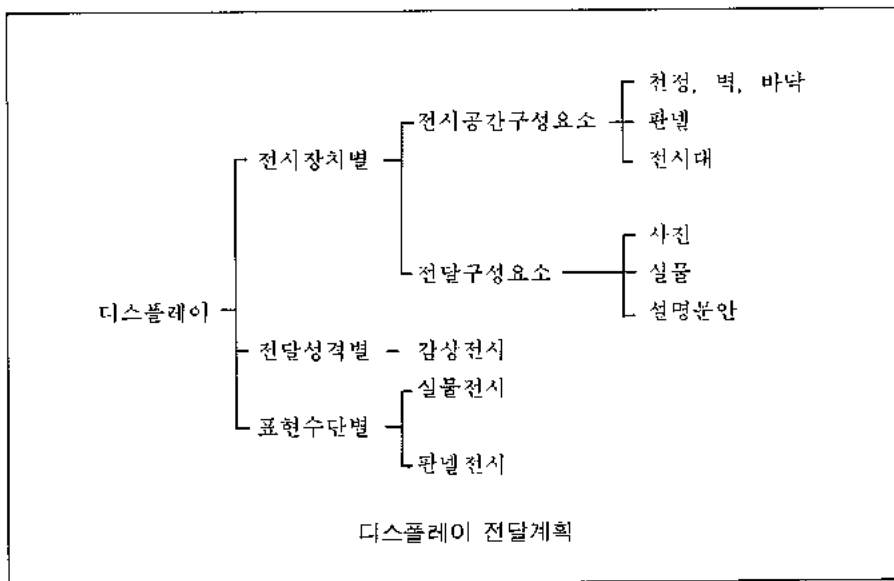
• 공간의 새로운 개념 영역과 최첨단 기술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디스플레이 스타일

- 主題와 素題와의 균형감각
 - '질적향상' 과 '미적향상' 의 충족
 - 관람목적의 다양화, 관람자 계층의 다양화 요구만족
 - 시대적인 감각 및 전체의 공감대 형성
- 전시공간은 다양한 기술의 상호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디자인의 連續體를 갖고 있으며 디자인의 연속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水平面에서 논리적으로 처음의 계획단계에서 디자인의 명백한 개념을 세세한 항목 또는 시스템 수준에 의해 제한시키는 것이다. 展示空間構成要素에서 천정은 루바 그림을 이용 조명을 매입시키고, 벽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내용물은 돌출시키며, 기본 모듈에 맞추었다. 바닥은 소음을 흡수하는 부드러운 재재를 사용하였다. 전시대도 기본모듈을 이용하며 설명문안은 판넬을 이용하였다. 전달구성요소의 모든 내용을 실물전시 하여 제품의 가치성과 미적감각을 부각시키고 실물전시가 불가능한 것은 사진과 그래픽, 설명문안으로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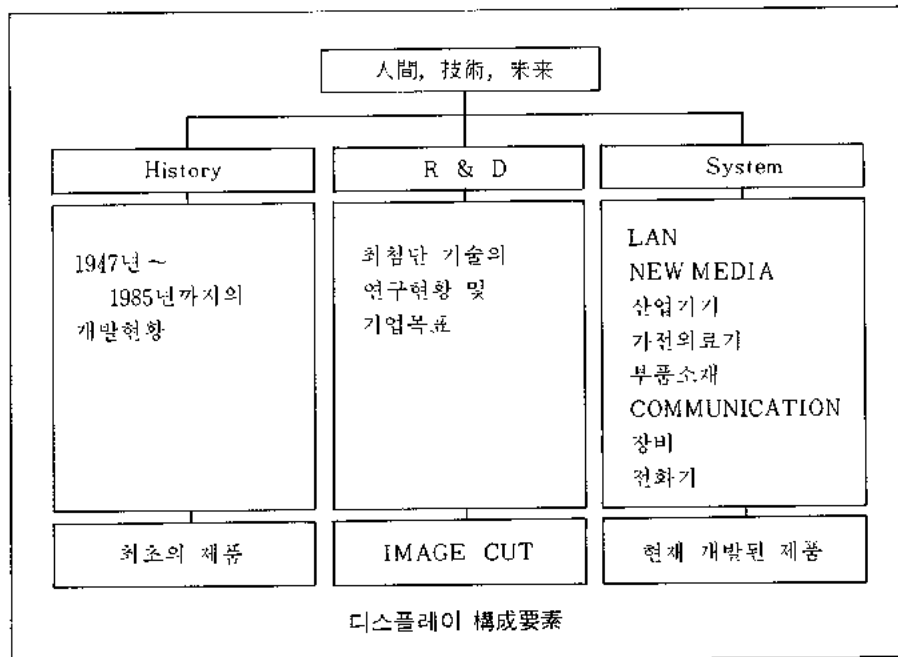
전달성격에서 實物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첨단과학 기술의 이미지를 살려 제품의 연출을 표현하는 요소나 부분은 감각을 그룹화해서 시각의 혼란스러움을 고려하였다.

韓道龍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교수



- 디스플레이 方向設定
- History Corner
 - 고정전시(2차원 전시)
 - 역사적 전시
 - 해설전시
 - 내조식 판넬전시
 - System Corner
 - 고정전시(3차원 전시)
 - 감상전시
 - 실물전시
 - 전시대전시
 - R & D Corner
 - 고정전시(2차원 전시)
 - 제통적 전시
 - 해설전시
 - 판넬전시



4. 平面計劃

전시공간은 3면이 벽으로 막혀있고 한면이 Open된 출입구로 건물내부와 연결되며, 또한 144㎡의 공간면적은 전시공간으로서의 활용에 적당하다. 전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Open형 평면배치로 출입공간, 전시공간, 통로, 어트랙션공간으로 기능에 따라 분리하고 시설물의 배치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였다.

- 출입구는 기존출입구를 이용하였다.
- 공간의 구성은 모듈을 이용한 구조물로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배치, 공간의 확산감을 주었다.
- 動線은 선택형 자유동선으로 하고, 관련분야에서는 관람객이 머물 수 있도록 공간에 여유를 두었다.
- 동선폭도 자유로히 이화시킬 수 있고 관람객의 유동이 심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전시장의 일률적인 획일성을 없애고 개성있는 성격을 부여하기 위한 연출을 계획하였다.
- 전시분야는 같은 계통으로 그룹핑을 하였다.
- 전시대는 기존 선반의 개념을 떠난 기하학적인 형태로 우주캡슐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현수단에서 실물과 유니트 판넬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따라 전시장의 소재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디스플레이 유니트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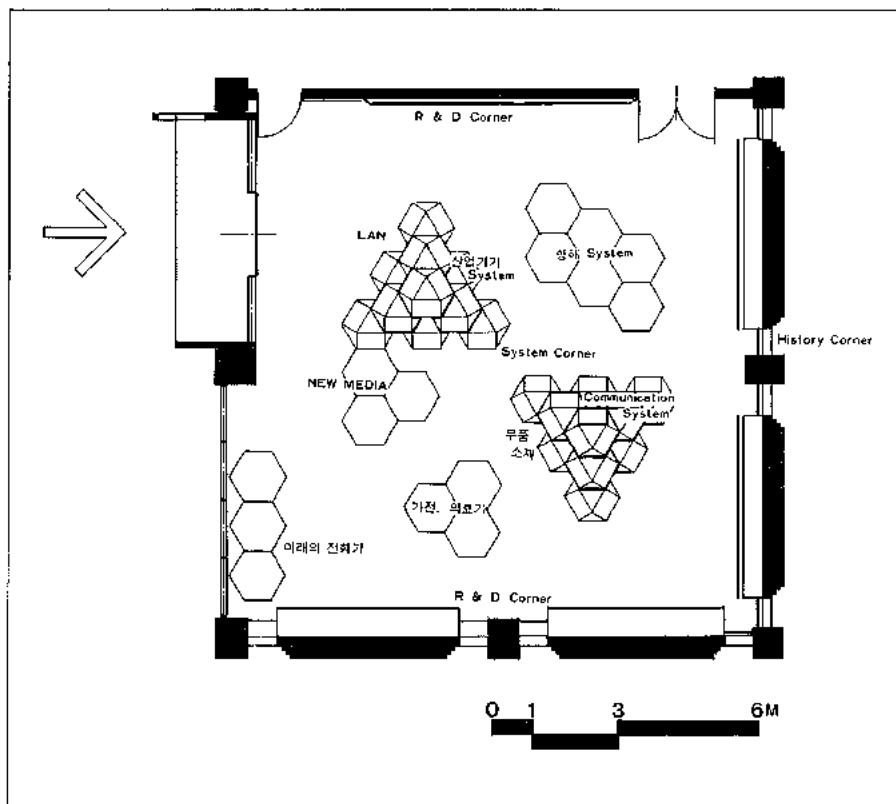
육각형에는 서로 결합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비누거품, 꿀벌집 등 자연적 및 인공적인 형태에는 육각형을 취한 것이 많으며 특히 살아있는 세포들은 Y형에 세가닥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있다. 비록 그 균형각도는 120°이지만 Y-형은 가능한 결합가운데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사각형 결합보다 훨씬 더 단순하며 육각형에는 그것이 球와 비슷하다는

데서 오는 잇점이 있다. 球는 다른 도형보다 그 동일 둘레에 대하여 가장 큰 면적을 포함하며 따라서 육각형은 삼각형이나 사각형보다 더 경제적이다. 동일 면적의 正多角형을 사용할 때 인공적으로도 우주의 모든 형태도 압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육각의 형태를 사용한다.

이번 계획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기존 전시공간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강조하기 위해 육각의 모듈을 선택하였고 또한 인체공학적 배려와 전시공간 변화에 대응하고, 부품, 재질, 조립면에서도 최대의 효과를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5. 전시공간 구성요소

- 天井
벽면을 통해 자연채광이 유입되므로



전시장 평면도

인공조명은 局部照明은 없애고 전체조명으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조명등이 시선에 직접 닿고 전시물에 반사광을 주지 않기 위해 천정에 매입시키고 전면은 백색 루마그릴로 설치했다.

ii) 壁面

벽면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시선을 가장 많이 받는 요소이므로 전시물을 돋보이게 계획하였다.

창은 베이지색 브라인드 커튼을 설치하여 광선을 차단하고 부드러운 빛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정적인 가운데 변화를 주어 활력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벽면 디스플레이는 쇼케이스에 모조, 실물로 전시할 수 없는 제품들과 이미지 컷들을 벽면에 내조식 패널로 설치하였다. 내조식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벽에서 30cm 돌출시켜 전시벽면을 만들고 벽면과 유리 육각 모듈과 공간을 두어 변화를 주도록 그 위에 10cm를 띄워 유리를 내조식패널과 같은 육각의 모듈로 설치하여 설명문안을 실크인쇄를 하였다.

또한 벽면 300%내의 공간을 이용하여 전시케이스로 활용을 하고 패널과 케이스의 접속부분을 연결시켜 이질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

iii) 바닥

天井高가 2.7m 인 것을 고려하여 단차를 주지 않고 기존바닥을 활용하고 내신 전시대의 금속성 재질과 형태에서 시선을 옮기도록 계획했다. 내부장식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소음제거, 빛의 난반사제거 등 실용적인 면과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카페트를 사용, 안정되고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했다.

iv) 展示臺

전시대는 육각형을 기본 모듈로 하는 14면체의 기하학적인 형태로 첨단적이고 미래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전시물에 따라 구조물이 변화되도록 형태감을 주었는데 2 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한개의 모듈만 가지고도 기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모듈은 차례로 쌓아 올린 형태로 높이 1.9m, 넓이 3.6m로서 실물과 관련 와이드 칼라를 변형하여 전시했다. 전시대로서의 기능 외에 형태미적, 유지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전시장의 분위기와 연결되도록 계획하였다.

6. 色相과 磨勵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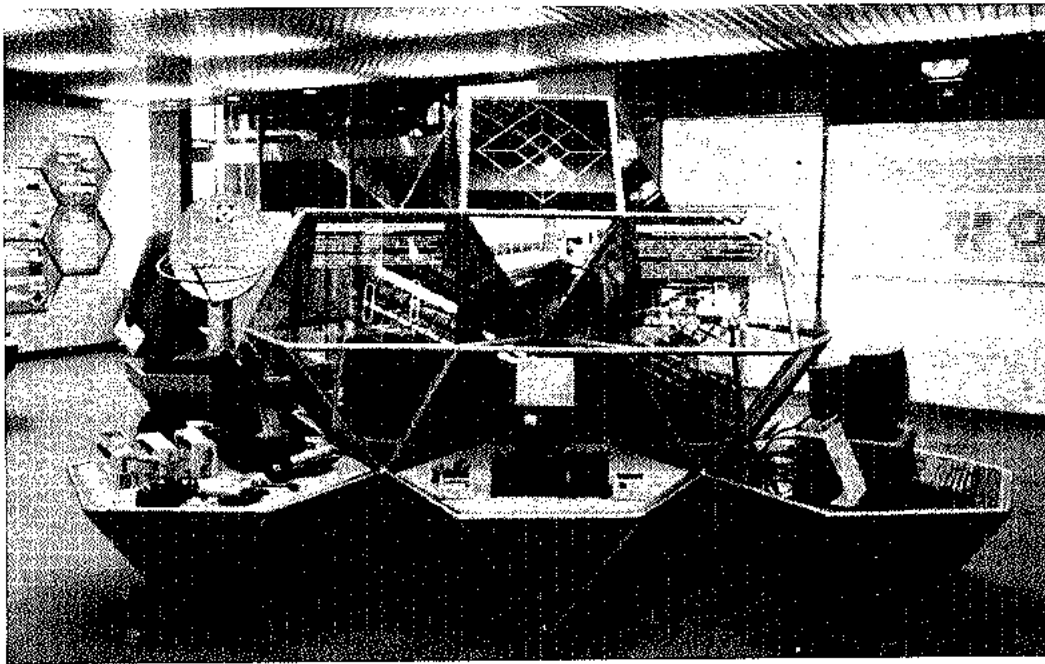
i) 色相計劃

기존관람객의 시선을 끄는 단기 전시장이 아닌 관계로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 무채색과 베이지색 계통의 색상을 사용하여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토록 계획하였다. 천정고가 낮기 때문에 공간을 확대해 보일 수 있는 배색으로 처리하고 바닥은 회색으로 마감, 안정감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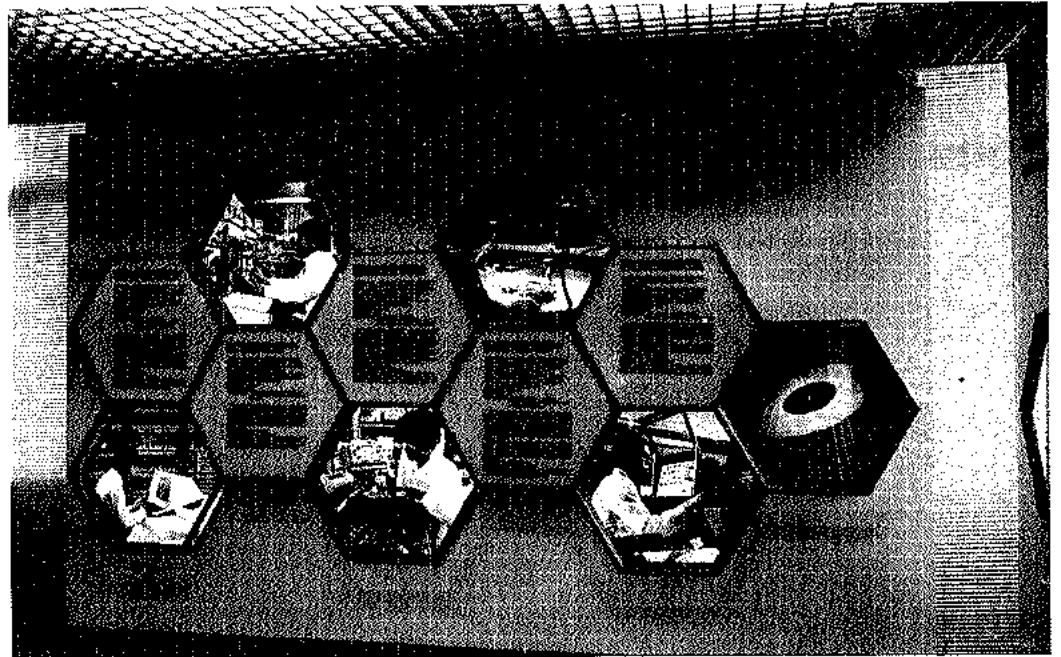
전시대는 전시물의 내용에 따라

모듈을 이용한 展示臺와 벽면전시





육각형 모듈의
14면체 전시대



모듈을 이용한
벽면전시

부분적으로 흰색, 검정색, 청색 등의 색상을 사용하였다.

ii) 磨勘計劃

마감재료는 전시장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의 종류를 줄이고 재질간의 연결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천정은 알루미늄 루바그릴을 설치하고, 벽은 육각모듈을 이용, 변화있는 전시를 꾀하고 탁키케인트로 마감을 했다. 바닥은 카펫을 깔아 고급스러움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끼도록 하였으며, 전시대는 스틸 파이프 구조에 페인트마감을 하고 전시선반은 강화유리를 사용하였는데

전시물에 맞추고 변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포인트 칼라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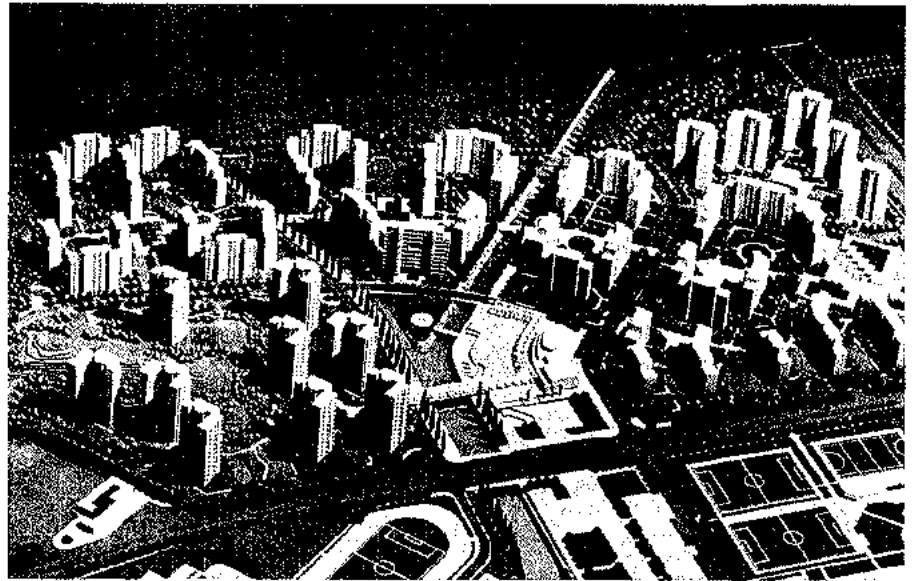
7. 結論

감각과 시대성에 민감한 오늘날의 디스플레이는 아이덴티티가 높고, 메시지의 전달에서 새로운 의미를 느끼게 한다. 디스플레이의 기본적인 특징은 의식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媒介物이라는 데 있다. 전시를 통해 전달되는 기업이미지는 최고의 설득력을 가지며 기업정신과 실체를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끌기 위해 전달 내용을 함축시키고, 또한 관람객이 지루하지 않게 관심거리를 요소요소에 배치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단지내에 위치한 안양락키금성소류은 디스플레이가 지니는 흥미성을 갖고 또한 기업에서 추구하는 첨단산업 기술의 산실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내용을 감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본모듈을 六角型으로 하여 무한한 형태감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는 노력의지를 상징화하고 첨단과 미래의 이미지를 체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아파트 設計改善 및 新모델 開發

■
Report
Improvement of
Apartment Design &
Development of New Model
by Joo, Chong-Won



1. 序 論

금년도 유엔에서 정한 세계 無住宅者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helter for the Homeless : IYSH)이다.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1985년 현재 전국의 9,575,000가구의 28.4%가 무주택가구입니다. 이들 무주택가구는 셋방살이를 하면서 주택이 갖추어야 할 은신처(Shelter), 프라이버시(Privacy), 立地, 環境 및 投資등의 조건중 비바람을 막고 추위와 더위로 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고작이고 기타 프라이버시나 쾌적한 環境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설부는 “세계 무주택자의 해”를 맞이하여 총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였고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小型住宅 증점건설(18평이하 주택 10만호 건설)
- 2) 賃貸住宅 건설확대(주공 등 공공기관에서 40,000호 건설)
- 3) 주택 供給體系 재정립
- 4) 住宅金融의 투합과 受惠對象 확정
- 5) 주택공급의 원활화
- 6) 주택가격 低廉化方案 강구
- 7) 건축행정의 國民便宜性 제고
- 8) 에너지 절약의 극대화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30만호의 주택건설을 계기로 점차적으로 안정성장 단계로 접어들면서 주택을 財産增殖의 수단으로 보다는 거주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의 주택의 개념을 되찾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주택의 경기가 호황이던 1970년대 후반에는 주택의 거주성 보다는 재산가치가 중요시되었으나 주택건설이 안정성장 단계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실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未分讓事態가 벌어지게 되었다.

특히 무주택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소형주택을 다량공급할 경우 좁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것이고 더우기 가구구성원에 따라 변경시킬 수 있는 주택평면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토가 제한되어 있는 여건아래에서는 공동주택을 다량건설하지 않을 수 없어서

1960년대초부터 공동주택을 건설한 결과 입주자들의 요구조건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설계자의 의향과 입주자의 요구와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리라 생각 된다.

본교에서는 입주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명실공히 주택이 생활을 담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릇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新모델 開發의 摸索

대한주택공사에서 설계개선을 위한 관계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6년 9월27일부터 1986년 10월 1일까지 21개지구 1,048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① 공간활용성 증대부분에서 浴室面積 확대 등 4 가지,

朱鍾元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 교수

② 입주자 생활 편의 시공부에서
발코니 수도설치 등 5가지,
③ 美觀 및 기타 사항에서 房門과
건물의 색상개선 등 3가지,
모두 12가지 요구사항이 제시 되었다.
또한 1986년 6월과 7월사이에
13개지구 430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파트의 부엌부분에서
발코니 타입부착에 이르기 까지
8개부분에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화란의 도시
아인트호벤(Eindhoven)의 교외에 건설된
연립주택 중 32가구를 10년간에
걸쳐서 관찰한 결과 공간의 수, 위치,
크기의 변화가 생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변화는 평면과 기능의 2가지 면에서
생겼는데 평면은 기존건물과 건축과
隣接住戶의 통합에 의하여 생기고 있어
구조의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기능의 변화는 주로 도심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주택이 상점·차고·
바(bar)등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와같은 변화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聯立住宅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 변화의 요인은

① 자기를 인식시킬 필요성이 생겨서
주택은 자기표현의 한 수단으로한
개성의 필요

②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서버비스부분의 필요성 증가와
사적공간과 공공공간의 분리 등
생활형태의 변화

③ 중앙집중식 난방제체 도입과 새로운
재료의 개발 등 신기술의 가능성

④ 가족관계 및 생활방식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친구, 친척 및 이웃 관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 가족수의 변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완화방안으로 화란
건축연구학회(SAR: Society of
Architecture Research)에서는

① 주택건설 과정에서 거주하게 될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과

② 주거를 固定要素와 可變要素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설계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와 같은 완화방법을 제시한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주거는 개인의 영역과 커뮤니티의

영역의 경계에 있는 것이 바람직 하다.
즉 주거는 가족이 생활하는 환경임과
동시에 공동체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생활은 이 두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주거실태를 보면
개인의 영역이 등한시되고 공동체의
영역이 우세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캠프장에서 처럼 공동체의 영역보다는
개인의 영역이 우세한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住宅生産過程은 직업이
분화되지 않은 시기에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각기 자기들의 주거를 직접
건축했으며 오늘날에도 캠프장에서는
각기의 주택을 자기의 손으로 건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
목수와 같은 장인이 관여하여 거주자와
상의하며 주거를 이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주택에서는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과정으로 건축가와
목수가 주거자와 논의하며 집을
마련하는 것이 있고, 집단주택에
있어서는 조합이라는 형태로 공동체가
구성되어 건축가와 목수에게 의뢰하여
거주자 기호에 맞는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집단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어떤 사람이 주거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가와 목수에게
의뢰하여 공업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계획적인 주거를 형성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

즉, 주거할 사람이 주거건설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므로 입주자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 될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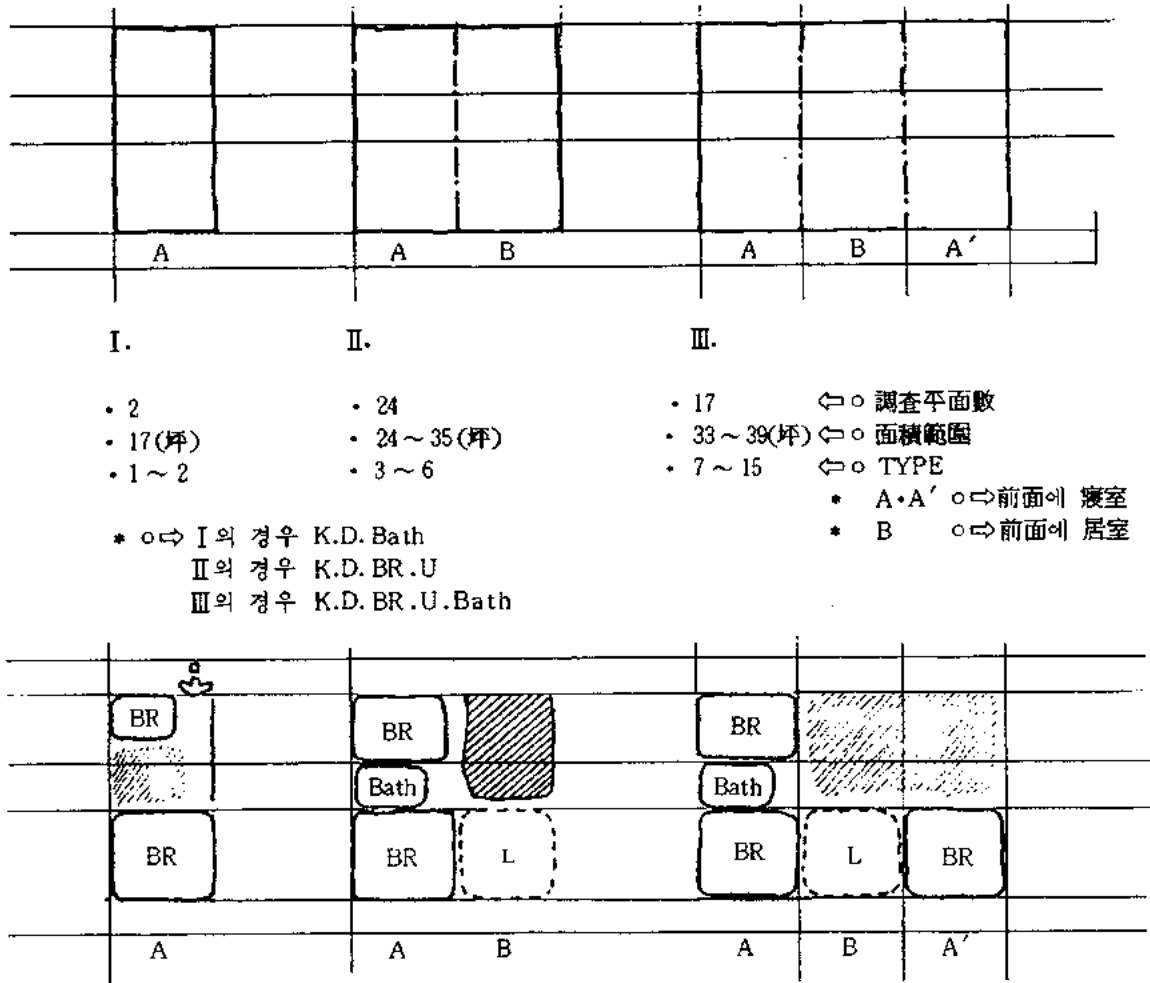
이와 같은 주택을 대량주택(Mass
Housing)이라고 하며 개인이 선택할
영역은 가구키텐 등 제한된 품목에
한정되어 여유가 생기면 개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구조의 약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현대에 이르러서 입주할 사람이
건설과정에서 왜 배제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거의 생산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스스로 집을 짓는 단계에서는
각 과정은 서로 경향을 주며
생산결과물은 진정한 의미의 주거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공동체는
전문가의 도움없이 공공건물을 짓는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공공건물은 匠人이
관여하여 짓게 되나 개인주거는
전문가의 도움없이 거주자가 직접

〈표 1〉 서울지역 편복도아파트의 공간구성 분석

유형	면적(공유포함)-(평)			조사평면수	실 구 성					비 고
	최소	최 대			L	BR	Bath	K/D	U	
I	1		17	1	1	2	1	1	·	· M, BR 경L
	2		17	1	*	2*	1	1	·	
	전체		17	2	1					
II	3	24	28.5	5	1	2	1	1	1	
	4	24	29	6	1	3	1	1	1	
	5	27	33	4	1	3	1	1	1	
	6	28	35	9	1	3	1	1	1	
	전체	24	35	24						
III	7		33	1	1	4	1	1	1	K와D가 분류되어 있음 " " "
	8		33	1	1	4	2	1	1	
	9		34	1	1	3	1	1*	1	
	10	33	39	5	1	4	1	1	1	
	11		35	1	1	4	1	1*	1	
	12	34	39	4	1	4	2	1	1	
	13		35	1	1	4	2	1*	1	
	14		35	1	1	3	1	1*	1	
	15	34	37	2	1	4	2	1*	1	
	전체	33	39	17						
전 체	17	39		43						

〈그림 1〉 서울지역 편복도형아파트 평면의 구성상의 특징



짓는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건축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장인이 공공건축 및 개인 주거에까지 관여하게 된다.
 네번째, 단계에서는 기계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건축에는 기계화된 생산체계가 도입되거나 개인주거는 아직도 장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섯번째, 단계에서는 장인에 의한 방법으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대량 생산단계에 접어들다.
 그리고 여섯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건축이 기계화되며 개인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의 생산체계가 구분이 없게 되어 개인이 건축단계에서 배제된다.
 그런데 주거의 생산체계에 있어서는 두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도로와 자동차가 이동성을 유발하듯이 고정요소(Support)와 가변요소(Infill)가 주거를 만들게 된다. 固定要素의 생산은 도로건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와 관계가 깊고, 공공적인 요소가 강한 반면 가변요소의 생산은 일반상품생산과 마찬가지로 주거자 개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한편 고정요소는 긴 주기를 갖고 여러 세대에 이어지는 구조물로 도시조직을 형성한다.
 그런데 可變要素는 한 세대에만 이용되며 재료, 수명, 유행, 기술개발 등으로 교체주기가 짧다.
 이들 고정요소와 가변요소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형성되는 것이 주거라는 관점에서 설계방법이 제시되었다.

3. 가능성 있는 평면을 설계의 가능성 검토

가. 기존아파트 평면분석을 통한 SAR방법 적용방안 검토
 서울지역에 1970년대에 건설된 아파트중에서 편복도형의 아파트평면

43개를 수집하여 부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평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상의 공통적인 특징을 관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SAR방법 적용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서울지역의 편복도형 아파트의 공간구성을 분석하여 본 결과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류한 결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AB, ABA', 즉 한켜, 두켜, 세켜로 구분되었다.
 A형은 부록의 유형분석도 1,2에서 보는 바와 같고 표본수가 작아서 정확한 경향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2개의 평면이 그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두켜로 되어있는 AB형은 24개의 평면을 조사한 결과 부록 3-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뚜렷하게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4개의 유형이라고는 하나 유형 4와 5는 거실과 침실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므로 실제로는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세켜로 되어있는 ABA'형은 비교적 규모가 크기 때문인지 평면구성에서 AB형보다 공통적인 유형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조사한 17개 평면이 9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부록 10, 12번 유형만이 3개 이상의 평면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한켜, 두켜, 세켜의 유형들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기 뚜렷한 열개(Frame)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림에서 빗금친 부분만이 서로 다를 뿐 실명이 표시된 부분은 예외없이 공통적인 요소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되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거실과 안방이 주거구성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들의 전면에 배치되고 나머지 외기와 접하여 창을 설치할 수 있는 쪽에 침실이 배치된다. 그리고 외부와 접하지 않는 부분에 욕실이 배치되므로 아파트평면은 <그림 1>에서 빗금친 부분(식당, 부엌, 침실, 작업실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변동의 여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가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작업실(utility)이 반드시 외부에 면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실수의 구성은 17평형인 A형(한켜형)은 침실이 하나 혹은 둘, 거실, 욕실, 부엌(dining-kitchen)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규모관계상

주거의 기능이 분화 되지 않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AB(두켜형)은 24평에서 35평의 범위로서 침실이 3개, 거실, 부엌(dining-kitchen), 욕실 및 작업실(utility)로 구성되어 있다.

ABA'형(세켜형)은 33평에서 39평으로 비교적 규모가 커서 침실이 4개이며 욕실이 2개인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여기서는 부엌과 식당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경우가 많았다.

이상과 같이 조사한 아파트평면을 SAR의 기준대(zones)와 한계대(margins)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A형(한켜형)의 경우는 조사평면수가 적어서 판단하기 어려우나

AB형(두켜형)의 경우는 비교적 기준대와 한계대가 일치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 편복도형의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γ zone - 편복도

α zone - 침 실

β zone - 욕실, 복도

α zone - 침실, 거실

α zone - 발코니

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형의 경우는 이들이 基準帶(zone)의 개념에 거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한계대(Margin)가 뚜렷이 보이고 있다.

<그림 2>는 부록의 3, 4, 5를 기준대와 한계대의 관점에서 분석해 본 것이다. ABA'형(세켜형)에서는 규모가 커지므로 유형도 다양해져서 이러한

기준대나 한계대와 어긋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부분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빗금친 부분으로 그중에서도 외부와 접하고 있는 작업실(Utility)이 중요한 障害要素입니다.

앞으로 SAR방법을 우리 나라의 아파트평면계획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평면의 커를 유형별로 검토하여 보았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로 <그림 4>에서 보는 바와같이 33평의 아파트를 가족구성원의 변화나 입주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주거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안이 제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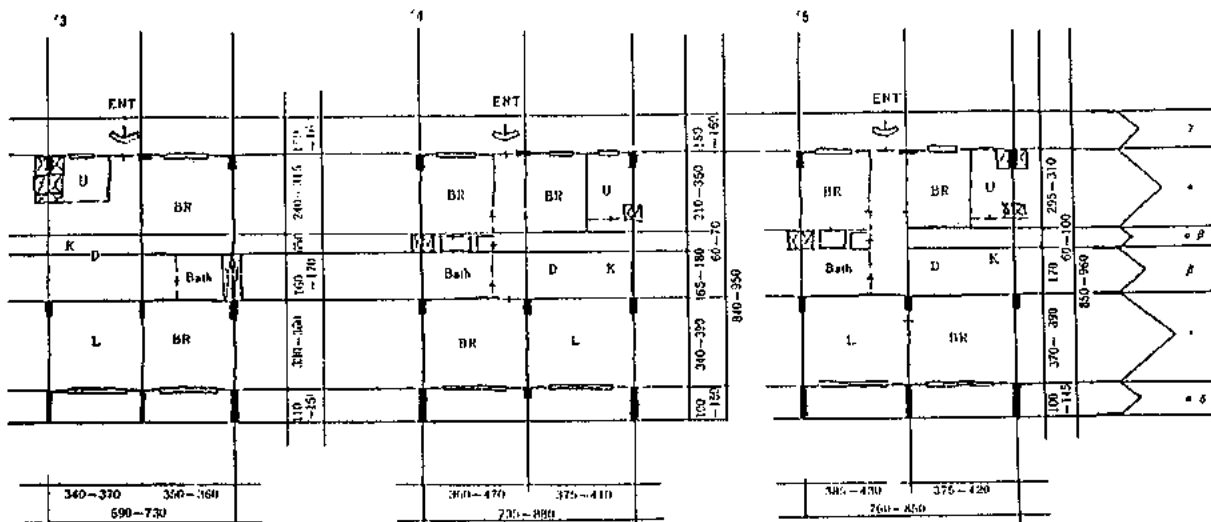
나. 우리 나라에서 계획된 가변성있는 주택평면의 예
우리나라에서 가변성있는 주택평면이 제시된 것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민주택의 가격절감을 위한 방안연구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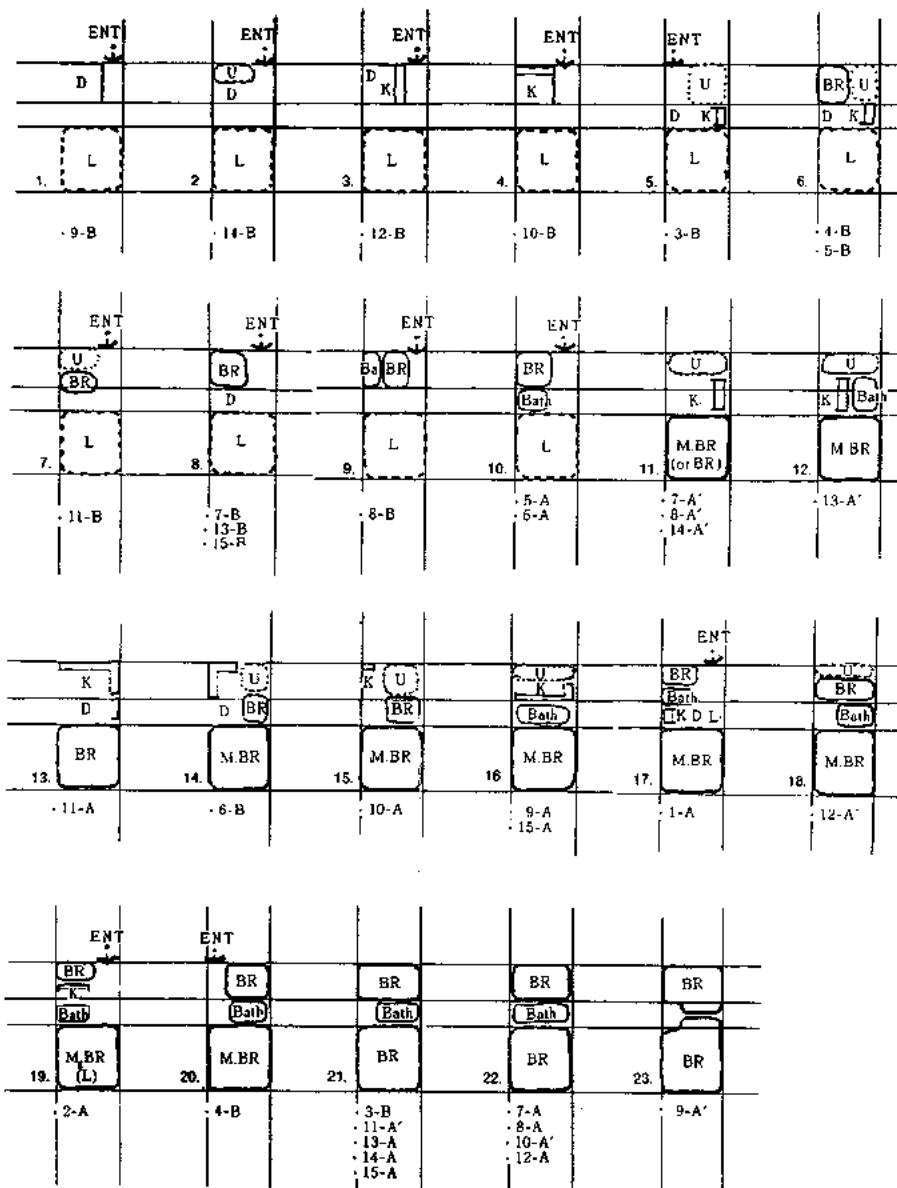
<그림 6>에서는 3인가족을 위한 가변성있는 아파트평면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같은 면적의 주거에서 임주할 사람의 가족구성원이나 嗜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평면이 제시된 셈이다.

한편 덴마크의 건축가들이 한국실정에 맞다고 생각되는 可變性있는 평면안을 제시하였다. 즉 <그림 7>에서는 17평형과 9평형으로 구성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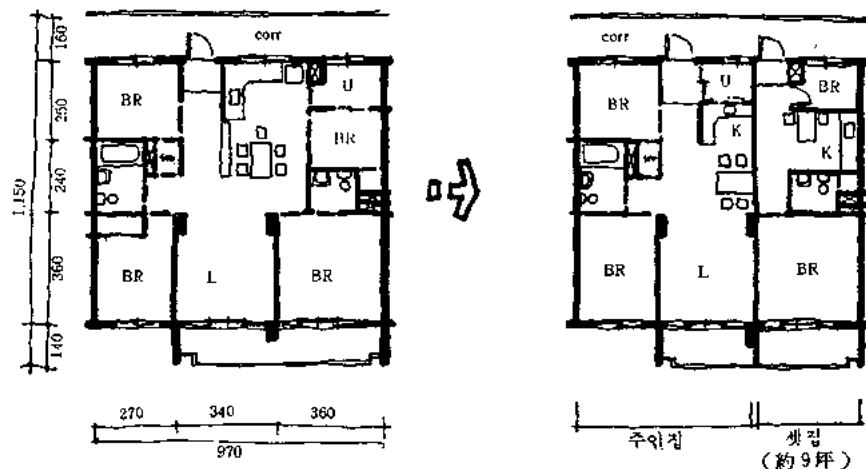
<그림 2> S. A. R. 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편복도형 아파트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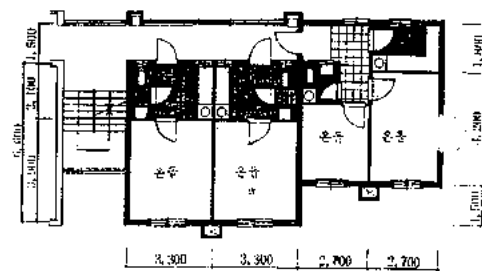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지역 편복도형 아파트평면의 “커”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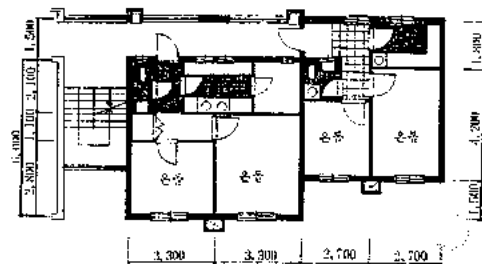
■ 잠실장미APT. 1차 33평(전용 24.984평)



〈그림 4〉 가변성 있는 아파트평면 예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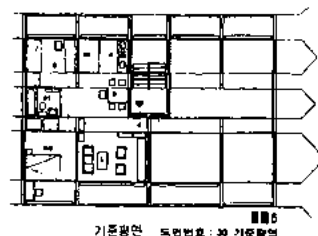


1차단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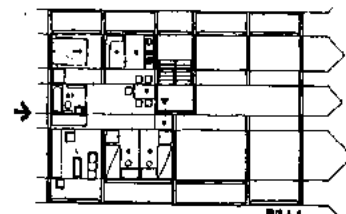


2단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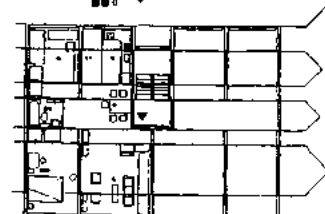
〈그림 5〉 가변성있는 아파트평면의 (예)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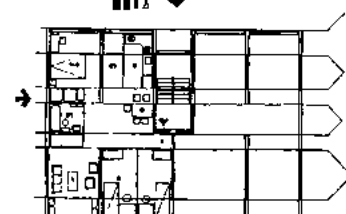
기본평면 독립변호: 30 가변형



내적가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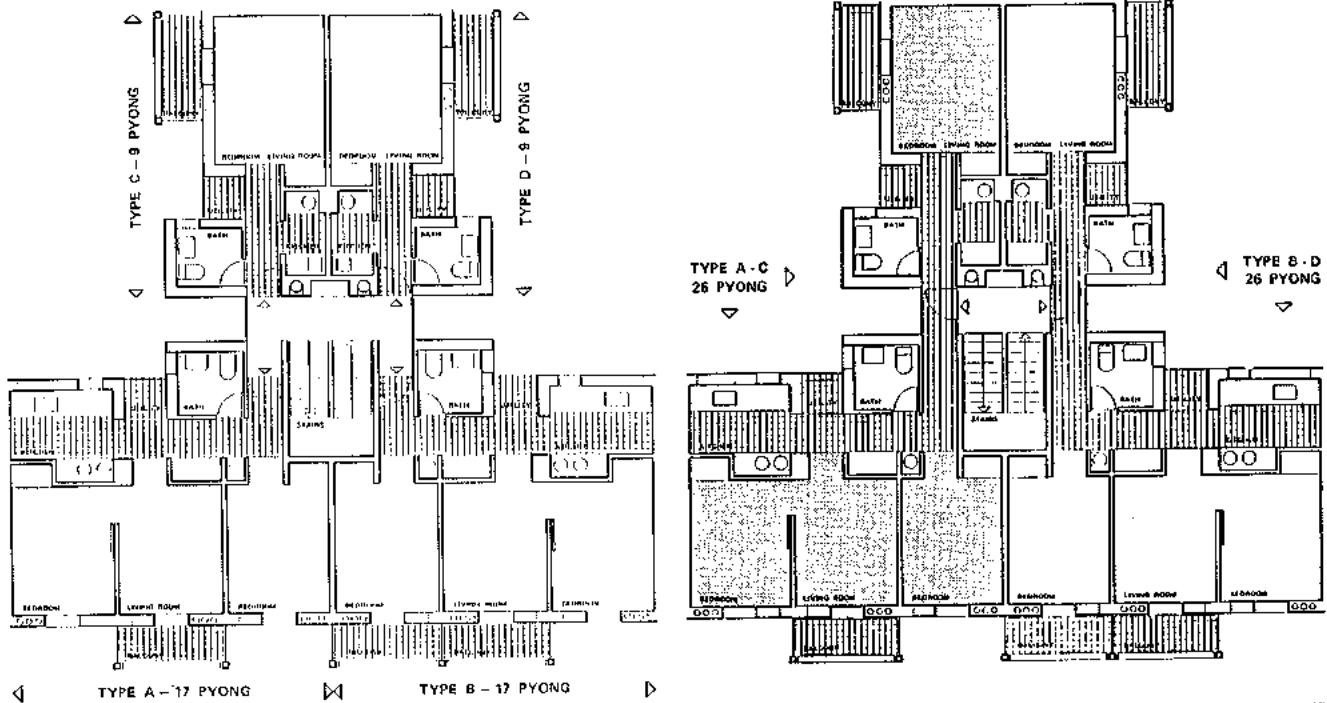


외적가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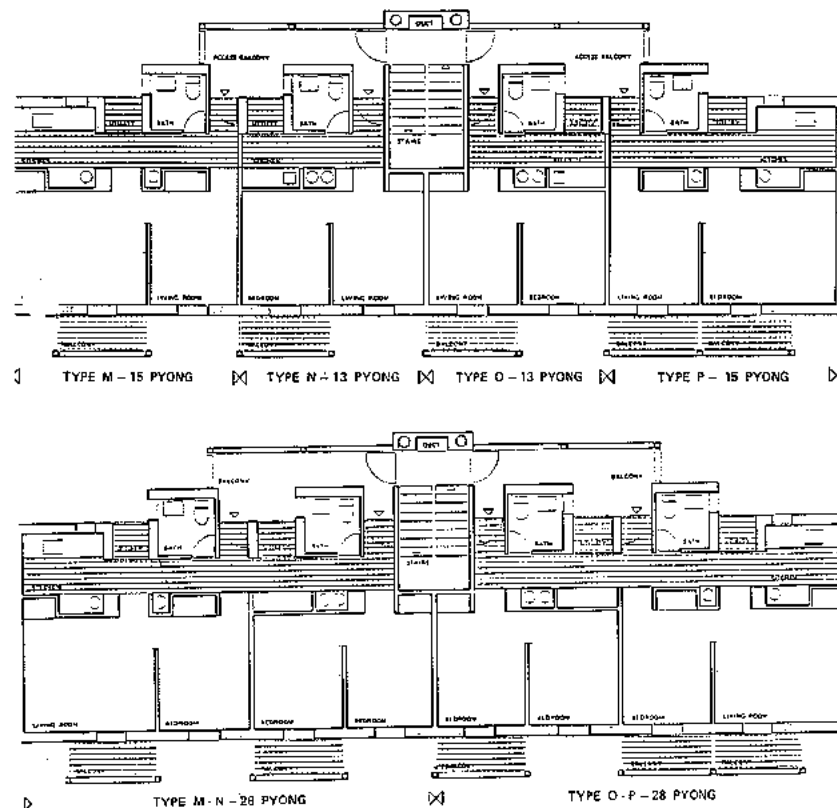
내적가변·외적가변

〈그림 7〉 가변성있는 아파트 평면의 예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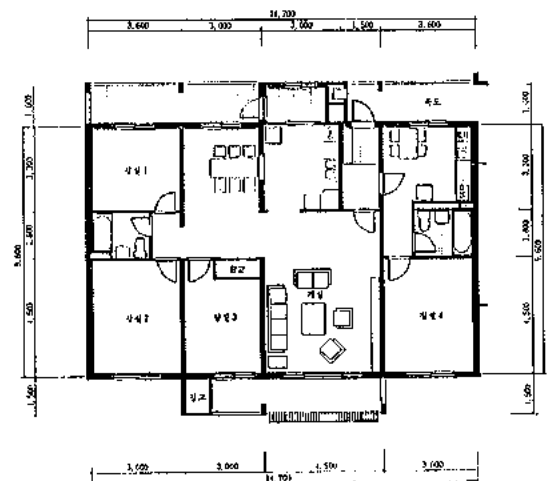


〈그림 6〉 가변성있는 아파트평면의 예 - 3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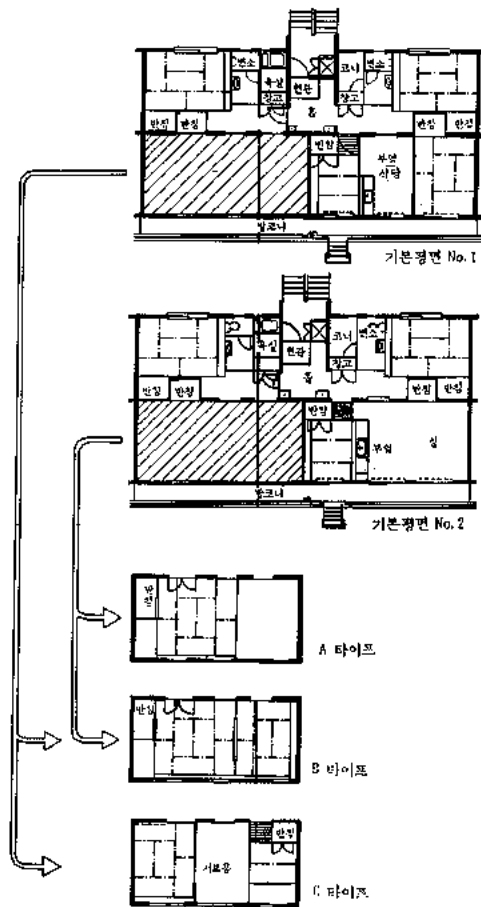


〈그림 8〉 가변성있는 아파트평면의 예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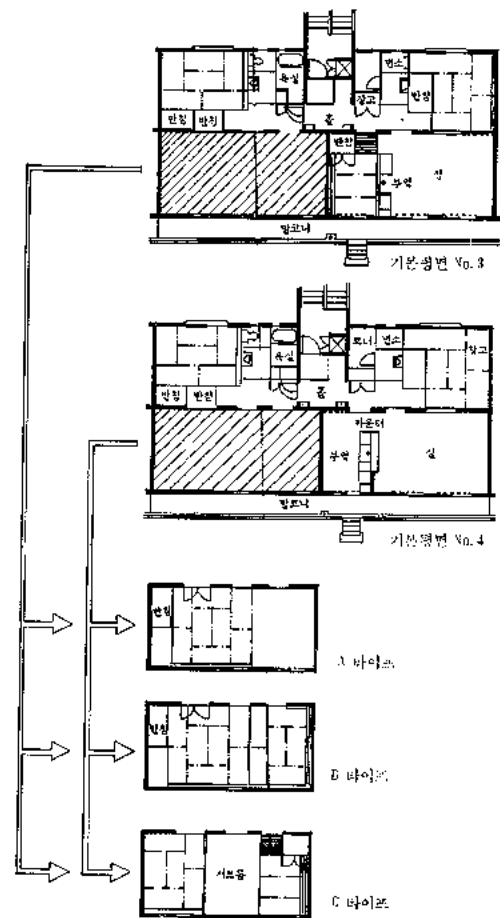


유형	55평형
층수	12층
건명	가림, 관악11, 가림
구상	부여(1), 부여(1), 신동(1)
면적 (㎡)	전용 147.72, 공용 11.78, 계 381.50

〈그림 9〉 목동지구 동거세대 아파트평면형(55평형)



〈그림 10. 1〉 일본 메뉴식 아파트평면 예



〈그림 10. 2〉 일본 메뉴식 아파트평면 예

기준평면과 그 두개의 주거가 합하여 26평형의 주거가 되는 확장된 평면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8〉에서는 15평형과 13평형으로 구성된 기준평면과 그 두개의 주거가 합하여 28평형의 주거가 되는 확장된 평면을 제시하였다. 이들 안은 계획안으로 제시되었을 뿐 실현되지 않았으나 1985년 서울시 木洞택지개발사업에서 同居世帶란 이름으로 〈그림 9〉에서 보는바와 같이 설계되어 건설되었다. 즉 이 두 아파트평면은 45평형과 55평형으로서 주거의 일부인 침실, 욕실, 부엌, 식당을 다른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관만 공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입주자에게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에 주거할 수 있는 가구는 고소득층에 속하는데 이 계층의 가구는 부분적으로 임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나 더 조사 분석하여 이 시도의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上溪아파트 지구에서 13평형과 17평형의 4개동에 입주자 요구에 따라 몇가지 모델중에서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벽면배치의 가변성을 시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본에서도 名古屋 동쪽 20km에 입지한 3,700호 단지에 근래 칸잡이와 설비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식 아파트 50호를 건설하여 호평을 받으며 모두 분양되었다고 한다. 즉 그림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평면 4가지와 각 기본평면에서 2내지 3가지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모두 10가지의 옵션이 있게되는 셈이다.

4. 결론 및 제안

우리나라에서는 가변성있는 아파트의 평면계획을 시도할 예가 여러번 있었으나 시험적으로 지어지지 못하다가 최근에 건설되므로써 실효를 거둘수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근래에 와서는 무주택자의 실태를 파악하며 나세대 주택이라는 유형을 도출해내서 그것을 권장하기에 이르렀고 핵가족화 현상이 주택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중의 하나라는 것을 감안하여 3세대주택 건설도 장려하게 되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건데 어려운 여건하에서 집을 마련할때 가족의 변동사항이나 기호에 관계없이 집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주택을 거주하는것 자체보다는 재산증식 수단에 더 비중을 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집은 어떤 형태이던 지으면 분양되었다. 그러나 오늘에는 그와 같이 건축만하면 분양되는 시대는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점차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서 주택은 거주하는 것으로 그 본래의 뜻을 찾게 되었으며 주택에 대한 意識水準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주택은 설계하는 단계에서

부터 건설하는 과정까지 입주하게 될 사람이 깊이 관여하여 입주자의 원하는 바와 설계자의 의향사이에 괴리가 없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림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가 필요에 의하여 재정적 원천을 찾아서 주택을 마련할때 까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그림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결정에서 부터 使用, 維持, 管理改造에 이르기까지 요소들의 상관관계 및 흐름을 검토하고 목표의 설정 프로그램 작성, 설계, 생산, 배분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모색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 기본적인 결정

- 1) 목적과 기능
- 2) 용 량
- 3) 비용수준
자 본
운영비, 임 대 료
 - 감가상각
 - 유지관리
 - 세 금
 - 이 자
 - 보 험

- 4) 건물의 내용연한
- 5) 임지(대지)
- 6) 실현을 위한 시간표(Time table)

● 기본적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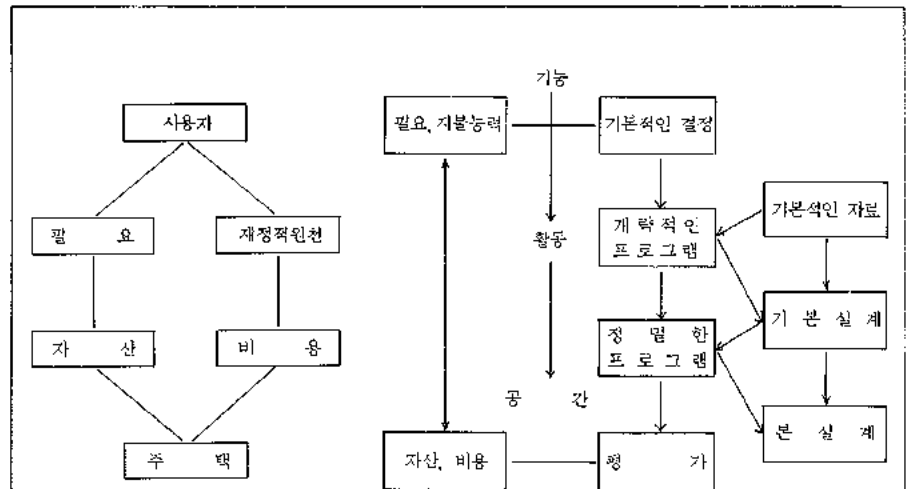
- 1) 자 금-이자율
- 2) 토 지-취득, 비용, 정치적 지원
- 3) 재 료-재료원, 재료의 가용성
- 4) 노동력 -현장에서 기능훈련
계약자의 행정적능력
- 5) 법 제 도-를, 계획, 규칙
- 6) 사회경제-를, 소득분배, 습관, 열망
- 7) 기 후-물적환경 전체기후,
지리적, 기반시설동

● 요구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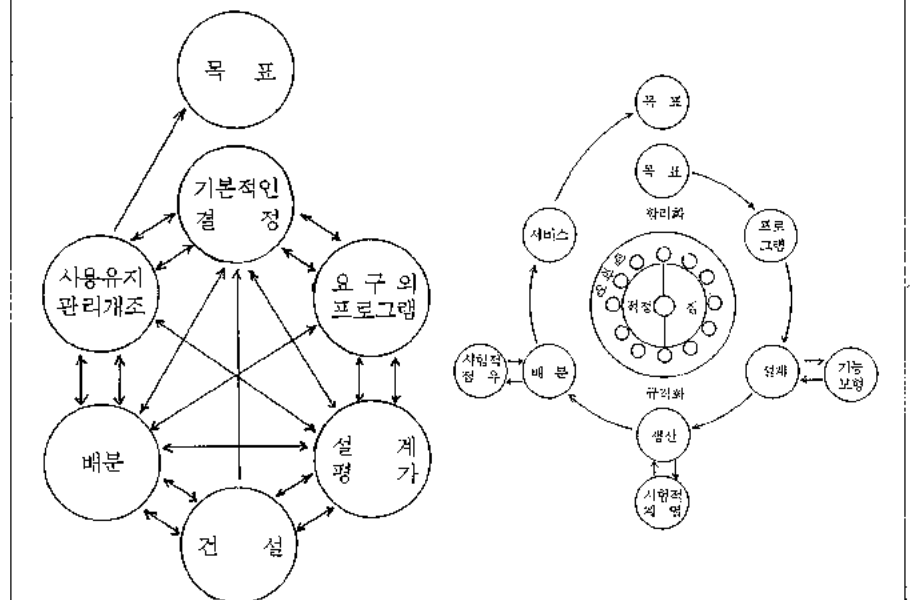
- 1) 전통적인 방법: 선임자가 하던대로 하라.
- 2) 상직에 의존: 건축가와 고객
- 3) 표준과 건설지침
- 4) 기존건물의 분석: 물리적조사, 사용자조사
- 5) 표준프로그램
- 6) 첫번째의 원칙으로부터의 기본적인 연구

7) 배합 또는 절충(Combination)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1960년대초에 주택연구에서 수유리에 에밀레주택, 조립식주택 등 몇가지의 실험주택이 지어졌고 그것이 갈현동 주택단지에도 조립식주택을 건축하였다가 시공의 잘못으로 성공하지 못한채 단절되고 그후에도 조심스럽게 현주택연구소 주변에 시험주택을 건축하였으나 꾸준히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매년 신형이 개발되고 있는것 처럼 주택유형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개발되어 발전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안을 시험단계를 거쳐서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도 실현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案인데도 실험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량으로 건설함으로써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험주택의 시도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나 권장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실패에 돌아갔더라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시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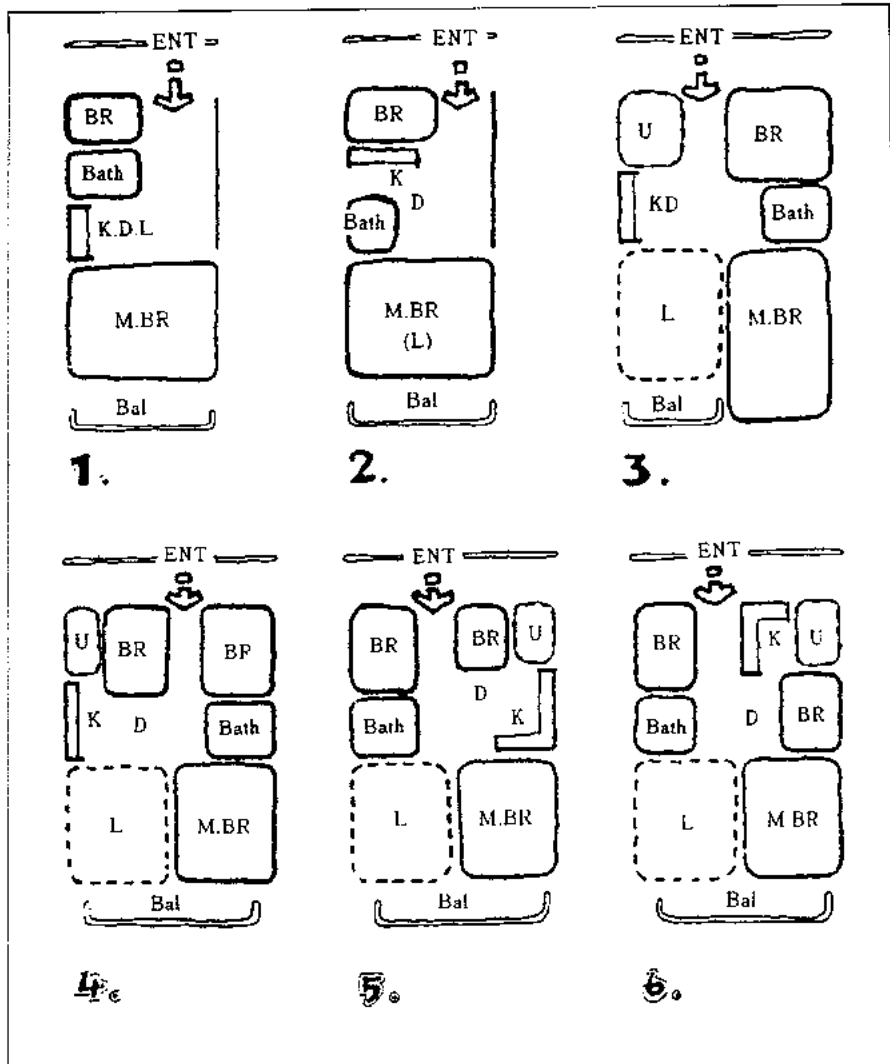


〈그림11〉 주택설계과정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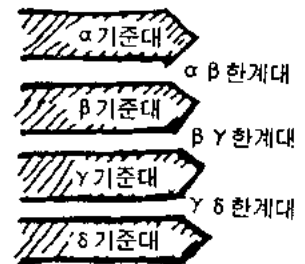
〈그림12〉 주택 생산과정 흐름도

1. 서울지역 편복도형 아파트 평면 유형분석도



가변요소의 접합부분이 된다. 재료에서 다음 격자선까지의 거리 ($0 \leq P \leq 10\text{cm}$)를 접합치수 (fitting dimension)라고 하고 건축재료의 실제 크기가 모듈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합부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치수를 명목치수 (nominal dimension)라고 한다. 즉 벽돌 한장반의 치수는 20cm이나 벽돌 개개의 치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基準帶와 限界帶: 공간배치를 위하여 $\alpha, \beta, \gamma, \delta$ 의 4개 기준대를 설정하였는데 α 는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내부공간으로 외기에 직접 면한 것이고, β 는 사적인 용도와 쓰이는 내부공간이나 외기에 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γ 는 발코니와 같이 공적 용도로 쓰이는 내부공간을 말하며, δ 는 정원과 같은 사적 용도의 외부공간을 말한다. 그리고 기준대 사이에 한계대가 설정된다.

■ 4가지 基準帶



2. SAR設計方法論

固定要素와 可變要素는 두가지 관점에서 그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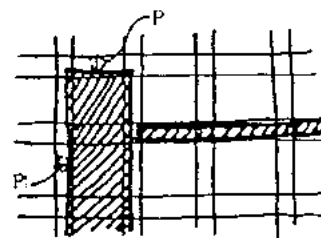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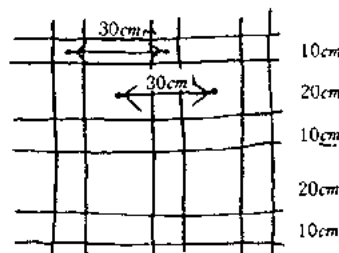
1. 재료의 위치와 치수
2. 공간의 위치와 치수

이 두개의 요소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일반적인 것에서 세부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요소들의 표준화를 위해서

모듈調整方法(modular coordination)이 쓰여지고 있고 모듈격자는 각요소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명확한 수단이 된다. 이 설계를 위하여는 타탄격자(Tartan Grid)라고 불리는 10cm, 20cm의 격자를 고안하였는데 각 격자의 중심거리는 항상 $n \cdot 30\text{cm}$ 가 된다.



이 방법에 의하면 재료는 10cm격자에서 끝나도록 배치된다. (최소 $n \cdot 30 - 10$, 최대 $n \cdot 30 + 10\text{cm}$) 즉 내력벽인 경우 벽의 두께는 최소 20cm, 최대 40cm가 되며 10cm격자는 고정요소와

1. α 기준대: 사적 용도의 내부공간 (외벽에 면하여 외부와 관련 있음)
 2. β 기준대: 사적 용도의 내부공간 (외부와 관련 없음)
 3. γ 기준대: 공적용도의 내·외부공간 (발코니등)
 4. δ 기준대: 사적용도의 외부공간(정원) 한편 기능에 따라 공간을 분류하여 보면
 - ① 침실, 부엌, 서재 등과 같이 상당한 시간동안 이용되는 특별용도공간
 - ② 거실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일반용도공간
 - ③ 창고, 욕실 등과 같이 짧은 시간동안 특수한 활동을 위한 서비스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 이들 공간의 성격을 보면 서비스공간은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으나 특별용도공간은 크기는 결정할 수 있으나 위치는 가변적이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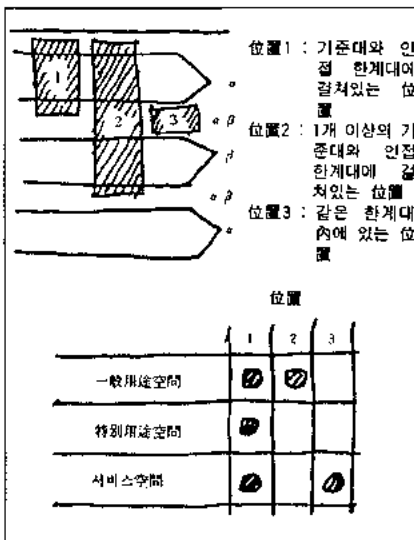
일반용도공간은 위치와 크기가
가변적이다.

	位置	크기
서비스공간	+	+
特別用途空間	-	+
一般用途空間	-	-

(+ ; 正確하게 決定可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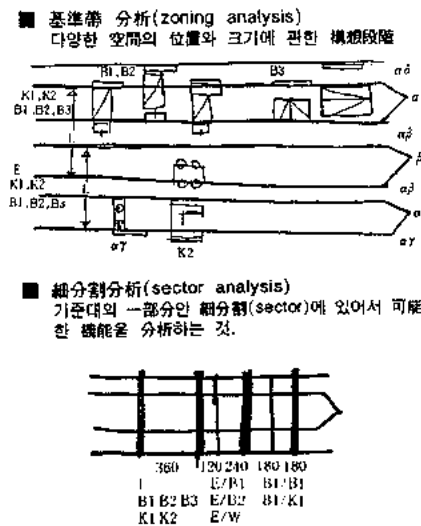
공간별로 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용도공간 (기실)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α 기준대나 β 의 두개의
기준대에 걸쳐서 그 위치를 점할 수
있다.

空間의 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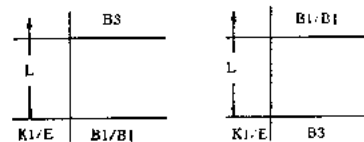
그런데 특별용도공간(침실, 부엌,
서재)은 α 기준대에 있게 되며,
서비스공간(창고, 욕실)은 한개의
기준대에 있게 되거나 α, β 와 같은
한계대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다양한
공간의 위치와 크기에 관한
구상단계로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준대분석(zoning analysis)을 하게
되는 이 단계에서 기준의 치수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는 기준대의 한 부분인
細分割(sector)에 있어서 가능한
기능을 분석하는 세분화분석(sector
analysis)을 하게 된다.
이 세분화분석 과정에서는 한
세분화(sector)에서 가능한 한 많은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치수를
찾아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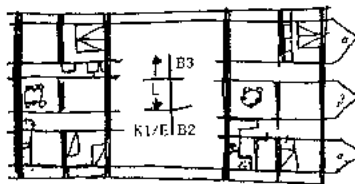


세번째 단계에서는 일반용도공간과
특별용도공간을 기호화하여 주어진
세분화그림 안에서 기능의 배치를
하게되는 기본변화(basic variation)를
검토하게 된다.
끝으로 기능상으로는 기본변화에서
정해진 것과 같으나 실제로는
완성도면을 작성할 때 생기는 부차적인
변화(sub-variation)를 검토하게 된다.

■ 基本變化(basic-variation)
一般用途空間과 特別用途空間을 기호화하여 주어진
細分割 그림안에서 機能의 配置를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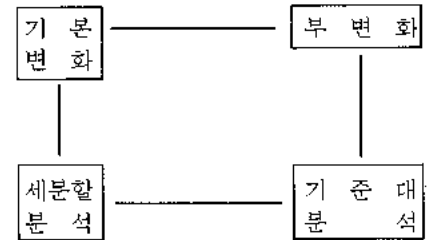


■ 副變化(sub-variation)
기능상으로는 基本變化에서 正해진 機能과 같으나
實際의 完成圖面을 그릴때의 變化.



이와 같이 주택평면이 설계되는데
특별한 흐름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설계과정은 기준대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분화 분석을 거쳐서 부차적인 변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순점이 발견되면
수정하는 평가과정이 있게 된다.

설계 및 평가과정



*통상 기준분석부터 시작(특별한
흐름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SAR의 이론을 도시조직(urban tissue)의
일부로서 주거를 생각하는 개념을
전개하여 근린주거까지 설계하는
것으로 확장시키고 있으나 본교에서는
그 분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3.用語의 定義

1. 固定要素(support) ... 공공의 의사에 따라 집합적으로 사용되며 개인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분(주택에서의 기초, 지붕, 계단실 등...)
2. 可變要素(detachable unit) ... 입주자의 개인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택가능하고 이동가능한 요소(분할벽, 수내공간, 부엌실비 등)
3. 基準帶(zones) ... 요소와 기능에 따라 공간이나 物的構造의 위치와 크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지역
4. 限界帶(margins) ... 基準帶 사이의 中間地域
5. 연속된 地域限界分割(continuous zoning) ... 단독건물의 기준대 개념을 연속된 건물군 혹은 도시지역으로 확대한 개념
6. 都市組織(urban tissue) ... 도시의 전체적인 물적형태를 결정짓는 유기적 통합체 * 단위주거...세포, 커뮤니티...조직
7. 協約(agreement) ... 도시조직의 요소와 기능을 배치하기 위해 전시된 약속이며 도면이나 글로서 표시되어 설계자와 사용자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수단으로 사용된다.

(參考文獻)

1. 주종원, 도시조직의 분석과 설계방법, 건축사, 1975. 5.
2. 정세학 SAR방법론을 적용한 도시저층 집합주거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3. 홍갑선, Zones and Margins방법의 도시설계적용에 관한 연구, (이하생략)

건축, 토목설계의 컴퓨터 이용

先進エンジニアリング의 電算設計

■
Report
Computer Application on
Architectural & Civil Design
by Lee, Sang-Soo &
Park, Hong-Seok



전산설계실전경

I. 序言

Computer가 현대사회에 등장한 이후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끼친 변화와 便宜性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의 피부에 실감나게 느껴지고 있다. 그동안 Computer의 기계적요소(Hardware)와 운용기술적 요소(Software)가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Computer의 역할에 대한 기본개념도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개념을 지나 이제는 '인간을 대신한다'는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다. Computer는 신속성과 정밀성 때문에 60년대 이후 일반화계관리와 기술계산에 사용되어 왔으며 60년대 말에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시스템이 미국의 有數한 항공, 자동차 회사들에 의하여 개발, 사용되어 70년대를 거치면서 건축, 토목, 기계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實用化되고 있다. 이러한 전산화, 자동화의 세계적인 추세와 업무 자체의 필연적인 전산화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Computer 도입을 추진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 업체에서도 70년대 이후 Computer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건설분야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인식과 가능성을 갖게 하고 있다. 즉 Computer의 활용이

일반화 보편화됨에 따라 전산의 활용이 電算人의 독점업무가 이미 아니며 각자의 전문업무를 보조하는 부수적 업무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당사에서는 80년대초 건축, 토목설계의 자동화에 대한 Master Plan을 설정하고 기술계산 및 CAD System 구축에 착수하였다. '80년 8월 전산실을 정식 발족하고 IBM 370/138시스템에 의해 주로 설계관리분야의 기술계산 및 Data Processing 업무를 처리하여 오던중 전설계 공정의 자동처리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에 의해 '81년 11월 CADAM(Computer Augmented Design And Manufacturing)이라는 CAD System 을 도입하였다. 기술계산 및 CAD에 대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각 분야별로 전산이용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여 대부분의 Project에 전산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업무의 전산화는 기술계산에서는 최적계산, 신속성, 정확성 등을 확보하고 도형처리에 있어서는 표준화, 신속성, 신뢰성, 생산성 향상등의 효과를 부여해 주고 있다. 이에 당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산이용 분야 및 수법에 대해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李相守・朴洪錫

(주) 선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II. 先進엔지니어링 電算시스템 紹介

1. 概要

●導入沿革

1980. 8 선진엔지니어링 전산실 발족

CAD System 도입검토

1981. 11 IBM CADAM System 도입

실무부서요원 전산교육

도면 표준화 및 분석

분야별 적용 계획수립

●電算시스템 構成

당사에서는 大型시스템 (IBM4341)

1대와 소형 시스템 (IBM PC/XT

호환기종)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전체적 시스템 구성은 「그림-1」과 같다.

이상과 같이 크게 구분하면

- C. P. U (IBM4341) 1대
- 기술계산용 터미널 10대
- CADAM 터미널 (도면작성용) 6대
- Plotter (Flat-bed Type) 1대
- PC (시방서 및 구조계산용) 4대

등의 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전산적용 업무

당사에서 현재 전산을 적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각 분야별로 「그림-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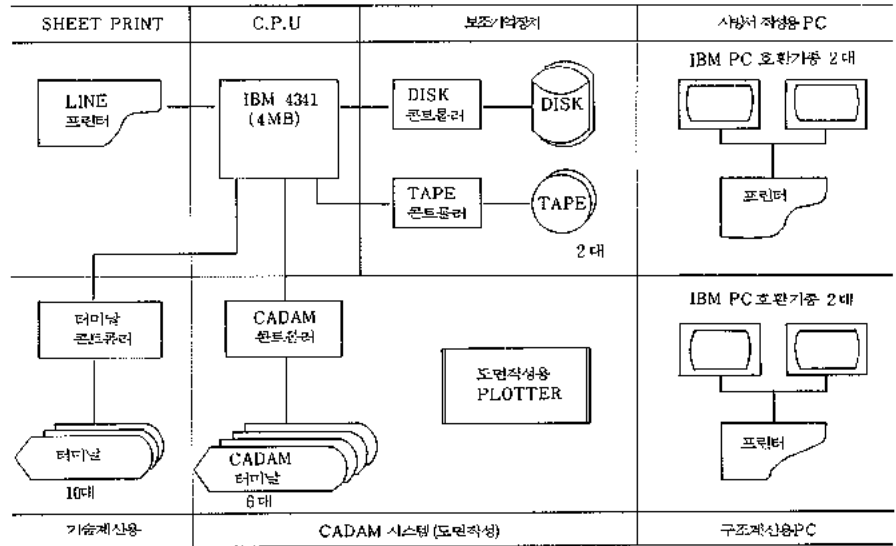
●전산이용 Project (기술계산 및 CAD)

건 축 부 분	보 목 부 분
- 국립 경상대 병원 설계	- 호남, 남해 고속도로
- 사우더 이슬람대학	- IBRD 차관도로
- 리비아 Hotel 설계	- 국립경기장
- 동래온천장	- 지하철 3호선
- 율리픽회관	- 서울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 주택공사 Project	- 안양천 하수처리장
- 각종 아파트 설계 (원양 Apt, 원계 성산 Apt, 복동 Apt, 한진 조합 Apt 등 20여개 Project)	- 남동 공업단지
- 국립 교원대학교	- 상계 배수지
- 고지점 청사	- 자양 유수지
- 고려대 외대 및 부속병원	- 용산 유수지
	- 인천 연수원
	- 도시 고속화도로
	- 도시 계획
* 총 90여개 Project 수행	* 총 70여개 Project 수행

●이용효과 및 시스템 구축배경

당사는 건축, 토목 설계 영역의 기술적 선두주자로서 전산이용을 통해 얻는 효과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설계품질의 향상
- 재설계 또는 유사설계시 기존도면 활용
- 기술계산과 도형작성 동시처리
- 도면의 표준화 (Standard Library 구축)



(그림-1)

(그림-2)

구 분	단 위 업 무	공통업무	비고
건축설계	건 축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투시도 구 조 : 구조해석 및 설계 (평면, 입체), 구조도면 전 기 : 전기도면 (결선도, 계통도, 상세도 등) 설 비 : 설비도면 (계통도, 상세도, DUCT도면) 도 로 : 도로설계, 도로 종횡단도, 선형, 도로투시도 상하수도 : 관로 종횡단도, 우수 및 우수 관망설계, 상수 및 하수관망해석 수자원용 : 홍수위계산, 수문분석 및 홍수량 산정	CAD 작업 및 시방서작성	
토목설계	토목구조 : 사면안정해석, 각종 구조물 용력해석 환 경 : 단지계획 및 설계, 수질 오염 분석 도시계획 : 자료정거 및 분석 수요예측, 경제성 평가 교 통 : 도로망 교통해석, 도시가로 교통망 분석 및 평가		
관 리 부 문	인사, 급여관리		

• Project별 도면 축적

- 대내외적 설계 신뢰성 획득
 -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 각종 시방서의 표준화 및 전산화
 - 인사급여 등 관리업무의 전산화
- 이상과 같은 이용 효과를 배경으로 전체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2. 電算시스템의 基本概念 및 機能

●수작업과 CAD작업의 비교

수작업과 CAD작업의 개념적인 비교는 「그림-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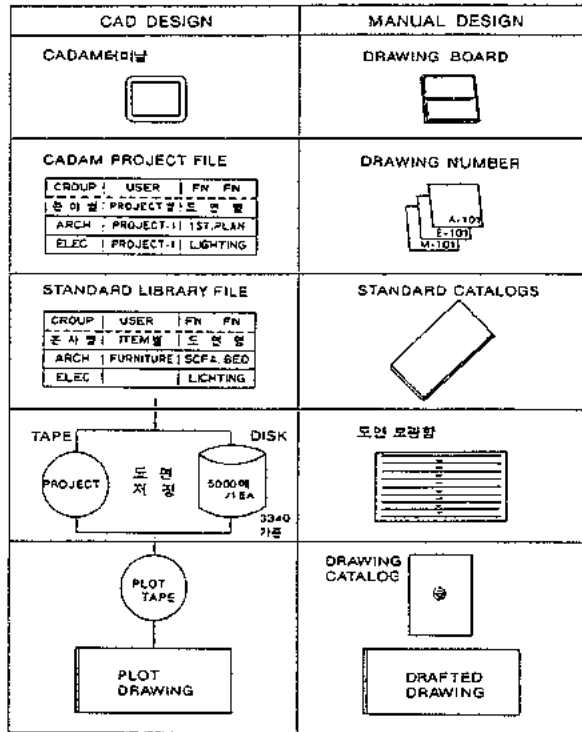
●Project Flow

당사에서 실시하는 Project의 기본 Flow는 「그림-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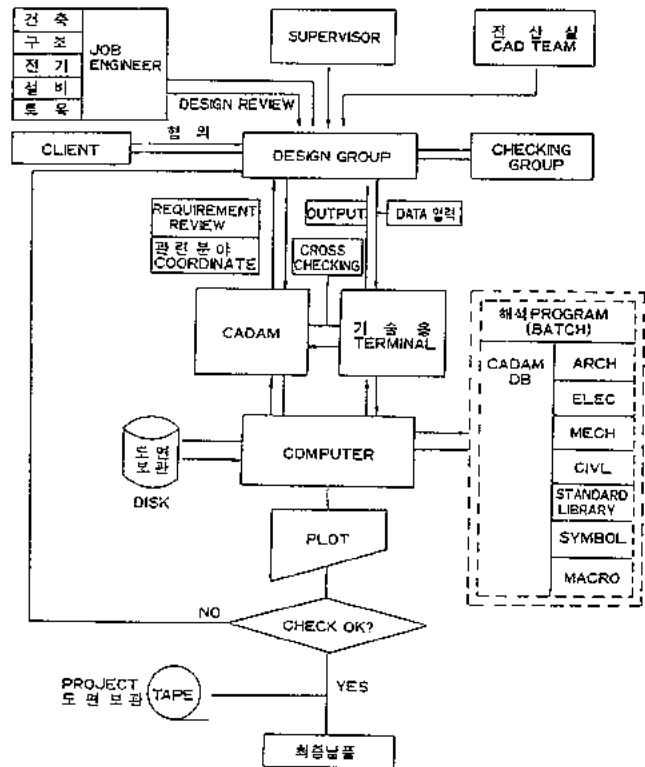
●Program에 의한 Process

기술계산용 Program은 CAD 시스템과 연결하여 도형처리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순수하게 도형 작성용 CAD Program 등도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다. 「그림-5」는 Program에 의해 처리되는 Process를 나타낸다.

수작업과 CAD시스템 작업 비교도



(그림-3)



(그림-4)

3.分野別 電算利用 現況 및 方法

다음은 당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산이용 현황 및 방법에 대하여 건축, 토목 부문으로 크게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가. 건축설계 부문

●개요

건축설계 부문의 경우 설계의 진행에 따라 변경, 반복, 작업에 대한 요구가 많은 편이며 설계의 각분야(건축, 구조, 전기, 설비, 토목 등)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전산활용(기술계산 및 CAD작업)에 적절한 방식을 설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당사에서는

- 기본기능의 이용
- Library 및 Symbol의 구축
- 자체개발 Program

등을 병행 사용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며 건축설계 부문의 설계과업 Process는 「그림-6」과 같이 하고있다.

Schematic Design에 의해서 도면의 전산입력을 시작하여 기본적인 평면도가 완성되면 건축구조, 전기, 설비, Ceiling Plan등을 위하여 중간에 도면을 별도로 각각 Filing 하고 건축평면 작업은 계속 진행한다. Drawing을 시작하기 전에 도면 검토 분석을 하여 비슷한 도면은 중복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활용하고

있다.

이제 건축설계 부문의 각 분야별 전산이용현황 및 그 방식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건축 Design

개요에서 언급된 방식대로 기본기능과 Library와 함께 자체개발한 Column & Grid, Door & Window 작성 Program, WHN Generation Program 등을 활용하여 설계작업을 수행한다.

○Site Plan 및 건물의 Scheme
수작업과 병행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3차원으로 Data를 입력 Perspective, Sometric Drawing을 완성하여 Volumn Study를 하며 Simulation을 통해 計畵的인 측면에서 여러가지를 Check할 수 있다.

「그림-7」과 「그림-8」은 의과대학 건물의 Site Plan 및 View Point에 따른 Volumn을 보여주며 「그림-9」은 투자 금융사옥의 1층 평면도를 Isometric View로 본 도면이다.

다음의 「그림-10」은 강변의 아파트 단지과 대교의 전체적인 View를 Perspective로 처리한 것이다.

○건축평면도

평면도의 경우 Design의 변경에 신속하고 간이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1/100 Scale 이상의 도면을 작성하여 확대 평면도(Enlarged Plan)로도 분할

활용하고 있다.

각층별 평면도 작성시 1개층이 입력되면 Copy하여 수정을 통하여 도면 완성을 한다.

일반적으로 CAD작업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Target 또는 세부적인것 등)은 수작업을 병행하며 평면도에서 도면당 CAD작업수행 완성율은 보통 80~90% 정도이다.

다음 「그림-11」부터 「그림-14」까지 도면은 각각 성산아파트의 Unit Plan과 Floor Plan, 경성대 부속병원, 평면도, Lybia Hotel Plan 등을 보여준다.

○입면도 및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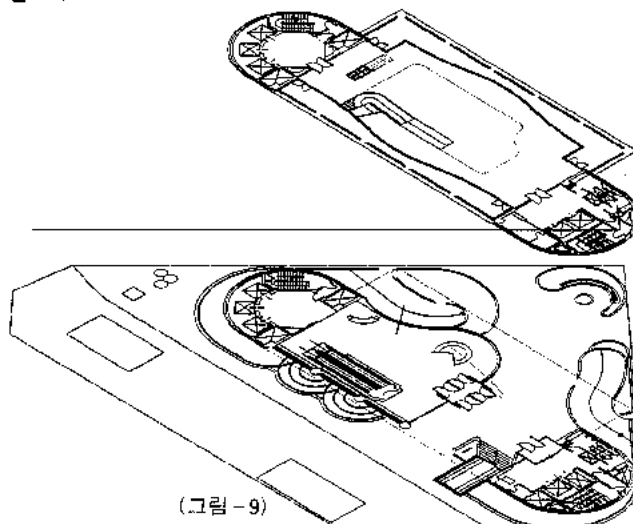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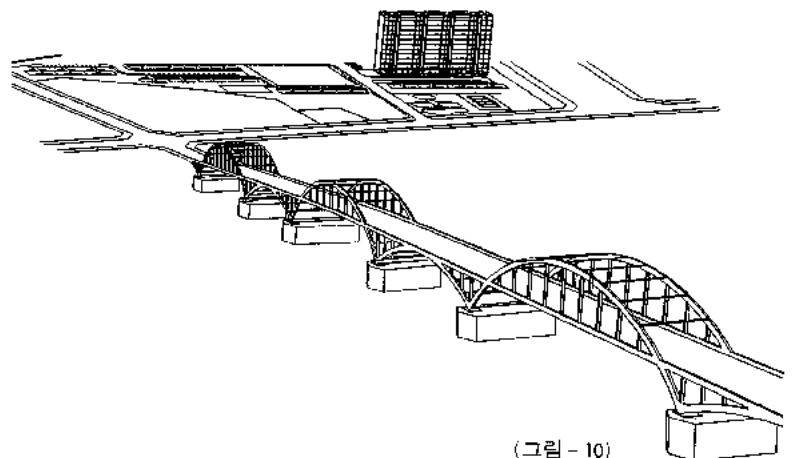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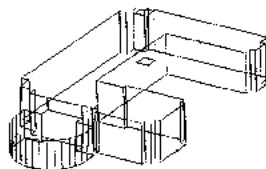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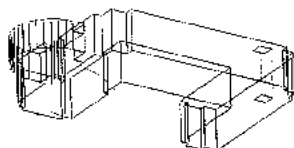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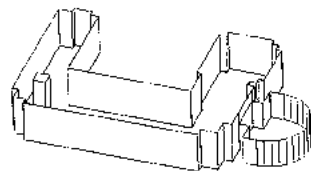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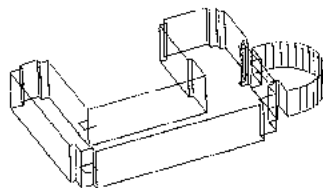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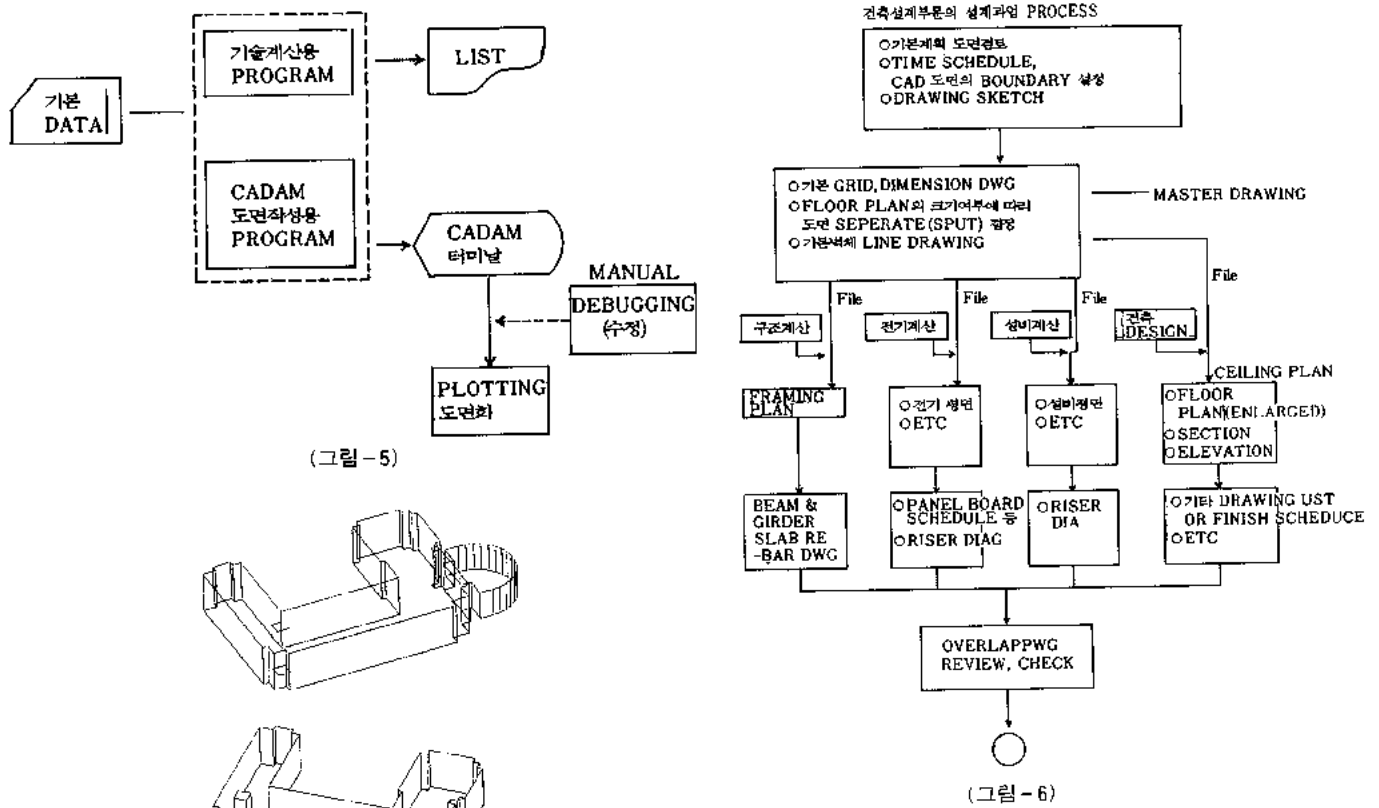
아파트, Office처럼 건물의 창호, 마감재료, Unit Type 등이 유사한 것은 용이하게 CAD작업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100~1/200 정도의 Scale로 작업을 진행하여 도면이 완성되면 부분확대를 하여 상세로써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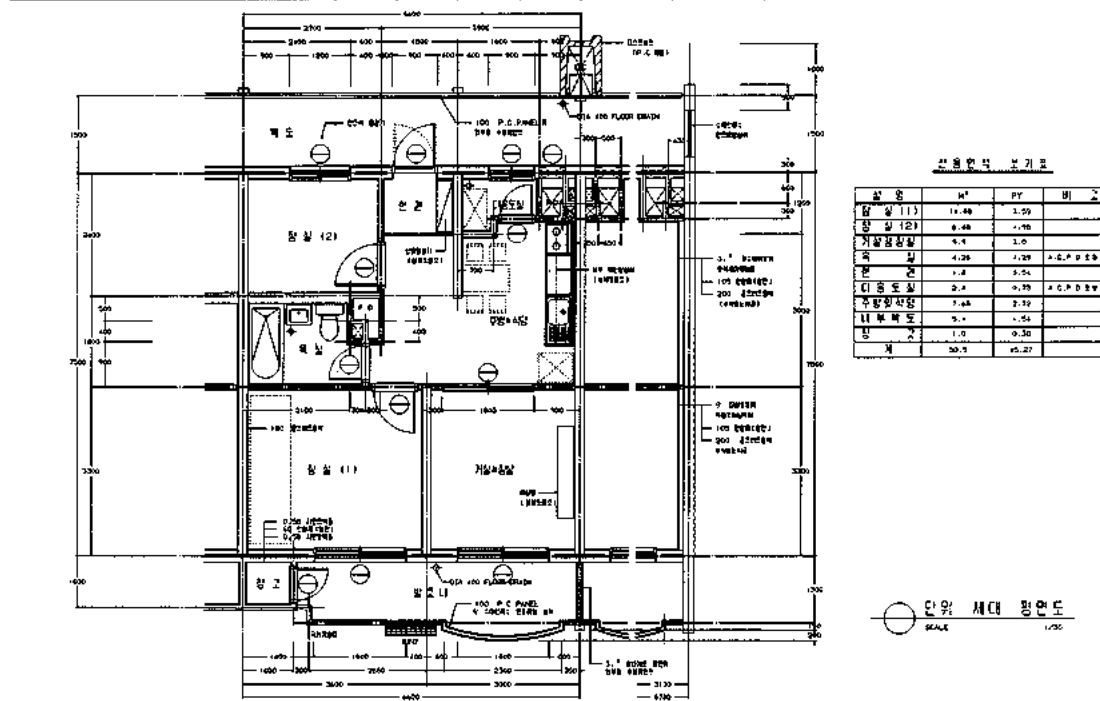
「그림-15」는 대학 부속병원의 입면도이다.

○상세도(Detail) 및 Library구축

상세도는 입력작업이 복잡하지만 일단 입력이 되면 약간을 수정을 가해서 활용할 수가 있으며 Project 수행시 곧바로 Library로써 자료 구축이 되도록 한다.

Library(자료구축)은 자주 사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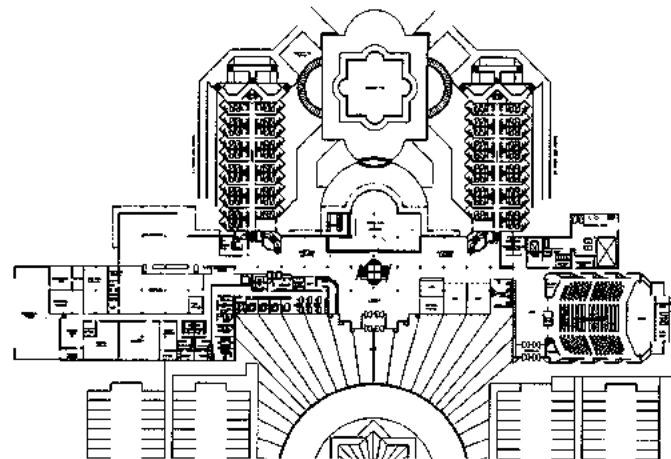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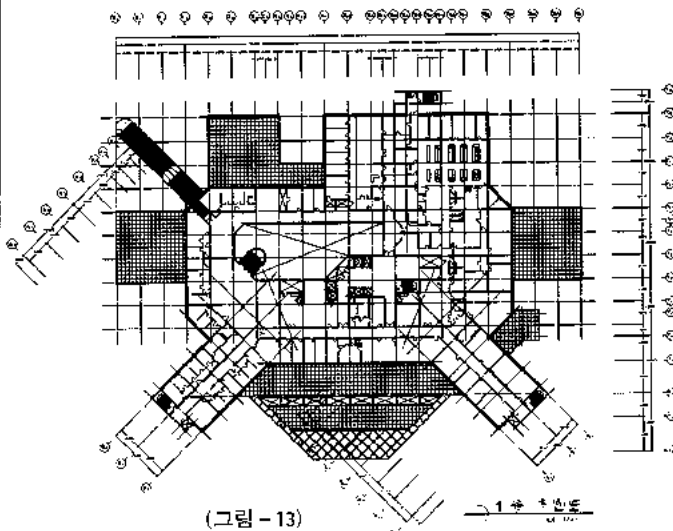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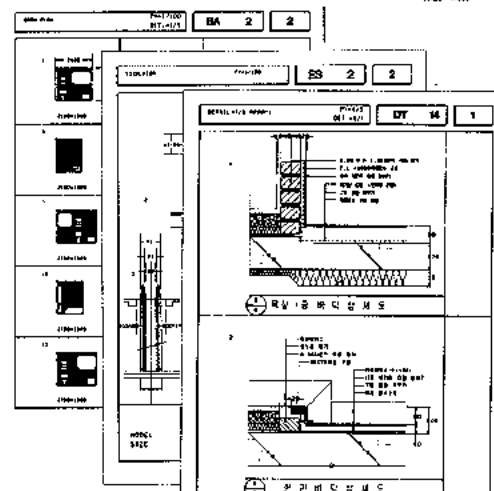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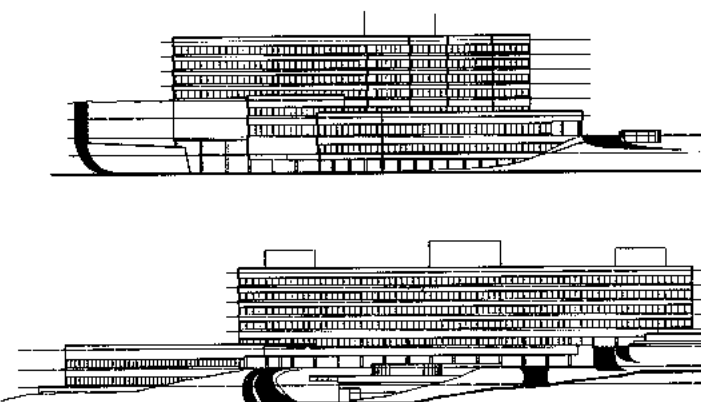
PROJECT : 성산아파트 신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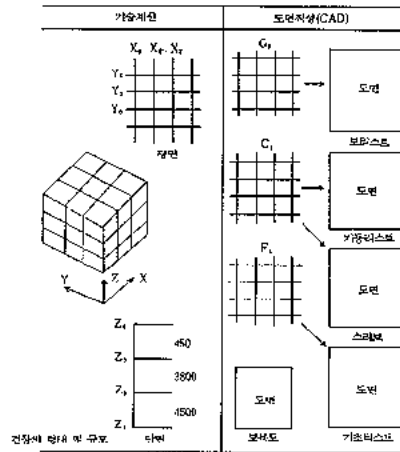
주) 성진엔지니어링
SUN JIN ENGINEERING CO., LTD

(그림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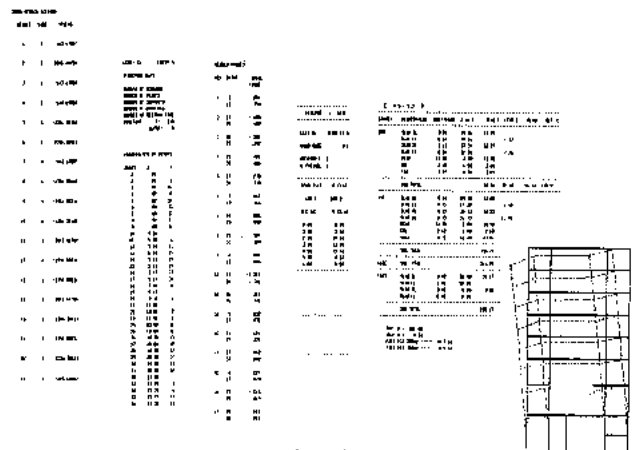


GROUND FLOOR PLAN
SCALE: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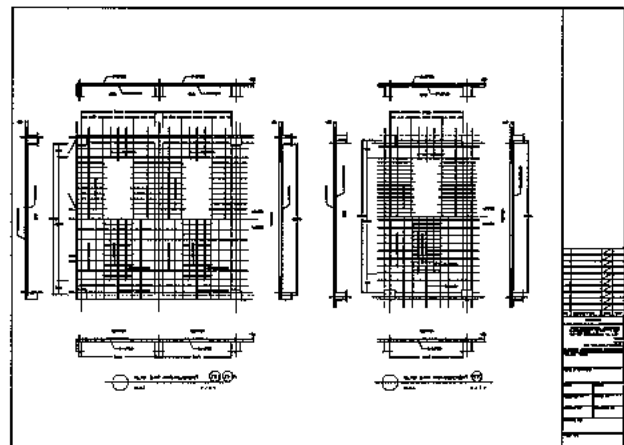
(그림 - 17)



(그림 - 18)

SYMBOL	NO.	NAME	UNIT	QTY	PRICE	TOTAL
100-100	1	100-100	m	100	1000	100000
100-200	2	100-200	m	200	2000	400000
100-300	3	100-300	m	300	3000	900000
100-400	4	100-400	m	400	4000	1600000
100-500	5	100-500	m	500	5000	2500000
100-600	6	100-600	m	600	6000	3600000
100-700	7	100-700	m	700	7000	4900000
100-800	8	100-800	m	800	8000	6400000
100-900	9	100-900	m	900	9000	8100000
100-1000	10	100-1000	m	1000	10000	10000000
100-1100	11	100-1100	m	1100	11000	12100000
100-1200	12	100-1200	m	1200	12000	14400000
100-1300	13	100-1300	m	1300	13000	16900000
100-1400	14	100-1400	m	1400	14000	19600000
100-1500	15	100-1500	m	1500	15000	22500000
100-1600	16	100-1600	m	1600	16000	25600000
100-1700	17	100-1700	m	1700	17000	28900000
100-1800	18	100-1800	m	1800	18000	32400000
100-1900	19	100-1900	m	1900	19000	36100000
100-2000	20	100-2000	m	2000	20000	40000000

(그림 - 19)



(그림 - 20)

도면 일부 또는 전체를 미리 저장하여 필요시 활용하는 것으로 건축에서는

- Elevator 및 Escalator
- Door & Window
- Unit Bath 평면 및 전개도
- 가구(Furniture) 및 Lavatory
- 조경(Landscape)
- Target 및 Mark
- 각종 상세도(Detail)
- 기타 자주 사용하는 도면 일부

등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16」은 이러한 건축 Library를 보여준다.

● 건축구조

건축구조설계 업무는 계산상의 정밀도 등의 질적 향상과 반복 작업 단순화, 신속화를 위해서 전산을 활용하므로써 효율성과 기술수준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업무는 크게 기술계산 업무와 도면 작성 업무를 나눌 수 있으며 「그림-17」은 구조설계 Flow를 보여준다.

○ 기술계산

건물의 형태 및 규모(층고, Span 등)를

입력하여 각 절점·부재에 대한

Stress와 Force등의 Frame 해석을

하며 BMD와 SFD등도 Output된다.

또한 Menu 방식에 의하여 Slab, Beam, Column, Footing, WAN등의 난면설계를 전산 처리하고 있다.

「그림-18」은 이러한 전산처리의

Output을 보여주고 있다.

형태가 특이한 부재는 CAD도면화시켜 단면 2차 모멘트, 무게중심 등을 자동 산출하여 활용한다.

○ 도면작성

구조 도면의 작성은 CAD 기본 Function과 자체 개발CAD용 Program (Beam & Girder List, Slab, Column, Footing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음 「그림-19」부터 「그림-22」은 입력 Data와 도면을 보여준다.

보복도(Framing Plan)은 앞에서 기술한대로 건축 도면을 작성하는 단계(기둥, 그리드, 기본 벽체 등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Filing하여 완성한다.

「그림-23」은 보복도를 보여준다.

● 전기설계

전기 설계는 건축 Design의 확정에 따라 수행되기 때문에 시간상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기술계산에 이어 곧 도면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Bus의 Fault Point의 Voltage 및 단락 전류계산을 하며 전기 평면은 건축평면 작업중에 Filing된 도면으로 도면 작업을 수행한다.

CAD의 도면 작성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CADAM에 Display되는 도면 작성을 한다.

○ One Line Diagram Program
Main, Trasformer 및 Branch Feeder의 Type을 입력하여 각 건물의 One Line Diagram을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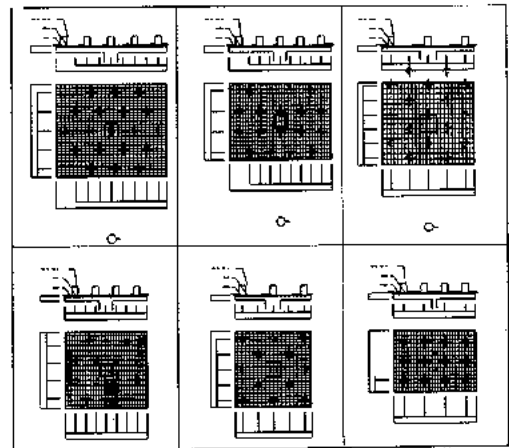
○ Riser Diagram Program
계통도를 작성하는 Program으로 다음과 같은 System별로 도면작성을 할 수 있다.

- Interphone
- Telephone
- Tele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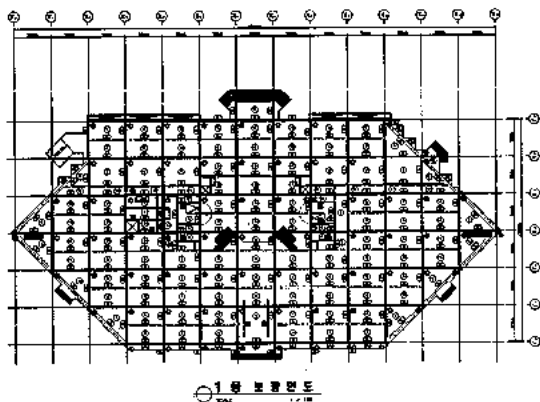
[illegible][illegible]

Symbol	32x	1-32x	32x	64x	3-64x	72x	96x
REG1 (10x)							
REG2 (32x)							
REG3 (64x)							
REG4 (96x)							
REG5 (128x)							
REG6 (160x)							
REG7 (192x)							
REG8 (224x)							
REG9 (256x)							
REG10 (288x)							
REG11 (320x)							
REG12 (352x)							
REG13 (384x)							
REG14 (416x)							
REG15 (448x)							
REG16 (480x)							
REG17 (512x)							
REG18 (544x)							
REG19 (576x)							
REG20 (608x)							
REG21 (640x)							
REG22 (672x)							
REG23 (704x)							
REG24 (736x)							
REG25 (768x)							
REG26 (800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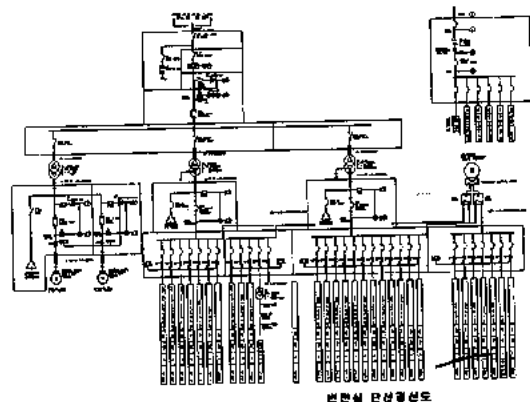
(그림 - 21)



(그림 - 22)



(그림 - 23)



(그림 - 24)

- Power
- Speaker
- Firealarm

「그림-24」은 Riser Diagram을 보여준다.

○Panel Board Schedule

Number Of Phase Branch Circuit,
Breaker Size 등을 입력하여 분결반
결선도를 완성한다.

OMcc 결선도

Branch Feeder Type과 Breaker등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도면을 작성하며
「그림-25」은 Panel Board Schedule과
Hcc 결선도를 보여준다.

○ Lighting Layout

Lighting Layout은 CAD기본기능 및 자체 개발한 Program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그림-26」은 아파트 Unit Plan의 Lighting Layout을 보여준다.

○삼세도 및 기타

Project 수행시 입력되는 상세도를 기본 Library로 저장하여 필요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활용한다. 「그림-27」은 Library로 구축된

Power 및 Cable Tray 상세도 이다.

- ## ● 설비설계

설비설계는 전기설계와 마찬가지로 건축평면 작성시 Filing된 도면으로 도면 작성을 수행한다.

기술계산용 Program과 CAD 도면 작성용 Program을 연결시켜 건축설비 Duct 평면도 작성과 해석, 물량을 동시에 수행한다.

○ Duct 평면도

CAD에 저장되어 있는 건축도면을 꺼내
설비 Duct 중심선을 Design하여 필요한
타이틀을 입력한다.

Supply, Return, Exhaust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며 Rectangular Duct와 Round Duct의 2Type의 Duct Drawing을 완성할 수 있다.

「그림-28」은 그 가본 데이터 입력과 출력 도면을 보여준다.

결과치는 Print Out (Sheet)과 CAD 터미널에서 도면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적열 부하계산

기상 Data가 Master File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일자별로 각 건물의 냉난방 부하계산을 한다.

「그림-29」는 Print Out (Sheet) 와 출력 도면이다.

○상제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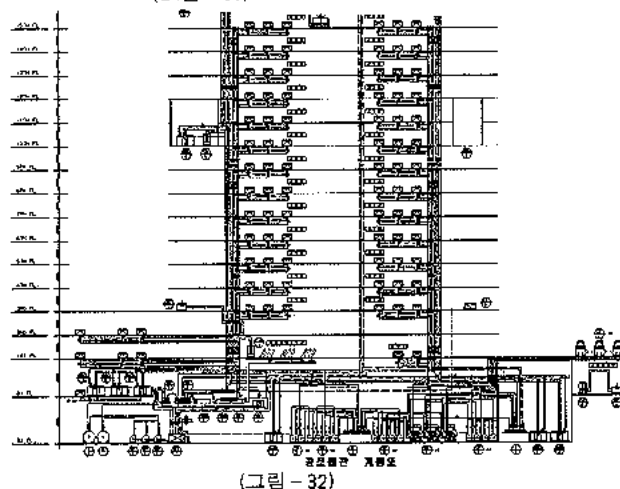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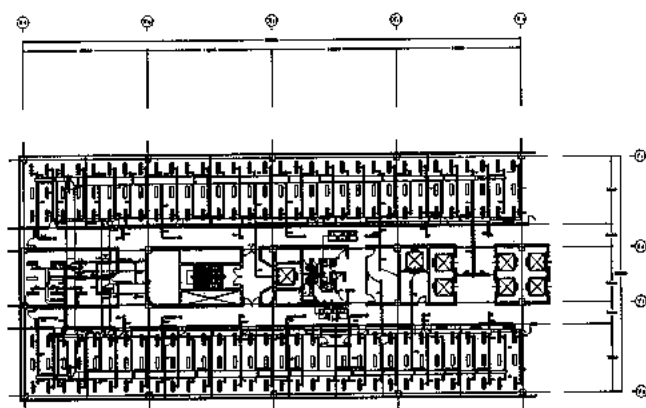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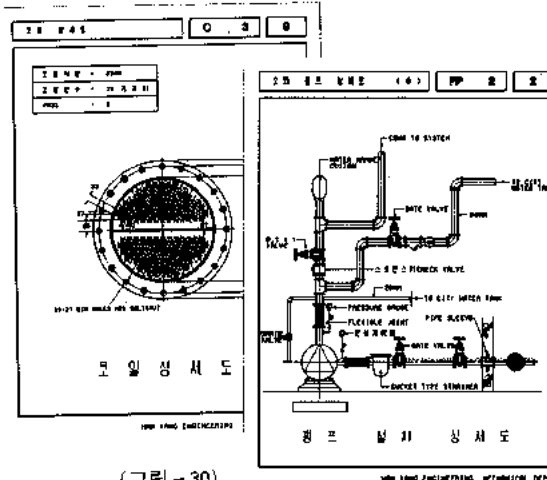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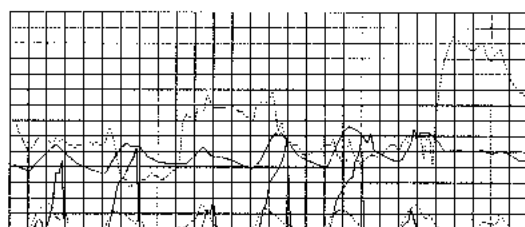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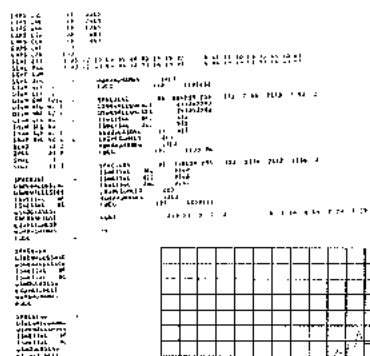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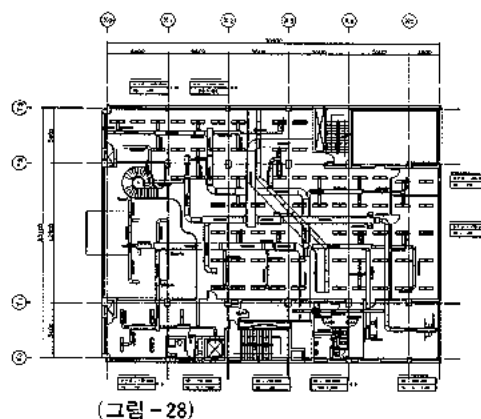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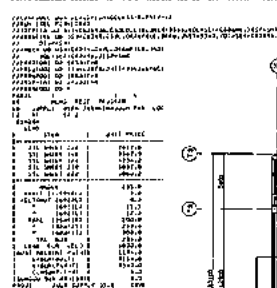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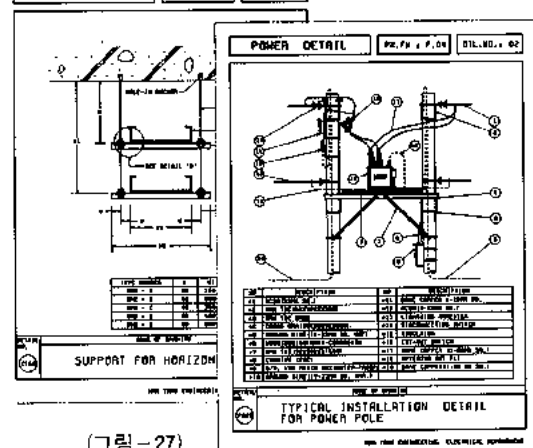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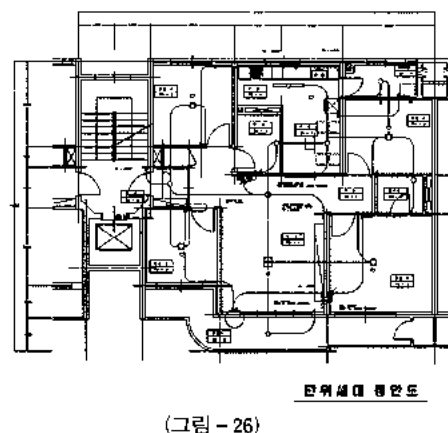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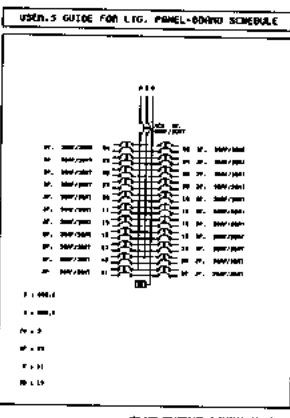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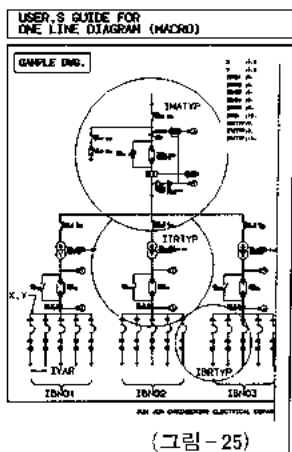
다음 「그림-30」부터 「그림-32」까지는
각종 상세도 및 설비도면의 예를
보여준다.

나. 토목설계 부문

- ## ● 개요

토목설계의 전산화는 과업의 상황,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전체적인 공정의 체계화를 유도한다. 과업의 개개 단위 공정을 구분하여 이에 대응하는 전산처리 방법과 최적화 수법을 유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설계 Process를 마련한다. 당사에서는 CAD System을 기술계산 Program과 연결 운용하여 일괄처리 또는 대화식으로 과업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설계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토목설계 부문도 건축설계 부문과



마찬가지로

- 기본기능 이용
- Library 및 Symbol의 구축(표준도 등)
- 자체 개발 Program(기술제산 및 CAD)

등을 병용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한다. 기본적인 전산화 특징 및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Total Design 개념의 확립
- Program 작업에 의한 연속성
- 대화식 설계(Interactive Design)
- 반복작업의 신속성 및 정밀도 확보
- 확장성 및 융통성 부여

다음은 토목설계 분야의 각 분야별 전산이용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다.

●도로설계

도로설계 분야의 전산이용은 그 발전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이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당사에서는 CAD System을 주축으로한 도로설계 업무 전산화를 추진하여 평면중심 선형, 종단 선형, 횡단도, 토공량 및 토적표, 용지 선형 등의 기술제산과 도면작성을 할 수 있는 Program을 자체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Program은 당사에서 수행 하였던 남해 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실시 설계등에 적용하여 그 안정성 및 정밀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설계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매진하여 도로설계의 Total Package System 골격이 구축되어 있다.

○도로설계 전산 Process

현장 조사 자료를 입력하여 각각의 선형 분석 및 계산결과를 출력한다. 이들은 세부설계의 자료가 되며 기준으로써 이용되어 적산처리의 근간이 된다.

또 CAD Program을 이용하여 CADAM에 연결시켜 도형처리를 한다.

「그림-33」은 당사의 도로설계 Program에 의한 전산처리 Flow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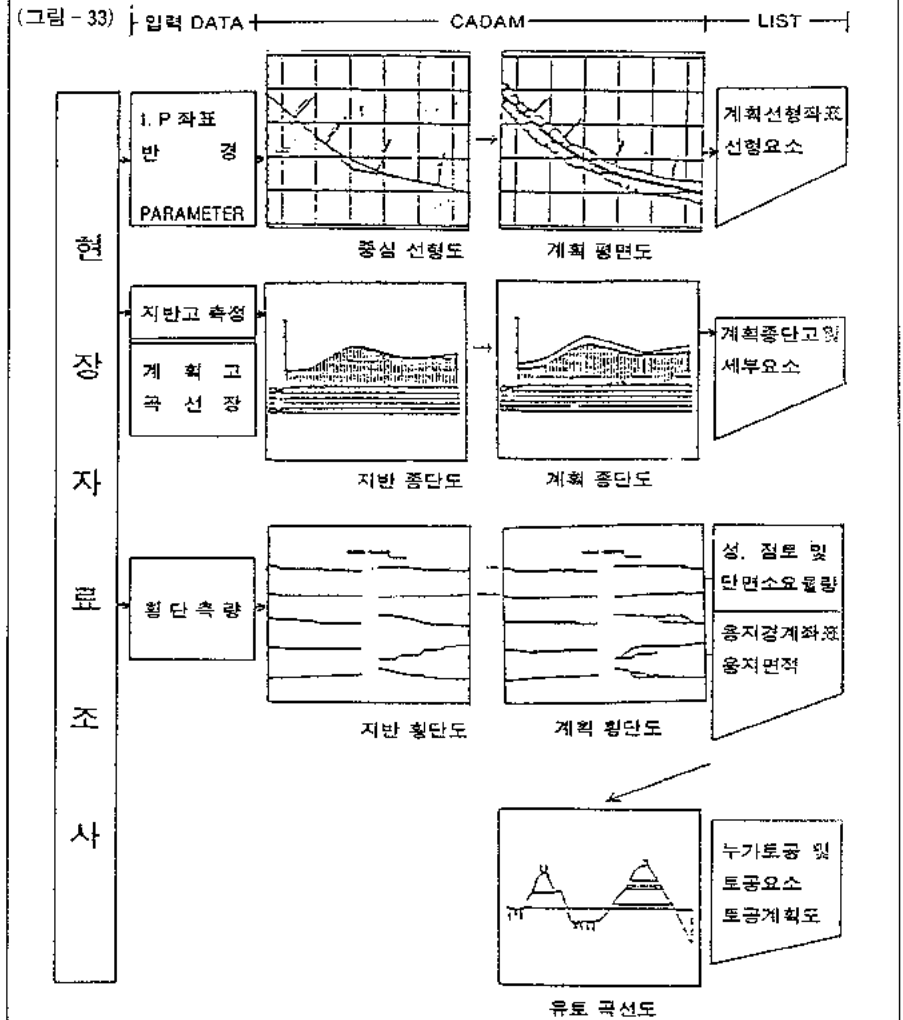
○평면 선형 설계

평면 선형 해석과 그 결과치로써 CAD System과 연결시켜 그 Layout을 CADAM 터미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Program은 평면 선형 해석과 자동제도 작업을 일련화 시킴으로써 신속, 정확, 단순성을 부여한다.

●종단 선형 설계

선정된 노선의 지반고와 종단 곡점의



제곡고를 입력하여 각 Chain의

제곡고를 계산하고 도면은 CADAM에 작성된다.

○횡단설계 및 물량계산

횡단측정 데이터의 간단한 입력을 통하여

- 횡단 구성요소의 물량(토사, Ripping, Blast, Fill 등)
- 용지선의 결정
- 토공 데이터의 확보
- 횡단도 작성

등을 하며 특히 대응 Template 단면과 해석 결과는 도면으로 CADAM 터미널에 Display한다.

○토공량 계산 및 적산

토공량 누가계산을 하며 특히 수작업으로 횡단을 그릴 경우에도 데이터 입력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내역서 등의 공사비 산출을 한다.

○Output 및 도면

「그림-34」부터 「그림-35」까지는 도로설계의 Output 및 도면을 보여준다.

●상하수도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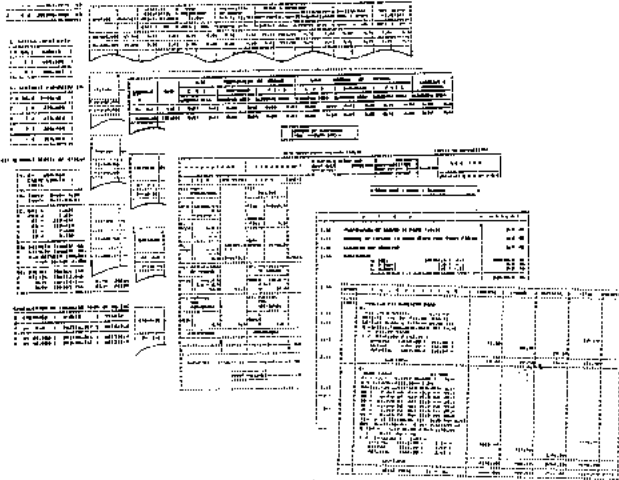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상 하수 관망설계, 오수 및 우수관망설계, 관로의 종횡단도 작성 Program이 활용되고 있다.

○상수 관망설계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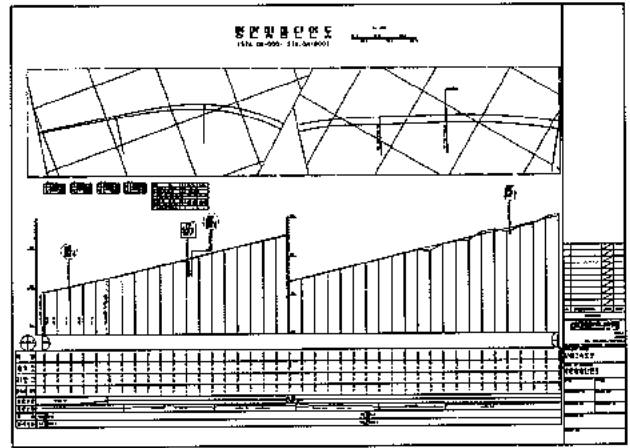
배수관망 설계시 주어진 설계조건 하에서 관로, 격점, 관망, 경계조건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관로의 유량, 유속, 각 격점의 동수두와 잔류수압을 구한다.

○하수 관망설계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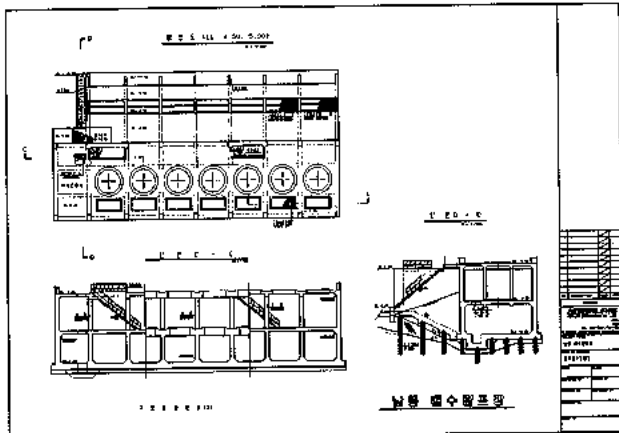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로의 관경, 관저고 등을 결정하여 각관의 크기가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Program에 의해 수계산에 의한 복잡성과 부정확성을 배제하게 되었으며 기존 관로 중에서 구배를 조정하거나 신설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도 계산이 가능하다. 「그림-36」은 상 하수도 설계시 Output 된 Sheet와 CAD 작성도면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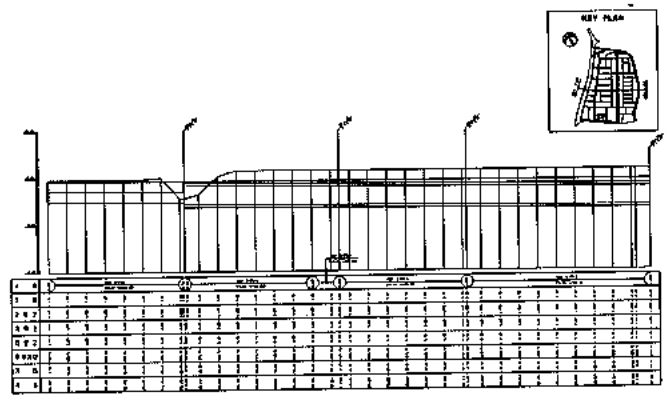
(그림 - 34)



(그림 - 35)



(그림 - 36)



(그림 - 37)

○오수 및 우수 관망설계

분류식 하수관로의 설계시 오수 및 우수 관로의 최적 Dia를 결정하고 가정 Slope, 관로연결 Code를 입력하여 필요한 관경 유속 등을 계산한다. ○관로 종·횡단도 작성 Program 관로 설계시 맨홀의 위치와 그 지점의 관저고를 입력하여 누가 거리, 토피, 맨홀의 높이 등을 계산한 후 CAD System과 연결하여 종·횡단별로 작성한다.

「그림-37」은 종·횡단도를 보여준다.

●수자원 설계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계획을 위하여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및 치수경제 등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자원 종합개발을 위한 업무에 전산을 활용하고 있다.

○수문 분석과 홍수량 산정

하천을 여러개의 단면으로 분할하여 각 단면의 좌표 값을 측량하여 각 빈도별 강우량에 대한 어느 지점의 홍수위를

예측할 수 있으며 홍수량 추정을 한다.

「그림-38」은 전산에 의한 Output

Sheet를 보여준다.

●토목 구조설계

토목 구조는 각종 구조물의 응력해석, 사면 안정해석 등의 업무 처리에 전산이 이용되고 있다.

이용하는 업무는

• 2차원 해석 및 결과치(단면력)에

따른 철근량 산정

• PC Beam 구조계산

• 역 T형 및 부벽식옹벽 안정 검토 및

단면력, 철근량계산

• 터널 구조해석 및 지보안정 검토

• 사면안정 검토

• 직사각형 및 T형보 응력검토

• 기타 각종 해석

등이 있으며 「그림-39」은 계산결과

Output Sheet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 연구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와 각종 오수·폐수 처리장 설계 등을 한다.

이중에서 환경영향 평가는 개발행위에 의한 장애 예측을 함에 있어서 Simucation Model 해석을 해야 하므로 전산의 이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사용 Model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에 따르는 통계해석 Program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림-40」은 Output을 보여준다.

●도시 계획설계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 사회, 인문분야의 기초자료집계 및 분석

• 토지이용 분석

• 장애 수요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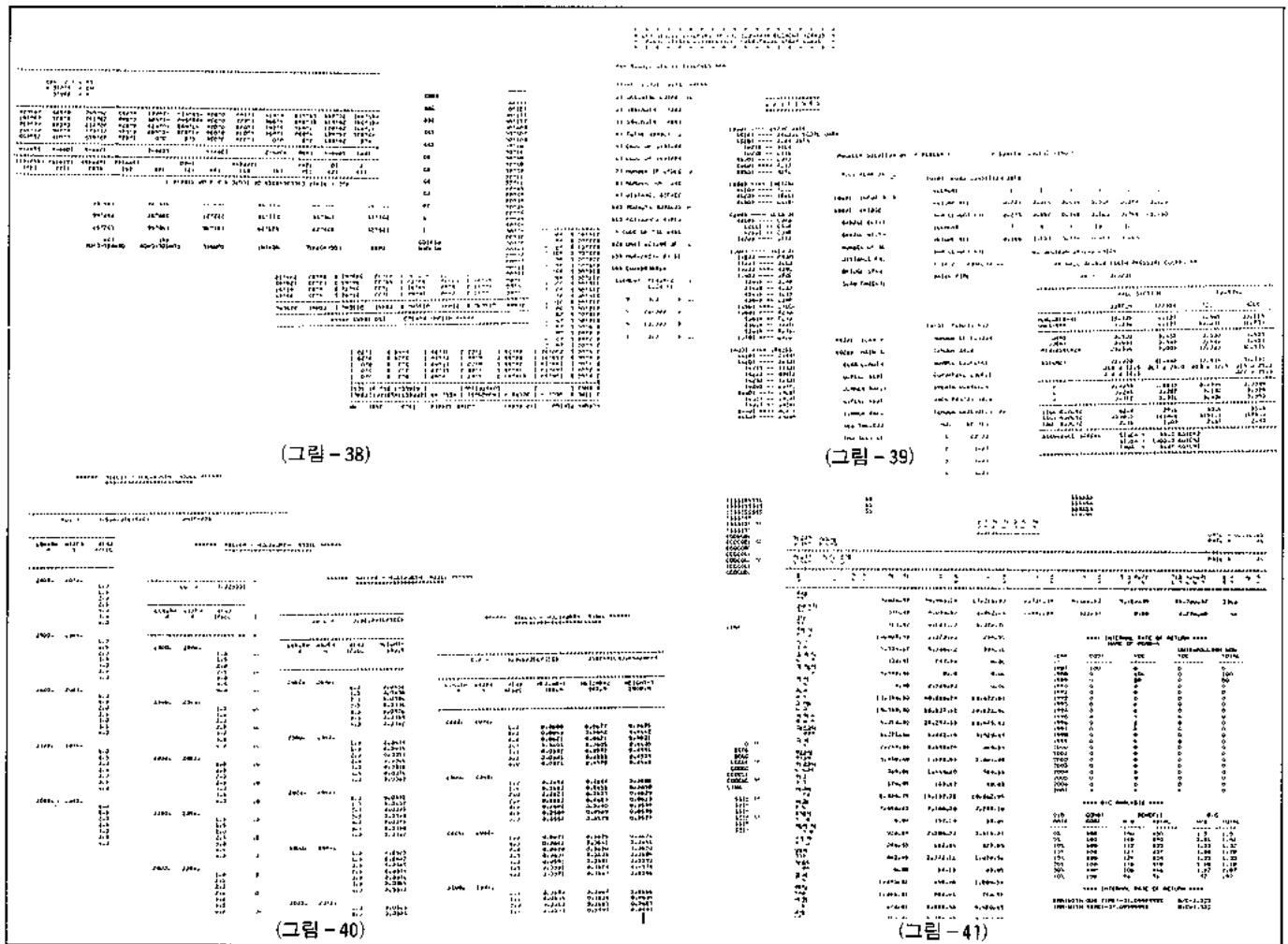
• 경제성 평가

등의 계량적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전산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자료정리 및 분석

• 설문조사 등의 방대한 자료를 전산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내에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계획 수립시 기초적 자료로써 활용한다.

• 재개발 계획 환지설계 등에서 중요한 자료인 토지관련대장 및 조서들을 일괄



전산처리 하여 신속성 및 정확성을 기한다.

○장래 수요예측

일반 사회 경제 지표 설정 및 예측시 시계열 분석, 상관분석을 위하여 Multilinear Model, Log함수, 지수함수, Computer Model등 회귀분석 Program을 이용 예측하여 주요 지표 설정에 적용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

사업계획 수립시 필요한 IRR, B/C비, NPV등을 전산이용 처리하여 단계별 사업계획 확정,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용한다.

「그림-41」은 도시계획 분야의 전산 Output을 보여준다.

III. 結言

흔히들 전산분야에서는 5년 정도이면 세대가 바뀐다고 한다. 세대의 변천에 따라 Computer의 Hardware와 Software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Computer의

Hardware, Software 그리고 사회적 여건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전산화 추진 상황이 과거에 비하여 월등히 좋아지고 있다. 몇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정도로 기기가격이 저렴해지고 그 응용 기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PC(Personal Computer :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기술계산 뿐만 아니라 AUTOCAD, IBM의 MICRO CADAM 등의 CAD 시스템이 훌륭하게 운용되고 있다. 이제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외국의 것, 타인의 것으로서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느끼고 있던 Computer가 건축토목설계 분야에서도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와 변화속에서, 보다 새로운 인식과 도전적인 사고방식으로써 설계업무 전산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산화는 일시에 기기를 구입하여 추진한다고 하여 이룩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우리가 타인의 웃을 그날

임을 수 없는 것처럼 업무의 전산화도 타회사의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스스로의 체질 및 규격에 맞추어 적절한 규모 및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건축 토목인들이 전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운전자가 잘못하면 그 자동차는 잘 이용할 수가 없다. 적절한 기름의 공급, 자체정비 그리고 세심한 운행 등이 따라야 한다. 전산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Computer는 분명히 인간의 모든것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보조 수단으로써 큰 효율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문명의 이기임에는 틀림없다. 이것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는 것은 전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산설계 Process의 개념 정립에서 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 건축·토목인들이 모두 함께 매진해야 할 것이다.

解決되어야 할 課題들

조영재
사회정화위원회 전문위원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화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좋아진 면도 있는 반면 잘 안되고 있는 면이나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분야 또한 적지 않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개될 제 2 단계 정화운동에서 새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지향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는 우리사회에 말과 행동의 윤리가 서있지 않다는 점이다. 韓非子의 말과 같이 “발잡이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쟁기 잡는 사람은 적고, 전쟁론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잠옷 입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다.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말하는 것 다르고 행동하는 것 다르며,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항상 말이 앞서고 약속이나 신의는 지키지 않는 경향이 너무 많다. 이러한 언행의 불일치는 결국 사회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孔子의 말—無信不立—처럼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는 위험한 경지로 몰고 갈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인 것이다. 이제부터 말은 아끼고, 떠드는 연습대신 행동으로 말하는 사회기풍을 세워 나가야 하겠다.

둘째,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구조적 기반과 사회풍토의 조성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의사회가 보편성, 자율성, 형평성, 능력과 업적성, 공정성을 전제로 사회의 기회구조와 분배구조, 게임규칙문제에 관심을 갖는 가치철학이라 할 때 우리사회가 그동안 정의사회의 실현을 위해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해왔는가를 냉철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가난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라”는 孔子의 가르침도 음미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오늘날 가장 호전적이고 모험주의적인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처하여 전쟁의

위협 속에 체제 경쟁과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달동네나 절대빈곤층이나 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어웃들이 적지 않으며 이들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은 함께 걱정하고 고통을 나누는 자세와 노력이 긴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와 사회 각분야 지도층들의 소명의식과 사심없고 깨끗한 자세이다. 이들이 오늘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느냐, 나라와 겨레를 위해 얼마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의로운 나라, 선진한국을 실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며, 지도층이 바르게 하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라는 孔子의 말이나,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공직자가 될 수는 없다. 청렴이야말로 천하의 다시없는 큰 장사이다. 욕망이 큰 자일수록 반드시 청렴한 것이니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까닭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지혜를 가진 선비로서 청렴을 좌우명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하지 않은 자는 없었다”라고 한 茶山의 말을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깊이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청렴은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의 기본적인 덕목이 되어야 하며, noblesse oblige라는 말과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많은 가치를 향유하고 있는 지도층들은 그에 상응하여 보다 많은 책임과 고뇌를 짊어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爲民과 奉公을 위하여 先之勞之하며 率先垂範하는 자세가 바로 그것이라 할 것이다.

사회정화운동은 우리사회를 「밝고 바른 사회», 「인간답게 잘 사는 사회»,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믿음의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가 모여

시작된 운동이다.

사회정화운동은 선진국으로의 길목에 서있는 우리의 역사발전 단계에서 볼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치관의 재정립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 당위성과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땅에 겨레의 꿈과 의지를 꽃피우기 위해 한발 한발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회정화운동은 국민화합과 사회안정을 이루고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가속화시키므로써 선진한국을 앞당겨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국운도약의 이 기회를 맞아 21세기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여느냐 못 여느냐 하는 것은 4,200만 겨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자세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참으로 인간답게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뼈를 깎고 겹질을 벗는 아픔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사회정화운동은 뜨겁게 불당겨진 우리의 자긍심과 겨레의 빛나는 얼을 더욱 키워나가기 위해 부단한 자기성찰과 함께 새로운 정열을 불태워 나가야 하겠다.

한 세대 (generation)의 희생없이 하나의 민족이 번영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음은 인류사가 웅변하고 있는 바와 같다. “애국이란 조국에의 애정과 봉사이다. 인간의 재산·신앙·철학·신조 이 모든 것은 조국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조국을 잃게 될 때 그는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진리이다.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겨레의 대행진, 사회정화운동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으려는 독립투사가 된 마음으로 함께 걱정하고 땀흘려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회정화운동, 그것은 민족사와 세계사를 밝히는 「큰 등불」 바로 그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質疑・回信

質疑

층별구획이 되어있지 않은 주차전용건축물(파킹타워)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대구직할시장)

回信

가. 주차용도에 쓰이는 파킹타워가 기계식 주차장(자주식 주차건물로서 층간구획된 것 제외)으로서 바닥이 층별로 구획이 없는 경우라면 당해 주차부분의 최하층 부분의 면적이 바닥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 건축물이 없는 기계식 주차시설만의 높이가 6미터 이하로서 벽체 등이 형성되지 않고 골조로서만 구성된 경우라면 공작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높이가 6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기둥, 벽 지붕으로 구획되어져 있을 경우 또는 동주차 시설이 6미터를 초과한 것은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의 제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며, 공작물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법 제9조의2 제2항, 제23조 및 제41조의2의 규정 등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조정부분, 통로 및 공지부분 등에는 이를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다. 차후로 귀시소관 구청에서 질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귀시를 경유토록 하되 귀시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당부에 질의하도록 하기바랍니다.

質疑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은 세대수 및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공사 감리대상이 되는지 및 그 방법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433-4번지 김영복)

回信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종합공사 감리(다세대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은 것에 한함)를 하여야 하며, 종합공사감리시에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공사기간 동안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분야별 해당공사 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 것이나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質疑

종교시설은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3미터를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바, 인접대지 경계선에 도로나 하천부지 등이 접하고 있는 경우 어느 부분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0-11 복음건축사사무소 김종택)

건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용도지역 및 특정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대지와 대지 사이에도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제외한 공원이나 도로, 철도,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측 경계선이 인접대지 경계선이 되는 것이나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質疑

가. 건축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중인 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종합에서 단독으로 또는 단독에서 종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등록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단독건축사사무소로 개설 등록하여 별개로 운영중인 여러개의 건축사사무소를 통합하여 하나의 단독건축사사무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사항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경상남도 지사)

回信

질의 “가와 나”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3조,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을 별도규정하여 구분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건축사보를 변경하는 경우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사사무소를 종합에서 단독 또는 단독에서 종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등록기준에 따라 업무범위가 바뀌어지므로 이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여러개의 단독건축사사무소를 하나의 단독건축사사무소로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사무소는 폐업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

“예시”

○신규등록으로 보는 경우

-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 단독건축사사무소로
- 단독건축사사무소에서 → 종합건축사사무소로
-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 종합건축사사무소(변경)
 - 단독건축사사무소(신규등록)
- 단독건축사사무소에서 → 단독건축사사무소(변경)
 - 단독건축사사무소(1개 사무소는 신규 등록)

○등록사항변경으로 보는 경우

-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 ××종합건축사사무소로
- 단독건축사사무소에서 → ××단독건축사사무소로
- 단독건축사사무소에서 → 단독건축사사무소
 - 단독건축사사무소에서 → (1개 사무소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1개 사무소는 폐업신고)
-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 종합건축사사무소
 -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 (1개사무소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1개 사무소는 폐업신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987. 4. 1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개정령
-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 시설 및 설비기준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물투기금지지역)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의 구역을 말한다.

1. 해안 및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부터 1만미터이내의 해역
2. 수산물의 생산 또는 보존을 위하여 환경청장이 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3. 도로변, 철도변 또는 관광지로서 환경청장이 건설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5. 농업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청장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제3조(쓰레기를 스스로 처리 하여야 하는 자)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안에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는 자는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의 보관·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오수정화시설 설치 지역등)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단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역과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청소지역을 말한다. 다만,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으로서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 합류식관거가 설치된 지역과 환경청장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를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이라 함은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건축면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2동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1천6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1일 거주·체류인원이 50인 이하인 차고·창고 기타 환경청장이 정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은 이를 제외한다.

제5조(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할 건물등)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할 건물 기타 시설물은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공원·광장 기타 공중의 집합소 또는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으로서 합류식관거가 설치된 지역의 건물 기타 시설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과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으로서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그 하수가 합류식관거로 유입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건물 기타 시설물과 환경청장이 분뇨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

제6조(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할 축산시설의 범위)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축산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내부청소의 대집행 대상시설)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내부청소에 관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2.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정화조

제8조(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에 관한 협의) 환경청장이 법 제26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

1. 1 일 처리용량이 100킬로리터이상이
분뇨처리시설
2. 처리용량이 250세제곱미터이상이
분뇨정화조
3. 처리용량이 250세제곱미터이상이
오수정화시설
4. 면적이 5 만제곱미터 이상인
쓰레기매립시설 또는 1 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인 소각·재생분류·퇴비화
등의 방법에 의한 쓰레기처리시설
5.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1 일 처리능력 5톤이상인 소각·분해·
중화방법에 의한 처리시설 또는 1 일
처리능력 1톤이상인 시멘트고형화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

제10조(기술관리인의 자격등) 법
제2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 및 오수정화시설의
경우는 토목기사, 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2. 분뇨정화조의 경우는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이공계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쓰레기처리시설 및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기계기사,
토목기사, 화공기사 또는 환경기사

제11조(기술관리대행계약) ① 법 제2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를 위하여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술관리 능력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의 경우는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
2. 분뇨정화조의 경우는 분뇨정화조의

- 제조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
3. 쓰레기처리시설의 경우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
4. 오수정화시설의 경우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
5.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
6. 환경청장이 제 1 호 내지 제 5 호
각호의 해당자에 준한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 횟수 또는 방법

제12조(폐기물처리 관련 교육대상자)
법 제2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1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그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기술요원”이라
한다)
2. 법 제2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사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2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산업폐기물처리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23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5. 법 제2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그 기술요원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4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처리시설중 면적이 5 만제곱미터
미만인 쓰레기매립시설의 설치승인 및
중요사항의 변경승인
2. 법 제17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가 법 제19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법
제2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② 법 제4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명령
 2. 법 제17조 제 1 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
 3. 법 제1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4. 법 제17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중요사항의 변경등록
 5. 법 제17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법 제19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6. 법 제17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가 법
제19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법 제2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7.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등에 관한
법 제24조의 권한
 8. 법 제26조 제 2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법
제23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승인, 개선명령, 시설사용정지명령
 9.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10.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1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14조(과태료의 부과등)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환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오물청소법시행령의 폐지) 오물청소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 (오물청소법시행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오물청소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폐지되는 오물청소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 (오수정화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오물청소법시행령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중인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이 영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 시설에 갈음하여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함 건물 기타 시설물은 이 영 제 5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수정화시설이나 분뇨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대상 축산시설 (제 6 조 관련)

시설의 종류	규 모
폐지사육시설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400제곱미터미만, 다만,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250제곱미터이상

	700제곱미터미만
소 사육 시설	면적 700제곱미터이상 1,200제곱미터미만, 다만,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350제곱미터이상 600제곱미터미만
말 사육 시설 (경마장에 부속된 말사육시설을 포함한다)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200제곱미터미만, 다만,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600제곱미터미만
닭 · 오리 사육 시설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다만,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주: 동일사업장(동일한 폐수정화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사업장을 말한다)내에서 2개이상의 축산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대상으로 한다.

$$\frac{\text{제 1 축산시설의면적}}{\text{해당축산시설기준면적}} + \frac{\text{제 2 축산시설의면적}}{\text{해당축산시설기준면적}} + \dots \geq 1$$

◇ 廢棄物管理法施行令 制定理由
廢棄物管理法이 制定(1986. 12. 31法律 第390號)되어 1987. 4. 1부터 施行됨에 따라 同法에서 委任된 사항과 그 施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汚水淨化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의 規模를 建築延面積 1,6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상地域을 特別清掃地域과 共同住宅을 建設하는 地域으로 하되, 下水處理場의 處理區域중 雨水汚水分流式 下水道가 設置된 地域은 汚水淨化施設의 設置를 免除하고 合流式管渠가 設置된 地域은 糞尿淨化槽를 設置하도록 함(令 第 4 條 및 第 5 條).

나. 畜産施設로부터 발생하는 水質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畜産施設중 일정한 企業性 規模의 돼지 사육시설, 소 사육시설, 말 사육시설등에 대하여 畜産廢水淨化施設을 設置하도록 함(令 第 6 條 및 別表 1).

다. 母法에서 일정한 規模이상의

汚水淨化施設 및 糞尿淨化槽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가 内部清掃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市·郡에서 그 化執行을 하고 費用을 徵收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代執行을 할 수 있는 汚水淨化施設 및 糞尿淨化槽의 規模를 處理用量 10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함(令 第 7 條).

라. 廢棄物處理施設을 효율적으로 유지·管理하기 위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技術業務를 담당할 技術管理人을 두어야 할 대상 施設을 그 處理用量이 250세제곱미터이상인 糞尿淨化槽 및 汚水淨化施設등으로 하고, 技術管理人의 資格을 정함(令 第 9 條 및 第 11 條).

◎ 건설부령제418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1987. 3. 30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종교시설

제5조제 1 항중 제 2 호·제 5 호 및 제 6 호를 삭제한다.

제 5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 (주거용시설의 범위) 영 제 7 조 제 4 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6조중 “토지이용계획 및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영 제 7 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으로 한다.

제7조중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3조의 2 제 5 항제 5 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 자가소유하던 토지의면적	주택건설사업 자가소유하던× 토지의면적
---------------------------	----------------------------

당해사업지구의공공시설
설용지면적

당해사업지구총면적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택지조성원가산정표

[별표]

구분	조성원가구성비목	내역
직접비	용지비 및 그 부대경비	용지매입비·조사비 및 등기비
	조성비 및 그 부대경비	용지조성비 및 설계비
	직접경비	당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후생복지비
	이주대책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
간접비	일반관리비	사업시행자의 관리비(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기타 일반관리비에 소유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경비로 산정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times \frac{\text{당해사업시행지구의총사업비}}{\text{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판매비	광고선전비 기타 판매에 소요된 비용
	간접비용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의 상계액 $\times \frac{\text{당해사업시행지구의총사업비}}{\text{사업시행자의총사업비}}$

주: 간접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영업외수익이 영업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을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제하고, 영업외 수익이 영업외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단독주택건설용지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의 연면적중 주거용시설로
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하고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가격산정 기준을 조정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에
종교시설의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범위에

종교시설을 포함시키도록 함(영
제2조제5호).

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을
주거용시설로 하도록 함(영 제5조의2)
다. 종전에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를 협의매수하여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종전 토지의
40퍼센트까지를 수익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종전의
토지면적중 당해 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토지까지를 수익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2항).
라. 모법에서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택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택지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투자된 용지매입비·조성비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
시켰던 것을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함

◎보건사회부령 제797호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

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1987. 3. 18

1. 숙박업

가. 호텔업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객실	(1) 객실은 30실이상이어야 한다. (2) 객실은 양식 또는 한식으로 하고, 다음의 구조와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가) 1객실의 바닥면적은 양식의 경우에는 9제곱미터이상 한식의 경우에는 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침구는 객실이 양식인 경우에는 양식침구 이어야 한다. (다) 각 실마다 수세식 변기 및 냉·온수도전을 설치한 적당한 면적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객실의 출입구 및 창은 충분한 자물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배 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 옷장 및 옷걸이를 갖추어야 한다. (세) 당해 시설에 상응하는 냉·난방시설을 하여야 한다. (애) 객실이 양식인 경우에는 의자와 탁자를, 한식인 경우에는 방석을 갖추어야 한다. (재) 객실 및 객실과 객실 및 복도는 벽으로 차단하고,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기타시설	(1) 적당한 면적의 현관과 로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설비를 갖춘 조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조리에 적당한 면적이어야 한다. (나) 벽 또는 판자등에 의하여 다른 실과 구획되어야 한다. (다) 출입구와 외부와 접하는 창등에는 방충 설비를 하여야 한다. (라) 배수구를 설치하고 외부에 오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매연·증기 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다음의 설비를 갖춘 식당을 설치하여야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한다. (가) 접객에 불편이 없는 적당한 면적이어야 한다. (나) 벽 또는 판자등에 의하여 다른 실과 구획되어야 한다. (다) 적당한 수의 식탁과 의자 또는 방석을 갖추어야 한다. (라) 외부와 접하는 창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4) 환기·채광·조명·방습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5)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당한 면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도미니엄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객 실	(1) 동일 단지안에 50실이상이어야 한다. (중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2) 세대당 전용면적이 25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객실의 바닥은 아스타일·모노름 등으로 하여야 한다. (4) 욕조·세면대 및 샤워시설과 냉·온수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급수설비를 설치하고, 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인 욕실이 있어야 한다. (5) 가스렌지·싱크대 및 냉장고와 5인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취사용구를 비치하고, 냉·온수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급수설비와 환기 시설을 갖춘 조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의 자물쇠는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잠글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8) 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9) 화장대·옷장·이불장·텔레비전·의자 등 필요한 기구 및 침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0) 당해 시설에 상응하는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 조건상 냉방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시설	(1) 1,653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현관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3) 6층이상의 건물에는 수용인원이 상응하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다음 시설을 가동시킬 수 있는 용량 이상의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승강기 1대이상(승강기가 설치된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콘도미니엄업에 한한다) (나) 객실·복도의 비상 등 및 비상유도등 (다) 조리장의 냉장고 (라) 폐수 및 급수처리시설

다. 여관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객 실	(1) 객실은 10실(읍·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7실) 이상이어야 한다. (2) 객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가) 침구류의 보관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옷장 및 옷걸이를 갖추어야 한다. (다) 객실의 출입구 및 창은 충분한 자물쇠 장치를 하여야 한다. (라) 숙박자를 위한 충분한 침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접객을 위한 적당한 탁자 및 의자 또는 방석을 갖추어야 한다. (바) 당해 시설에 상응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난방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중앙집중관리식 난방시설 2) 개별온수보일러식 난방시설의 경우 아궁이는 객실 출입문으로부터 1미터이상 떨어져 있어 연탄가스 등이 객실에 새어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탄에 의한 난방시설의 경우 객실내에 연탄연소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시설	(1) 적당한 면적의 현관과 접객대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숙박자를 위한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조리장은 가. 호텔업의 기타시설(2)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숙박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다음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각 객실에 욕실 및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남녀별로 구분된 공동욕실 또는 샤워시설 (나) 각층에 남녀별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 다만,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의 건물과 분리된 곳에 남녀별로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되, 외부와 접하는 창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각층에 세면시설 (4) 환기·채광·조명·방습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여인숙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객 실	(1) 객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객실을 객실로 구획할 경우에는 1객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2층 침대를 두는 경우에는 상단과 하단의 간격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숙박자를 위한 충분한 침구를 갖추어야 한다. (5) 옷장 또는 옷걸이를 갖추어야 한다. (6) 객실의 출입구 및 창은 충분한 자물쇠 장치를 하여야 한다. (7) 당해시설에 상응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난방시설을 하여야 한다. 가) 중앙집중관리식 난방시설 나) 개별온수보일러식 난방시설의 경우 아궁이는 객실출입문으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연탄가스 등이 객실에 새어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연탄에 의한 난방시설의 경우 객실내에 연탄연소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시설	(1) 출입구에는 숙박자의 신발장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숙박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다음시설을 하여야 한다. 가) 욕실 또는 샤워시설(인근에 공공목욕장이 있어 숙박객의 목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남녀별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 다만,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의 건물과 분리된 곳에 남녀 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외부와 접하는 창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세면시설 (3) 숙박자를 위한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조리장은 가, 호텔업 기타시설 (2)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4) 환기·채광·조명·방습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목욕장업

가. 일반목욕장업중 공동탕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구 조	(1) 현판 탈의실의 출입구.탈의실 및 욕실은 각각 남녀별로 구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탈의실 및 욕실은 목욕장 밖으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욕 실	(1) 바닥면적은 26제곱미터(읍·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되, 그 표면은 도자가·돌·인조석 또는 물발로 마무리하여야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한다. (3) 바닥면적의 20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구조상 이 기준에 의한 설비가 곤란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설비에 의할 수 있다. (4) 벽과 천정은 열기 및 습기에 대하여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나무·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재료로 된 적정수량의 물통 및 깔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6) 오수의 배출구를 설치하여 욕실안에서 사용한 물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하고, 오수조는 욕외에 설치하되, 오수조 내에 내수성 자재를 사용한 악취의 발생, 오수의 침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하여야 한다. (7) 수세식 소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바닥면적 5제곱미터당 냉·온수도전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9) 냉·온수를 쓸 수 있는 샤워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0) 발한실을 설치할 경우 그 바닥면적은 욕실바닥 면적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고, 출입문은 높이 1.6미터 이상 폭 0.6미터 이상으로 하되, 실내가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욕 조	(1) 바닥면적은 3.3제곱미터(읍·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깊이는 6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내부는 콘크리트로 하되, 타일 등 내수성 자재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4) 취하부의 적당한 곳에 욕조내의 물을 완전히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5) 상단의 적당한 곳에 냉·온수도전을 설치하여 입욕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탈 의 실	(1) 바닥면적은 18제곱미터(읍·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바닥은 나무·리놀륨 등 내수성 자재를 사용하고 양탄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입욕자의 의류 및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부착한 적당한 수의 옷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적의 20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구조상 이 기준에 의한 설비가 곤란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설비에 의할 수 있다. (5) 탈의실 안에 입욕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하여 입욕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가. 공동탕업의 욕실의 시설 및 설비기준 (2) 내지 (7)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탈의실· 휴식실및 안 마 실	(1) 탈의실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휴식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하는 탈의실 또는 안마실과 별개의 시설로서 하여야 하며, 그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이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밀실로 구획되어서는 아니된다. (3) 안마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하는 탈의실 또는 휴식실과 별개의 시설로서 하여야 하며, 그 바닥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이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밀실로 구획되어서는 아니된다. (4) 바닥은 나무·리노름 등 내수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입욕자의 휴식에 필요한 가운·짧은 속바지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가. 공동탕업의 탈의실의 시설 및 설비 기준 (3) 내지 (7)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화장실· 현관 및 기타 부 대시설등	화장실·현관 및 기타 부대시설은 가. 공동탕업의 동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마. 특수목욕탕업중 터키탕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구 조	(1) 관광사업법에 의한 숙박업소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개실로 구획되어야 한다. (2) 바닥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욕 실	(1) 욕조·온장·세면기 및 냉·온수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 공동탕업의 욕실의 시설 및 설비기준 (2) 내지 (6)과 나. 가족탕업의 욕조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입욕자의 발열을 촉진하는 한증함을 설치 하되, 그 내부는 입욕자가 증기배출구와 직접 접하지 아니하는 구조로하여야 한다. (4) 공동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라. 사우나탕업의 욕실의 시설 설비기준(4)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5) 욕실의 출입문은 높이 1.8미터이상 폭 0.7미터이상으로 하고, 높이 1.2미터로 부터의 상부에는 0.3제곱미터 이상의 투명 유리를 끼워야 한다.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6) 입욕자가 휴식할 수 있는 적당한 휴식 시설을 하여야 한다. (7) 2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화 장 실	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각층에 남녀별로 구분 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와 접하는 창문, 또는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실등	(1) 대기실은 적당한 면적을 보유하고 입욕자가 대기하는데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외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신발장은 현관 기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 타 부대시설	기관실·보일러실·연료저장장 및 재·연소 진처리장은 가. 공동탕업의 동시설의 시설 설비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수영장업

가. 일반수영장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수 영 조	(1)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물의 깊이는 0.9미터 내지 2.7미터로하고, 수영조의 벽측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 또는 경기용 수영장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바닥과 벽면은 내수성 자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하고, 바닥은 15분의 1 내지 20분의 1의 경사로 하여 미끄러지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의 깊이가 1.7 미터이상인 곳은 더 급한 경사로 할 수 있으나 함정을 이루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최하부의 적당한 곳에 수영조의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되, 배수구에는 일정한 크기의 고정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철망장치를 하여야 한다. (6) 수면에 뜨는 찌꺼기의 제거 및 일정한 수면유지를 위하여 수영조의 벽면에 배수가 될 수 있는 물넘기기 장치를 4.5미터 간격 으로 설치하고, 이 장치를 넘어 배수되는 물은 순환용 펌프로 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 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주변의 통로의 폭은 1.2미터이상(핸드 레일을 설치한 경우에는 1.2미터만으로 할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욕자의 탈의 및 착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입욕자를 위한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입욕자를 위한 음용수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화 장 실	(1) 바닥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탈의실과 연결되도록 하되,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거나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 관	(1) 바닥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입욕자의 신발을 넣어 보관할 수 있는 적당한 수의 신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 타 부대시설	(1) 기관실·보일러실 및 연료저장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재·연소진 처리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면적과 재동이 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폐수열 회수장치 등 적절한 에너지절약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욕조수를 순환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 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일반목욕장업증 가족탕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구 조	가족탕은 개실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욕실과 탈의실을 구분하고, 외부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욕 실	(1) 냉·온수도전, 샤워시설 및 세면기를 설치하고, 물통 및 갈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가. 공동탕업의 욕실의 시설 및 설비기준 (2) 내지 (6)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욕 조	내수성 재재를 사용하고, 그 상단에는 입욕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냉·온수도전을 설치하며, 최하부의 적당한 곳에 욕조안의 물을 완전히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탈 의 실	가. 공동탕업의 탈의실의 시설 및 설비기준 (1) 내지 (4)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화 장 실	수세식으로 하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거나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일반목욕장업증 한증막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구 조	가. 공동탕업의 구조의 시설 및 설비기준 (1) (남탕·여탕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및 (2)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한 증 막	(1) 바닥면적은 16제곱미터(음·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한증막은 내화벽돌 또는 기타 내화성 재료로 반원추형으로 축조하되, 두께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한증막의 출입문은 높이 1미터 폭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내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2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욕 실	(1) 바닥면적은 26제곱미터(음·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온수욕조 및 냉수욕조는 각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냉·온수도전을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냉·온수를 쓸 수 있는 샤워시설을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가. 공동탕업의 욕실의 시설 및 설비 기준(2) 내지 (6)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탈의실및 휴 식 실	(1) 바닥면적은 26제곱미터(음·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수세식 화장실을 시설하여야 한다. (3) 가. 공동탕업의 탈의실의 시설 및 설비 기준 (2) 내지 (7)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충분한 수의 포대를 비치하여야 하며, 포대는 자연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기 타 부대시설	가. 공동탕업의 기타 부대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1) 및 (2)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라. 특수목욕장업증 사우나탕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구 조	가. 공동탕업의 구조의 시설 및 설비기준 (1) (남탕·여탕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2)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되, 공중 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호텔(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은 제외한다) 여관 및 여인숙이 있는 건물내에는 개설할 수 없다.
욕 실	(1)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냉·온수도전 6개 이상, 냉·온수를 쓸 수 있는 샤워시설 6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한실은 욕실 바닥면적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은 높이 1.8미터 이상 폭 0.7미터 이상으로 하되, 실내가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3.3제곱미터 이상의 온수욕조 및 냉수욕조를 설치하고, 욕조상단 적당한 곳에 냉·온수도전(냉수욕조에는 냉수도전)을 설치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수 있다)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강구하여 오수등이 수영조로 침수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도약대가 있는 수영장에 있어서는 도약대의 돌출부의 최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범위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도약대는 주름잡이·고무판 등을 덮어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실내 수영장에 도약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천정과 도약대 사이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탈의실·세정장및화장실	(1) 수영자가 수영조에 들어가기 전에 탈의실·화장실·세정장을 거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탈의실 및 세정장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외부로 부터 보이지 않도록 하고, 그 바닥면적의 20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구조상 이 기준에 의한 설비가 곤란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설비에 의할 수 있다. (3) 탈의실에는 수영자의 의류 및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부착한 적당한 수의 옷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세정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냉·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과 수도꼭지를 각각 수영자 50인당 1개 이상 설치하고 충분한 불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절기에만 개장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온수 샤워시설 및 수도꼭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별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되, 남자용 소변기는 수영자 60인당 1개 이상, 대변기는 소변기 5개당 1개 이상으로 하고, 여자용 변기는 수영자 40인당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화장실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충분한 환기시설과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실내수영장 또는 야간수영을 하는 수영장의 수면 기타 주요장소에는 100룩스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기 타 부대시설	(1) 수영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구명대 등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고 감시탑을 설치하여 수상안전요원 3인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응급환자의 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구조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특수수영장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수 영 조	(1) 헬스크럽(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과 연계하여 운영되거나, 호텔 투숙객을 위하여 운영되는 특수수영장의 수영조의 면적은 16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수영조의 깊이는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적절한 깊이로 하여야 한다. (3) (1) 및 (2)외에는 일반수영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 (3) 내지 (11)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탈의실·세정장및화장실	가. 일반수영장업의 탈의실·세정장 및 화장실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되는 헬스클럽업업을 위하여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 타 부대시설	(1) 수영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구명대 등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고, 수상안전요원 1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응급환자의 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구조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구 조	(1) 업소의 바닥은 콘크리트·타일·리노름등 내수성 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업소의 바닥면적은 10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작 업 실	(1) 이용용의자의 수는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2대 이내로 하고,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적 4제곱미터 마다 1대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세면 또는 세발시설은 도자기·타일 등 내수성 재로 하고, 물의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충분한 창을 설치하여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창 설치에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계설비에 의하여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10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증기소독기 및 끓이는 소독기와 이용 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6) 이용을 위한 충분한 수의 기구 및 수건을 갖추어야 한다. (7) 응접장소 및 작업장소 또는 의자 및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와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장애물을 따로 보관하는 등 이를 설치하기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위한 각종 준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이용소의 작업장소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화 장 실	화장실(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수세식 화장실)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미용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구 조	(1) 업소의 바닥은 콘크리트·타일·리노륨등 내수성 자재로 하여야 한다. (2) 업소의 바닥면적은 10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작 업 식	(1) 미용용 의자의 수는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2대이내로 하고,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면적 4제곱미터마다 1대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용소의 피부 미용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세면 또는 세발시설은 도자기·타일 등 내수성 자재로 하고, 물의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충분한 창을 설치하여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창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계설비에 의하여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10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증기소독기 및 끓이는 소독기와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6) 미용을 위한 충분한 수의 기구 및 수건을 갖추어야 한다. (7) 용접장소 및 작업장소 또는 의자 및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와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장애물을 따로 보관하는 등 이를 설치하기 위한 각종 준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미용소의 작업장소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화 장 실	화장실(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유기장업

가. 공통 기준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실내 유기장	(1)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고, 내부의 벽은 흰색·초록색 또는 노란색 등 밝은색 계통의 하나의 색채로 하여야 한다. (2) 바닥은 콘크리트·타일 등 내수성 자재로 시설하여야 한다. (3) 유기기구는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충분한 창을 설치하여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충분하지 아니한 유기장에는 기계에 의한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5) 100룩스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전자유기장을 제외한다) (6) 1개소이상의 세면시설 및 화장실(상·하수도 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내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업소 안에 휴지통 및 청소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실 외 유기장	(1) 바닥은 유기방법에 따라 안전하고 물이 잘 빠지며,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시설하여야 한다. (2) 유기기구는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1개소 이상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유기장으로부터 100미터안에 손쉽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개별기준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당구장업	유기기구 1대당 16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자유기장업	성인용 전자유기장업 (1) 바닥면적은 4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고 4분의 1 이상을 휴식장소·통로 및 환전장소로 활용하여야 하며, 휴식장소에는 5인용 안락의자 1조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 받은 전자비디오 오락기구(알·오·엠기억소자만 장치되어 있어 새로운 입력을 할 수 없고, 기억된 게임만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박성 또는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사행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계식 유기기구 또는 체련용유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전자비디오 오락기구가 전체유기기구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유기기구의 화면에 이용자의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자외선 차단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4) 60룩스 이상이 되도록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5) 유기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음향이 영업장 밖에서 들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유기기구의 프로그램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영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박성 또는 사행성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청소년 용전자 유기장 업	(1) 바닥면적은 2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4분의 1 이상을 휴식장소·통로 및 환전장소로 활용하여야 하며 휴식 장소에는 5인용 안락의자 1 조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을 받은 전자비디오 오락기구(알·오·엠기역소자만 장치되어 있어 새로운 입력을 할 수 없고, 기억된 게임만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기종(알·오·엠기역소자와 알·에이·엠기역소자가 장치되어 있어 새로운 입력·연산·기억·출력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체련용 유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전자비디오 오락기구와 체련용 유기기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개인용 컴퓨터 기종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성인용 전자유기장의 (3) 내지 (6)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종합유원시설업	(1) 대지면적은 1 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유기기구는 주행식, 고정식, 스포츠 관람형 유기기구를 각각 2 종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음수대·식당·매점·휴식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방충시설·조명시설·발전시설, 상·하수도, 의무실, 미아보호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유기장업	(1) 바닥면적은 유기에 적당한 면적이어야 한다. (2)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기구를

	1 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7. 위생관리 용역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사무실	사무실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장 비	• 10인치 이상의 건축물 바닥타기(바닥판타기)를 5 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5 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충분한 수의 안전벨트·안전모·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운반차량을 1 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실내의 분진·탄산가스·일산화탄소·온도 및 상대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각 1 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창 고	장비(운반차량을 제외한다) 및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16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시설을 하여야 한다.

8. 세탁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구 조	(1) 업소의 바닥은 콘크리트·타일·리노름 등의 내수성 자재로 시설하여야 한다. (2) 업소의 바닥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끝손질 작업만을 하는 업소와 읍·면 지역의 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류탱크가 분리되어 있는 세탁기의 유류 탱크의 설치장소는 화재 발생시에 세탁물에 불이 옮겨붙지 아니하도록 내화성 자재를 사용한 벽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작 업 실	(1) 작업실 내의 적당한 곳에 세탁기 또는 다리미대 등 당해 영업에 필요한 세탁용 기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에는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약품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 약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화기를 1 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4) 처리되지 아니한 일반 세탁물과 병원 등에서 발진 질병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세탁물은 이를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분리된 덮개가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9. 위생처리업

구 분	시 설 기 준
작업장 및 창고	(1) 작업장은 청결하고 독립된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2) 작업장 및 창고는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구조로서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3) 작업실은 적당한 내수성 자재로 벽을 설비하여야 하며 주기와 독립되어야 한다. (4) 작업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하고, 충분한 배수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각 작업장 및 창고의 천정은 내수성 자재로 하고 창문 등에 적절한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6) 작업장에는 종업원 전용의 위생적인 손 씻는 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종업원수에 따른 상당한 수의 강의실 또는 옷장을 설비하여야 한다. (7) 작업장에는 세척시설·살균시설·건조시설·포장시설 등이 있어야 하며, 각각 독립된 시설이어야 한다. (8) 작업장중 살균시설·건조시설 등에는 살균소독에 필요한 기계류 및 살균 등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급수는 수도물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화 장 실	(1)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고, 변기뚜껑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화장실의 바닥·벽·천정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시설하여야 하고, 창문에는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기타 위 생 시설	폐기물 용기는 목재외의 내수성 자재로 된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서 뚜껑이 있어야 한다.

위생접객업소의 등급기준(제 3 조제 1 항 관련)

1. 숙박업

업 종	등 급	등 급 기 준	
		시 설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채점기준에 의한 채점점수

호텔업	감등급	객실 40실이상 자동환기시설	160점이상
	울등급	객실 30실이상 40실미만	140점이상 160점미만
여관업	감등급	객실 20실이상 • 욕실 및 수세식 변소가 부설된 객실수가 전체객실 수의 3분의1이상 • 중앙집중관리식 난방시설 • 적절한 주차시설	160점이상
	울등급	객실 20실미만	140점미만 160점미만

2. 공중목욕장업

업 종	등 급	등 급 기 준	
		시 설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채점기준에 의한 채점점수
공동탕	감등급	욕실면적 45제곱미터 이상 발한실 4.5제곱미터 이상 냉수욕조 1개이상 고온수욕조 1개 이상	160점이상
	울등급	욕실면적 45제곱미터 미만	140점이상 160점미만

3. 수영장업

업 종	등 급	등 급 기 준	
		시 설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채점기준에 의한 채점점수
일반수영장	감등급	수영조 3개이상 수영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160점이상
	울등급	수영조 3개미만 수영조면적 330제곱미터미만	140점이상 160점미만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동방포루마 269-1718
276-0123-4



나의 다짐

공지영

“아휴 악올라 저 조그마한 계집애 좀 봐. 하다가 짝 어퍼져라”
뒤에선 중·고등학생인 듯한 언니들이 입을 삐죽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나도 따라서,
“중국아 져라. 한국아 이겨라!”
하면서 박수를 쳐 댔다.
이렇게 열기있는 분위기에서 내가 이 선수들과 함께 게임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이 뒹뒹하게 한국인인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 이 경기는 지난해 9월22일 월요일에 한 체조 경기였다. 나는 그때 대한국민학교 6학년이었고 어머니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으며 경기를 시작하기 전의 쾌활한 음악에 맞추어 박수를 치는 이 간단한 일에서 부터 난 마음속 깊이 느끼는 바가 컸다.
“화이팅,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열띤 응원을 하느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나의 안타까운 심정을 모르는 난 중국의 어느 조그마한 선수가 신들린 아이처럼 그렇게 잘할수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격려보다 경멸을 던져주고 싶었다.
나는 나의 가슴을 퍽퍽치며 우리나라 선수의 차례가 기다려 졌다.
“다음은 한국, 한국선수의 2단 평행봉이 있겠습니다.”
안내자의 말에 이어 준비하던 선수가 나왔다. 흰 바탕에 태극기가 옆구리에 그려져 있는 유니폼은 우리나라를 빛낼것이라는 자신감을 주었다.
드디어 경기를 시작했다. 난 우리 선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혹시 실수라도 하지나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정신없이 아우성을 쳤다.
‘아이 참, 옴치 옴치 잘한다’
“와! 와! 와!”
마치 8·15해방때 일제의 압박속에서 벗어난 것 처럼 벅찬 가슴에 우러러 나오는 박수갈채와 외침이 이 날 우리 선수에게 잘 했다는 격려의 함성으로 높은 가을 하늘을 찔렀다.
나는 참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몇일 전 아빠께서 다가오는

‘88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고쳐야 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자는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그때 체조 경기에서 남의+나라 선수라 해서 한없이 미워하고 비난 한것을 뉘우치고 손님에 대접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전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 손님에 대한 예의바른 행동인 것 같다. 그날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도 “우리 나라가 참 많이 발전했구나.” 하시며 두 눈과 입가에 미소를 띄우셨다.
제 10회 아시안 게임!
이는 실로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누구하나라도 잊혀지지 않는 자랑스런 역사의 한 페이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빛나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이 서울 아시안 게임 이야말로 순수한 우리나라의 실력으로 잘 마무리 한 국제적인 큰 행사이었으며 이러한 수준 높은 경기를 치루기 까지는 내가 꿈에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큰 자신감을 우리국민에게 안겨다 주었고 무엇보다도 더욱 큰 기쁨은 이 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1년 반후 개최될 세계 올림픽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게 된 점이다.
세계에 앞서가는 한국의 발전상을 전 인류에 알리는 이 때에 우리 국민도 각자의 의식구조를 바꾸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겠다.
나는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또한 배우는 학생으로서 어떤 중요한 책임을 졌는지 분명히 알고 세계속의 Korea를 위해 조그마한 일이라도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
이제 88올림픽까지 남은 짧은 기간동안 우리 한국의 참 모습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인류의 평화와 친선을 도모하는 온화한 제전이 되도록 함께 힘써야 겠으며 나도 새 시대에 앞서 가는 새 사람이 되어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는 필요한 일을 찾아 해야 겠다고 작은 두 손을 굳게 쥐어 본다.

공지영

전선여자 중학교 1학년



金 閔植
1937. 10. 18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신세대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683-130
795-2497



金永植
1954. 12. 20
한림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김영식건축사사무소
제주시 이도일동179-1
52-8444



金光成
1952. 4. 16
인천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일진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450-25
587-5081



李至鎬
1954. 12. 15
안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전우건축사사무소
안양시 안양6 동505-2
44-4551



鄭基澤
1952. 6. 26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동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642-5
553-4185



申東出
1952. 7. 9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신동건축사사무소
대구시 남구 대명동809-3
625-9959



具本渇
1953. 7. 12
홍익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정원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372-2
322-3353



都宗托
1952. 7. 26
대구공업고등학교 건축과
대진건축사사무소
대구시 서구 평리동1217-32
558-2003



黃寅秀
1953. 9. 17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상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113-21
540-3421



李鍾信
1952. 8. 22
대림공업전문대학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다림건축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92-7
540-0748



李桓一
1953. 12. 19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미주
인천시 남구 주안동1043-1
434-0891



高奉奎
1952. 9. 22
한림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삼성건축사사무소
제주시 이도아동1781-1
23-3636



金東燮
1953. 12. 23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현건축사사무소
충북 음성읍 음성읍 읍내리489-3
2-3323



金榮鎬
1953. 12. 21
동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삼중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80-21
463-3667



申建泳

1947. 3. 24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신영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동구 석촌동290-3
416-7479



魯棟鎮

1956. 1. 30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신일·정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617-3
542-8168



黃林奎

1949. 11. 17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예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80-1
545-9964



權寧郁

1953. 12. 15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인례건축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04-4
549-1104



尹明範

1955. 9. 6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예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80-1
545-9964



金興帥

1958. 1. 6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사사무소 모람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707-2
547-4368



郭 炅

1953. 1. 7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90-7
549-0996



李鴻恩

1949. 10. 21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예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07-4
545-3008



梁東範

1952. 3. 26
조선대병설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양동범건축사사무소
전남 순천시 장천동86-21
53-7711



劉義錫

1951. 1. 2
동외공업고등학교건축과 졸업
건축사사무소 성미·리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부전동 396-8
87-8757



李賢九

1953. 2. 19
인천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인우건축사사무소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동441-36
527-3849



韓福鍾

1952. 8. 7
성지공업고등학교건축과 졸업
서한건축사사무소
부산직할시 동래구 북천동 380-5
553-3721



程海成

1955. 3. 22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튜건축사사무소
광주직할시 동구 금남로3713-5
22-2788



河文鍾

1956. 10. 1
부산공업고등학교건축과 졸업
동방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8-9
44-2449



崔鍾權
1948. 12. 15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제우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중구 중앙동 4가 80-19
44-3469



安明帝
1955. 11. 17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사사무소 당건축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303-11
557-0519



李載卜
1958. 10. 29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
건축사사무소 뿌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6-11
549-0296



吳在漢
1955. 12. 13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주)동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북아현 3동 1-1038
364-4442



河承本
1959. 5. 1
경남공업전문대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도시그림
부산시 중구 동광동 2가 4번지
23-1413



崔興燮
1956. 10. 15
국민대학교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나나건축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39
477-9550



宋寅昌
1955. 12. 25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수북건축사사무소
충북 청주시 북문로 3가 87-4
2-0894



金明浦
1957. 9. 14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주)동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 3동 1-1038
364-4443



金榮民
1955. 12. 25
인천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삼일건축사사무소
인천시 남구 주안 1동 216-12
867-0373



金鍾寬
1947. 10. 10
경북공업전문대학
중앙건축사사무소
경북 포항시 죽도동 611-7
744-7722



李相穆
1955. 2. 15
대전개방대학 건축공학과
협창건축사사무소
대전시 중구 대흥동 479-1
526-1900



李南相
1954. 9. 8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우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안산4동 376-5-14
80-6610



崔龍達
1951. 11. 5
포항실업전문대학 토목과
건축사사무소 문화
경북 포항시 죽도동 66-5
42-7887



威德鎬
1955. 4. 13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연건축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355-21
552-7006

협회소식

3월27일(금) 오전 10시부터 본협회 대강당에서 재적대의원 2백75명중 2백33명이 참석한 가운데 1987년도 제1회 臨時總會가 개최되었다.

오전 10시20분 任仁琳 사무처장의 사회로 開會되어 安箕泰 회장의 成員報告에 이어 국민의례, 건축사 현장 낭독 및 정화결의문 채택이 있었으며 會長 開會辭와 推戴會員 추대가 있었다.

특히 安箕泰 회장은 開會辭를 통해 建築士 業務內容의 質을 높이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建築士界에 危害로운 潜在的 要素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88년 1월부터 실시할 獨立豫算體制와 관련 權利賦與에 상응하는 責任과 義務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淨化에 앞장 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어 제2회 定期總會 會議錄을 유인물로 대체하여 승인하고 주요 업무보고와 감사보고를 하였다. 監査報告는 柳根洙 감사의 行政監査와 鄭孝煥 감사의 經理監査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질의·답변을 통해

協會全般의 監査結果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附議案件 審議에 들어가서는 먼저 安箕泰 회장이 議案의 순서 및 內容에 대한 異議 여부를 물었으며 이의없자 원안대로 일괄 상정한 후 제1호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제1호의안 86會計年度 收支決算 審議의 件은 사무처장의 제안 설명이 있는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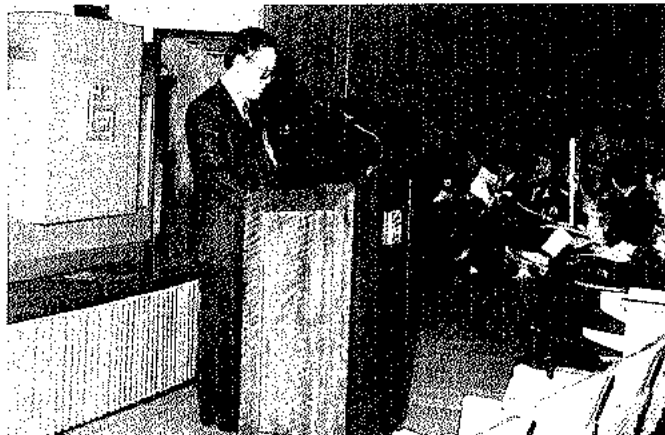
이때가 11시58분 — 安箕泰 회장은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였다.

오후 1시10분, 安箕泰 회장의

1987년도 제1회 臨時總會 개최



臨時總會에서 開會辭를 하는 安箕泰 會長



行政監査結果를 보고하는 柳根洙 監事



經理監査結果를 보고하는 鄭孝煥 監事

續開宣布에 따라 오후 회의가 시작되었다.

제2호의안 建築士年金規定

改正案 審議의 件은 제안설명에 이어 심의방법을 逐條審議 하기로 하여 다수 대의원이 질문과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다만 본 안건은 建築士의 福祉와 관계되는 만큼 계속적인 연구와 보완작업을 할 것이 청언되었다.

제3호의안 建築士年金特別會計 收支豫算案 審議의 件은 제안 설명 뒤 朴性郁 대의원(경상남도 지부·무강건축사사무소)의 동의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제4호의안 定款改正案 審議의 件은 제안설명에 있는 다음 逐條審議하기로 하여 사무처장이 逐條 낭독을 하였으며 다수 대의원이 逐條質問을 한 다음 의결을 거쳐 원안에 대해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는 조건하에 승인되었다. p.92參照.

제5호의안 監査規定改正案 審議의 件은 제안설명 뒤 제11조의 本文중에 일부 字句를 삽입하고 이의없이 원안대로 일괄 승인 되었다.

제6호의안 倫理委員會規定案 審議의 件은 제안설명에 이어 이를 일괄 심의하기로 하고 제5조 및 제9조는 公正去來委員會의 正식 통보를 접수 한 후 理事會에서 의결토록 위임을 하여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 되었다.

(이상 關聯內容은 p.92以下參照) 議案處理가 모두 끝나고 其他 事項에 들어갔으며 建築士의 權益保護를 위한 建議事項이 다수 제안되어 代議員들의 이름으로 채택되었다.

建議內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孫在守 대의원(경상북도지부/ 손재수 전.한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시험에서의 공무원 특별 전형을 철폐할 것을 건의
- 공시감리 및 설계분리를 종전 대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
- 정부관리공단의 명칭을 監督公團

으로 구분해 주도록 건의

李錫柱 대의원(경상북도지부/
낙동건축사사무소)

• 건축관계법규의 탄력적 운용과
행정처분 등을 없애줄 것을 건의

오후 5시30분

부의 안전이 모두 끝났으며

安箕泰 회장은 폐회를 선언하였다.

1987년도 제1회 臨時總會의 幕이
내렸다.

祝賀해 주신분 들

본 臨時總會를 축하해 주신

여러분에게 2천6백여 전화원들은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으며

여러분의 健勝을 중심으로

기원하고 있다.

축하화분

한국유리공업(주),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흥은행

(서초동지점)

기념품

한남화학(주), (주)동방포루마

附議案件處理內容

議案	議案內容	處理結果	備考
제1호	'86會計年度收支決算	原案承認	一括通過
제2호	建築士年金規定改正案	一部修正承認	逐條審議
제3호	建築士年金特別會計收支豫算案	原案承認	一括通過
제4호	定款改正案	一部修正承認	逐條審議
제5호	監查規定改正案	原案承認	一部字句 삽입
제6호	倫理委員會規定改正案	原案承認	제5·9條 理事會議決委任

推戴會員

姓名	所屬支部	建築士事務所
吳 雄 錫	서울	신조종합건축사사무소
鄭 萬 善	서울	영등포건축사사무소
慶 錫 九	서울	경석구건축사사무소
柳 順 圭	서울	공익건축사사무소
金 昞 壹	서울	삼산건축사사무소
文 珪 禧	서울	세림건축사사무소
李 準 容	서울	세진건축사사무소
李 文 昨	서울	건축사사무소 한국조형
金 寬 豊	서울	서울삼미건축사사무소
金 重 業	서울	(주)김중업종합건축사사무소
林 相 益	서울	건축사사무소 성림건축
朴 容 儀	경기	개풍건축사사무소
姜 知 遠	경기	강지원건축사사무소
朴 鍾 三	강원	명동건축사사무소
崔 松 心	충북	건축사사무소 정진사
金 淵 煥	충남	김윤환건축사사무소
洪 鍾 夏	충남	남양건축사사무소
崔 鳳 甲	충남	최봉갑건축사사무소
曹 載 鉉	전북	조재현건축사사무소
申 相 禧	전북	대륙건축사사무소
梁 任 洙	경북	세진건축사사무소

제3회 理事會 개최

3월12일 오후 2시부터 安箕泰
회장 主幸하에 본협회 회의실에서
제3회 理事會가 개최되었다.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화 회의록중 수정협의사항

1. 多世帶住宅 設計指針圖를
제작하여 全會員에게 배부키로
협의했던 것을 購入希望會員에
한하여 有價로 배부하는 방안을
市道支部長의 의견을 들어 결정
사항키로 수정협의함.

2. 建築誌(假稱) 弘報冊字를
追更豫算으로 발간키로 했던 것을
調査研究費 및 弘報宣傳費에서
일부 轉用하고 부족액은 會員
에게 有價로 판매한 판매대금과
廣告料로 충당키로 협의함.

부의사항

總會議題

總會附議案件을 다음 순서와 같이
변경하여 상정키로 함.

제1호의안: 86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건축사연금규정개정

(안) 승인의 건

제3호의안: 건축사연금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건
제5호의안: 감사규정개정(안)
승인의 건
제6호의안: 윤리위원회개정(안)
승인의 건

86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지결산
(안)

감사 검토후 내용 변동이 없을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

건축사연금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원안대로 승인

건축사연금규정 개정(안)

원안대로 승인

정관개정

일부 수정후 원안대로 승인

윤리위원회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이상 關聯內容은

p.92 이하 참조) 보수규정 개정

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직

당하는 사무처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상퇴직시의 1/2로

지급하는 것으로 함.

단독주택에종별적용에 관한 협의

차기 이사회에서 협의키로 함.

경향하우징페어 盛了

본협회와 건설부 후원하에

경향신문사가 주최한 '87경향

하우징페어가 3월28일 11시

여의도 소재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전시관에서 개막되어 4월6일까지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協在會 安箕泰 會長은 이날 朴錫柱

국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李圭孝

건설부장관, 廉善鉉 서울특별시장,

李寬永 한국주택은행장, 崔在旭

경향신문사사장 등 관련

인사들과 개막테이프를 끊고

전시장을 둘러 보았다.

安箕泰 회장은

'87경향하우징페어의 일환으로

전시되고 있는 건축사주택설계작품

전시코너에 이르러 大賞을

비롯한 입상작품의 상세한 설명으로

건축사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협회소식

사진으로 보는 '87경향하우징페어



내빈과 함께 테이블을 끊는 안기태 회장



염보현 시장과 최재욱 시장에게 주택설계작품을 설명하는 안기태 회장



전시장을 둘러보는 (좌로부터) 염보현 시장, 안기태 회장, 최재욱 경향신문사장, 이규효 건설부장관



자축연정에 자리한 내빈 일행

支部消息

釜山直轄市支部

지부장 鄭煥鎬

自律淨化推進決意大會

3월30일 부산대포동 4층

부산은행 강당에서 회원 1백36명

(직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會員自律淨化推進決意大會를

개최하였다.

仁川直轄市支部

지부장 高昌永

비독대회개최

2월24일~25일의 이틀간에 걸쳐

지부회의실에서 비독대회를

개최하였다.

바독을 사랑하는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실시한 이 바독대회는

윤태현외 20명의 회원들이 출전,

2일간의 열전 대국을 벌였으며

임상한 受賞者는 다음과

같다.

• 1위: 김창선 회원/하나건축사

사무소

• 2위: 박순중 회원/박순중건축사

사무소

• 3위: 송진호 회원/청송건축사

사무소

거리질서 캠페인

회원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모임인 美建會의 회원 15명이 3월

26일 지부 지원하에 인천시 남구청

입구와 주안 사거리에 나가

거리질서 캠페인을 벌였다.

光州直轄市支部

지부장 朴永憲

懇談會 실시

3월13일 光州建築士會館 4층

회의실에서 支部 회원 27명과

광주시 건축관계 공무원 10명이

出席하여 건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懇談會를 개최하였다.

朴永憲 지부장과 송영환

市建設局長의 인사로 시작된 이

간담회에서는 건축업무 추진에

따른 제반문제점들이 광범위하게

토의되었는데 간담회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인사 박영희 지부장

송영환 건설국장

• 자부익원소개

• 市건축관계공무원 소개

• 자부업무현황 설명

• 자부에로서향 건의

• 건축업무전진화대책추진계획

시당(이준식 건축과장)

• 87년도 광주직할시 주택건설계획

설명(박문규 주택과장)

• 건축업무추진에 따른 제반문제점

토의

作品巡迴展示會 盛了

제12회 建築士設計作品巡迴

展示會 및 제1회 新人·學生設計公募展 光州지역 전시회가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광주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연 1천2백여명의 관람인원을 기록한 이번 전시회는 光州지역 주민들에게 建築士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市民들에게 생활의 質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는 자극제 역할을 함으로써 地域建築文化 발전에도 공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월18일 嘉應 肅興 巡迴展示會에는 김양배 광주직할시장, 박병기 전남대공대학장, 박환규 조선대 학장, 박미정 KBS 광주방송국장, 채규당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부장, 장형배 前전라남도지사, 본협회 김기수 부회장, 조춘원 이사, 류근열 감사, 광주지부 박영희 지부장이 개막 테이프를 끊었으며 현장에서 自祝小宴을 베풀어 전시회 개최를 자축하였다.

특히 지축소연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김양배 광주직할시장은 市 산하 건축관계공무원 전원이 관람토록 축사 중에 당부의 말을 한으로써 본 전시회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표명하였다.

광주직할시 산하 건축관계공무원과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건축관계 공무원을 비롯, 순천공업전문대, 동신전문대, 조대공대 등 건축과 학생의 단체관람은 직접 건축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 공무원과 장차 건축업무에 종사할 후학들이라는 점에서 뜻이 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본 전시회의 성과를 한층 확산 심화하는데 협조하여 준 광주일보사, KBS-TV, MBC-TV, MBC-라디오에 대해서는 특히 2천6백여 건축사가 다 함께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언론매체에서의 협조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광주일보... 3월16일/작품전개최 예고기사 보도

- 3월18일/작품전안내 기사 보도
- KBS-TV... 3월18일/저녁 7시 지방뉴스 시간에 전시회 개막 광경을 방영하면서 작품전 안내보도
- MBC-TV... 3월18일/저녁 6시 지방뉴스 시간에 전시회 개막 광경과 작품전 안내보도
- 3월18일/저녁 7시10분 수요일 9프로에서 작품전 안내보도
- MBC-라디오... 3월18일/저녁 6시20분 문화정보프로에 박영희 지부장이 출연하여 작품전 안내 및 건축사실계작품순회전시회 개최 목적 등을 홍보

- 화분을 보내주신 분 김양배 광주직할시장, 고귀남 국회의원, 이영인 국회의원, 전대 공대건축과, 조대공대건축과, 이수곤 대한건축학회 전남지부장, 박한동 건설협회 전남지부장, 장형근 전라남도 주택과장, 김인모 본협회 전라남도지부장, 최병식 한국열관리사협회 전남지부장, 동일레미콘, 광주레미콘, 김용우 (주)금강, 최상욱 남파도건(주), 건축사신용협동조합, 광주은행 대인동지점, 전대 건축사동문회, 조대 건축사동문회.
- 화환 이재관 전문건설협회 전남지부장, 대호레미콘

忠清南道支部

지부장 강우식

作品巡迴展示會

3월26일부터 3월31일까지 6일간 大田에 위치한 C文化空間에서 제12회 建築士設計作品展 및 제1회 新人·學生公募展의 忠南地域 巡迴展示會가 개최되었다.

전시회가 開幕되던 3월26일에는 忠清南道知事, 大田文化放送社長, 牧園大學長, 大田市부시장, 한국건축가협회 충남지부장,



會員自律淨化決議文簽名(부산지부)



거리질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美建會 회원들(인천지부)



87년도 建築業務懇談會(광주지부)



김양배 광주직할시장이 작품전시회에 참석 축사를 하는 모습(광주지부)

협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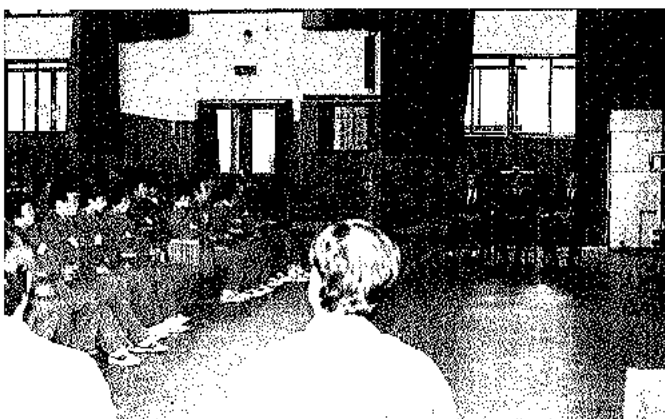
작물전시회 개막테이프 절단 광경(충남지부)



자매마을에 새마을사업지원금 전달(전남지부)



全錫洪 全羅南道知事와의 간담회(전남지부)



건축사보 및 보조원 교육(경북지부)

대한건축학회 충남지부장이 참석하여 개막식을 빛내 주었으며 大田日報(3월26일)와 MBC-TV(3월26일 저녁6시50분 지방뉴스 및 3월27일 밤9시40분 지방뉴스) KBS-TV(3월27일 저녁7시20분 지방뉴스)가 전시회 개최소식을 각각 보도하였다.

한편 축하회분을 보내주신 분은 다음과 같다.
목원대학교, 충남대학교 공대학장, 대한건설협회 충남지부장, 대한건축학회 충남지부장, 한국건축가협회 충남지부장, 남진정화건설

全羅南道支部

지부장 金仁模

建築業務 연찬회 개최

3월17일 順川市廳 회의실에서 지부소속 회원 및 직원 34명과 전라남도 건축관계공무원 31명 등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建築行政 健全化對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연찬회는 식순에 따라 건축행정 건설화대책결의문 낭독, 순천시장의 환영사, 주택과장의 훈시, 金仁模 지부장의 인사, 주택행정제정의 建築行政健全化對策推進 指針 시달, 市群당계장의 市務事例발표가 있었으며 지부회원들의 건의와 질의를 끝으로 폐회되었다.

姉妹結緣마을 지원

4월2일 지부장을 비롯 간사 감사 분소장 및 사무국장 등 10명이 姉妹結緣마을인 함평군 나산면 신평리 신촌부락을 방문하고 새마을사업 지원금 30만원을 전달하였다.
새마을지도자와 이장 마을주민 등 18명으로 부터 영접을 받은 일행은 마을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마을을 두루 살펴 보았다.

道知事와 懇談會

4월2일 전라남도청 상황실에서 全錫洪 道知事와 관계 공무원 22명, 지부회원 및 사무국 직원 37명 등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내 건축사의 권익신장 등 제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는 도지사 인사, 지부장 인사, 슬라이드를 통한 87주요업무 계획설명·공영화중장기 계획 소개, 건의사항 협의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慶尙北道支部

지부장 金永吉

補助員教育實施

2월23일~25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 農民敎育院에서 도내 건축사무소에 재직중인 建築士補助 및 補助員 1백66명에게 국민정신교육 9대덕목 등 정신교육과 건축행정 및 건축인의 진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濟州道支部

지부장 白亨哲

「푸른하천가꾸기」성금 기탁

3월31일 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南洋放送(MBC)에서 주관, 추진중인 水道民 푸른 하천 가꾸기 事業에 참여기로 협의한 바에 따라 4월3일 10구좌반 50만원을 남양방송주식회사(MBC)에 기탁하였다.
특히 金石崙 간사는 개별적으로 50만원을 MBC에 기탁하였으며 지부 및 金石崙 간사의 기탁 내용은 4월4일 저녁 7시38분 지방뉴스시간에 방영되었다.

定 款

개정 : 1987. 3. 27

◇ 개정이유

현 정관은 통합예산 체제에 의한 협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방화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협회 운영도 지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예산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자 관개 규정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본협회 사업에 건축사 연금 제도 신설(제5조 제2항)
나. 추대회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총회에서 추대(제7조 제2항1호)
다. 감사는 감사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함(제14조 제4항)
라. 본 협회 정기총회를 매년 10월중에 소집하던 것을 매년 11월에 소집하는 것으로 변경(제20조제4항)
마. 총회소집은 최소한 10일전에 통지 및 신문공고로 7일전으로 변경(제21조 제2항)
바. 본 협회 총회에서 전국 실적회비 징수율 결정에 대한 의결사항신설(제22조 제1항5호)
사. 본 협회 총회의결 사항중 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건축사연금 규정삼입(제22조 제7호)
아. 지부의 사업계획 및 보고서 예산 및 결산서를 총회에 보고사항신설(제22조 제2항)
자. 위원회 통폐합(편찬, 홍보위원회, 법제위원회 등) 현행 8개위원회에서 6개위원회로 축소(제25조)
차. 사무처 기구중 일부 축소(홍보담당, 법규담당 삭제)(제27조 제2항)
카. 협회 재정에 사업수입 중 내용 명문화(제29조 제1항 제5호 나열)
타. 협회 재정을 임회비, 월정회비, 실적회비의 전국 징수율을 총회에서 정하고 찬조회비, 사업수입, 수수료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함(제29조 제2항)
파. 본협회 회계중 당해 년도중에

확정된 수입금과 지출금은 수납 및 지출은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를 1월 20일까지로 변경(제30조 제1항)
하. 지부 사업에 대한 명문화(제32조)
가. 부지부장 제도 신설 및 간사수 조정과 지부감사를 감사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제32조 제1항)
나. 부지부장제도 신설로 인하여 지부장 유고시 부지부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제2항)
다. 지부 임원의 직무중 감사 및 분소장은 간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신설(제34조 5항)
라.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란에 부지부 부지부장 삼입(제36조)
마. 지부회의에 총회를 지부 총회로 명문화(제37조)
바. 지부 정기총회를 매년 11월중에 소집하던 것을 매년 10월중에 소집일정 변경(제38조)
사. 지부 총회에서 지부 실적회비 징수율의 결정 사업계획 보고서, 예산 및 결산의 의결 사항 신설(제40조)
야. 지부총회소집 일정과 신문공고 사항 삼입과 성원 사항 세문화(제41조 제1항)
자. 지부에도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43조제1항1호)
차. 지부위원회 구성 사항 신설(제44조)
카. 지부사업을 수행하고자 할시는 회장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보고토록 함(제48조)
타. 지부의 재정은 실적회비, 찬조회비, 및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파. 회비 송금 사항신설(제51조)
하. 지부결산서를 매년 1월 말일까지 작성하는 것을 매년 2월10일까지로 하고 결산서를 지부 임시총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53조)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5조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②항을 ③항으로 제③항을 제④항으로 한다.

② 본 협회는 건축사 연금제도를 두며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제①항제1호중 “정회원으로 총회에서 추대 받은 자”를 “정회원으로

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④항중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 및 회계사무를 감시하며 이를 총회에서 보고한다”를 “감사는 감사 규정에 의거 본협회의 업무 및 회계 사무를 감시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로 한다.

제20조 제④항중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를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로 한다.

제21조 제②항중 “10일전”을 “7일전”으로 하고 “회원에게”를 “대의원에게”로 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 및 보고 사항)”으로 한다.

○제①항 “제5호”로 “전국실적회비 징수율의 결정”을 신설한다.

○“제5호”를 “제①항 제6호”로 한다.

○제6호중 “감사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하고”를 제①항 제7호로 하여 “감사규정 및 건축사 연금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다.

○제 “7호”를 “제①항8호”로 한다.

○제2항으로 “지부의 사업계획 및 보고서 예산 및 결산서는 총회에 보고 한다”를 신설한다.

제24조 제②항중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사항과 제2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를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사항과 제22조 제7호 단서의 규정에”로 한다.

제25조 “제2호의 편찬위원회”를 “편찬홍보위원회”로 하고, “제4호의 법규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7호 제8호를 삭제하고 제6호로 연수위원회를 신설하고 “제9호”를 “제7호”로 한다.

제27조 제②항중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사무처장 밑에 홍보담당, 법규담당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를 “사무처장 1인과 사무처장 밑에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 “제①항 5호의 나”의 회관 임대료(은행, 카페, 식당) 및 기타 문화서비스(강당, 전시장) 수입”을 “회관 임대료 수입 및 기타 문화서비스 수입”으로 한다.

제2항중 “입회비 월정회비, 실적회비의 징수율 또는 징수금액은 매년 총회에서 정하며 예산 승인시 병행하여 정하며 찬조회비, 사업수입 수수료 등의 징수율 또는 징수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를 “입회비 및 월정회비의 징수 금액과 지부에서 정회원이 업무실적에 따라 수납하는 실적회비의 전국징수율 (타지부회원 도서신고시 전국회원이 동일하게 납부하는 징수율)은 매년 총회에서 정하며 찬조회비 사업수입, 수수료 등의 징수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로 한다.

제30조 제①항중 “다음 년도 1월31일까지로 한다”를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축 및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2. 건축 시공 기술에 관한 지도·감정
3.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업무윤리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6. 본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간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 제①항중

제②호로 부지부장: 1인을 신설

제②호 간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인원

가. 회원 100명 이내 지부 3명

나. 회원 101명~300명 지부 4명

다. 회원 301명~500명 지부 5명

라. 회원 501명이상 지부 7명을

“제3호로 하여 간사: 소속 정회원수를 기준하여 정하며 100인 미만의 지부는 3인으로 하고 10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을 더 선출하되 총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4호로 “감사 2인”을 신설한다.

제3호를 제5호로 한다.

제②항중 지부 및 분소의 업무와 회계 사무에 대한 지부 자체의 감사업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부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부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하여 제②항중

“지부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간사가 이를 대행한다”를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⑤항으로 감사 및 분소장은 간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의할 수 있다는 신설한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하여 제①항중

“지부장 및 간사, 지부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를 “지부장, 부지부장 및 간사, 지부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37조를 제38조로 하여 제1호중

“총회”를 “지부총회”로 한다.

제38조를 제39조로 하여 제①항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를 “지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②항중 “총회는 지부회원으로 구성한다”를 “지부총회는 지부소속회원으로 이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③항중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를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에게 보고후 소집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를 제40조로 하여 제2, 3,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원 및 대의원 개선
2. 기타 간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1. 임원 및 대의원의 개선
2. 사업계획 및 보고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지부 실적회비 징수율의 결정
4. 기본 재산의 설치 및 처분
5. 기타 간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0조를 제41조로 하여 “총회는 지부장이 소집하며 성원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회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지부의 총회는 소속된 정회원이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정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지부의 총회는 소속된 정회원이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할 수 있다”를 “① 지부총회는 지부장이 소집하며 최소한 7일전에 지부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한 문서로써 회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로 한다.

② “성원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회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지부의

총회는 소속된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정회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지부의 총회는 소속된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간사회) 간사회의 소집, 성원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를 제43조로 하여 제①항중

“지부에는 설계도서 검토위원회를 둔다”를 “지부에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윤리위원회
2. 설계도서검토위원회
3. 기타 간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명을 두되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성원 및 의결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한 간사회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 각종 위원회의 규정은 협회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를 제45조로 하여 제②항중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를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를 제48조로 하여 “지부가 승인된 당해년도 운영계획에 의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실시 10일전에 추가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서를 갖추어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지부가 총회에서 승인된 당해년도 사업계획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실시 10일전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본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종목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47조를 제50조로 하여 제①항 “지부의 재정은 본협회에서 배정하는 예산으로 충당한다”를 “지부의 재정은 실적회비, 찬조회비 및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실적회비: 정회원이 업무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회비
2. 찬조회비: 찬조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기타 찬조금

3. 사업수입

가. 도서출판에 따른 광고료 및 기타 사업의 부대수입

나. 회관임대료 수입

4. 수수료: 감정 및 제증명 수수료

5. 기타수입: 기타 잡수입

제②항중 지부에 배정하는 예산은 협회 정기총회에서 정한다를 “지부 실적회비 징수율은 매년 지부총회에서 정하되 찬조회비, 사업수입, 수수료 등의 징수 금액은 간사회에서 정한다”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비송금) 지부에서 수납된 임회비, 월정회비는 매월 말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10일까지 본협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48조를 제52조로 하여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부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49조를 제53조로 하여 “지부장은 매년 1월말일까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지부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지부장은 매년 2월10일까지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2월말까지 지부 임시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87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제 7 조제 2 항제 1 호, 제 14 조제 4 항, 제 20 조제 4 항, 제 21 조제 2 항, 제 22 조제 1 항제 5 호 · 제 7 호 · 제 2 항, 제 29 조, 제 39 조, 제 41 조, 제 50 조는 198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 25 조, 제 27 조, 제 30 조, 제 32 조 내지 제 34 조, 제 43 조, 제 44 조, 제 48 조, 제 51 조 내지 제 53 조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사규정

개정: 1987. 3. 27

■ 개정이유

협회의 감사업무를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감사와

지부감사로 구분명시하고 이에 따른 감사의 업무 및 기능을 정비 보완 하였으며 피감사처의 수감업무와 보고 체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감사는 본부감사와 지부감사로 구분함. (제 3 조)

나. 감사는 협회의 의결기관 및 사무 집행기구로 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수행시설 (제 5 조)

다. 감사의 권한 및 의무조항 신설 (제 7 조, 제 8 조)

라. 재심청구에 대한 감사의 조치 (제 2 조제 2 항)

마. 사무처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고 또는 외부감사기관 등으로 부터 감사를 받을때 회장 또는 지부장은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제도신설 (제 14 조, 제 21 조)

감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현행과 같음)

제 2 조 (정의) (현행과 같음)

제 3 조 (구성 및 기능) ① 감사는 본부감사와 지부감사로 구분한다.

1. 본부감사: 본 협회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말한다.

2. 지부감사: 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말한다.

② 감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업무

2. 회계업무

3. 관리업무

4. 기타 정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 조 (감사의 종류)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 정기감사라 함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수시감사- 수시감사라 함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회장 또는 지부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감사를 말하며 이 감사는 특수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 5 조 (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협회의 의결기관 및 사무집행기구로 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감사의 협조) 피감사처는 감사가

요구하는 서류 및 기타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사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 (감사의 권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답변 요구

3. 회계업무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 자료 징구

4. 기타 감사업무상 필요한 사항

제 8 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 등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지독한 기밀을 공개하거나 이를 악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 기능을 위축 또는 침체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본부감사

제 9 조 (기능) 본부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본 협회 및 각 시도지부와 분소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 10 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감사 결과에 의한 시정 및 건의사항은 그 조치를 위하여 이를 회장 및 관계 지부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조치케 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 또는 관계 지부장에게 시정, 변상, 징계, 경고 및 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시정보고) 전조에 의한 시정 통보를 받은 회장은 지정된 기일내에 시정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지부장은 시정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재심의 요구) ① 회장 및 관계 지부장은 감사처분에 의한 시정조치 지시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 지시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 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재심의를 요구받은 감사는 1월 이내에 재심의 요구서를 검토하여 처분 지시 변동이나 기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감사계획서에는 피감사처, 감사기간, 감사사항, 감사자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확정된 감사계획을 실시 10일전에 피감사처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보고 등)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고(금전, 물건의 망실 등)가 발생하였을 때.
2. 외부감사 기관이나 수사 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았을 때.
3. 지부장으로 부터 전기 각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제3장 지부가

제15조(기능) 지부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당해지부 및 분소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16조(감사보고) 감사는 전조에 의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회장 및 본부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감사결과에 의한 시정 및 건의사항은 그 조치를 위하여 이를 당해 지부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조치케 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부장에게 시정, 변상, 징계, 경고 및 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시정보고) 전조에 의한 시정 통보를 받은 지부장은 지정된 기일내에 시정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청구) ① 지부장은 감사 처분에 의한 시정조치 지시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지시가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받은 감사는 1월이내에 재심의 요구서를 검토하여 처분지시 변동이나 기각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감사계획서에는 피감사처, 감사기간, 감사사항, 감사자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은 확정된 감사계획을 실시 10일전에 피감사처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사고보고 등) 지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고(금전, 물건의 망실 등)가 발생하였을 때.
2. 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았을 때.

제4장 세 칙

제22조(세칙)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 1987. 3. 27

◇ 주요골자

가. 협회에는 중앙윤리위원회를 두고 지부에는 지부윤리위원회를 둔(제2조) 나. 중앙윤리위원회의 및 지부윤리위원회의 직무구분(제11조, 제25조) 다. 복심제도 운영에 대한 재심의 절차 및 결정(제21조) 라. 징계요청내용에 대한 수락여부의 결정신설(제22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협회에 중앙윤리위원회와 지부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정화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원 윤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책임) (현행 제6조와 같음)

제5조(자격상실) (현행 제9조와 같은)

제6조(징계의 요청) 회장 또는 지부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장은 전조의 징계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징계의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

② (현행 제12조 제2항과 같음)

제8조(의견 청취) ①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9조(징계의 기준) 회원의 징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장 중앙윤리위원회

제10조(구성)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정회원 또는 건축에 관한 법률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직무)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심의한다.

1. 지부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을 때.
2. 2개소 이상 지부 회원간의 분쟁이 연계되어 있을 때.
3. 관계 관청의 통고가 있을 때 (내용 선별후 지부 이첩)
4.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5. 지부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현행 제4조와 같음)

제13조(소집 및 결정) ① (현행 제5조 제1항과 같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서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15조(직무기피)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6조 (보선) 위원장 및 위원중 결원이 생김으로서 보선을 하여야 할 경우의 절차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결과보고)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8조(수락여부의 결정) ① 회장은 전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회회의 형의를 거쳐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수락여부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참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 1항의 결정사항을 확정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통고한 후 피징계자 및 각시도 지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수락여부) ①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며 결정사항의 내용 변경을 할 수 없다.

② (현행 제16조 제 2항과 같음)

제20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 결정서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재심의 절차 및 결정) ① 회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9조 제 2항 및 제20조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구 또는 재심청구에 있어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당초 징계처분 받은자에 대하여 재심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로 재심청구자 및 각시도지부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9조 제 2항 및 제20조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결정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결정할 수 없다.

⑤ 제19조 제 2항 및 제20조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절차에 있어서는 제 7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징계요청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의 결정) 회장은 징계요청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관계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류 보원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23조(징계발효) 징계 결정사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별지 제 2호서식”으로 통보함으로써 발효한다.

제 3 장 지부윤리위원회

제24조(구성) 위원장은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중에서 지부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제10조의 위촉기준에 따라 지부장이 위촉한다.

제25조(직무)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심의한다.

1. 정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2. 간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3. 관계 관청의 통고가 있을 때.
4.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부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소집 및 결정) ① 지부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8조(서기) ① 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둔다.

② 서기는 사무국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직무기피) ① 위원장 및 위원이 본 규정에 의한 사건에 관련되었을 때에는 사건심의 5일전에 위원 보임 요청서를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사건심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위원을 임시 보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부장이 이를 보임하여야 한다.

제30조(보선) 위원장 및 위원중 결원이 생김으로서 보선을 하여야 할 경우의 절차에 있어서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징계 결정사항을 “별지 제 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수락여부의 결정) ① 지부장은 전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간사회의 형의를 거쳐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간사회는 수락여부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참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지부장은 전조의 결정 사항을 확정할 때에는 피징계자 및 각시도 지부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수락여부) ① 간사회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확정하며 결정사항의 내용 변경을 할 수 없다.

② 지부장은 간사회가 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수락을 거부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34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 결정서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하여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요청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의 결정) 지부장은 징계요청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관계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류 보원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36조(징계발효) 징계결정 사항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장이 “별지 제 2호 서식”으로 통보함으로써 발효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사연금규정

개정 : 1987. 3. 27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 정관 제 5조에 그 근거를 두며 회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 수혜금을 지급하고 해당회원에 대하여 복지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금이라 함은 전회원이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퇴직연금과 복지연금을 말한다.

2. 퇴직연금이라 함은 사망 또는 폐업시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3. 복지연금이라 함은 만65세 이상 회원 또는 20년 이상 협회 가입회원으로서 신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폐업한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개정)

4. 사망위로금이라 함은 회원의 사망시 지급되는 위로금을 말한다. (신설)

5. 연금회비라 함은 소정의 연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6. 연금의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이라 함은 조성된 기금을 각 회원별로 등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증서로써 회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 4 조(기금의 조성) 협회는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의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회원이 납부하는 연금회비
2.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3. 기타 수입금

제 5 조(기금 조성기간) 기금 조성은 협회가 존속하는 한 연속적으로 하되 연금회비의 관리는 총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연금회비) 연금회비는 전조에 따른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회원의 설계 보수액 및 감리비와 감정수수료의 각 1%로 하며 설계 도서 신고나 감리비 및 감정료 수령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기금의 관리)

1. 연금회비나 기타의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당일증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 각 지부에서 수납된 수입금은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10일까지 본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온라인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송금을 원하는 지부는 따로 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3. 기금의 예치방법과 예치기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예치된 기금은 연금 지급 이외의 타용도에서 사용할 수 없다.

5.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기금은 신탁예금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기로 하고, 입·출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공동 관리하게 된다. (개정)

6. 협회 정관에 의한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총회가 결의하는 데 따른 책임을 진다.

제 8 조(회계)

1.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2.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그 시기는 1월 1일로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기금관리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매회계년도 별도 예산과 결산을 따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금의 관리에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회계규정에 따른다.
5.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협회 감사는 물론 별도로 공인회계사등 전문인의 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 3 장 연금의 배당 및 지급

제 9 조(연금의 배당)

1. 조성된 기금은 매회계년도 별도 결산을 하여 회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배당할 때에는 연금 배당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배당기준)

1. 배당이 완료된 기금에서 발생된 이식은 기 배당금액 비율로 당해년도에 배당을 받은 회원에게만 배당한다.
2. 기타 배당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당해 기간중 무실적자는 배당에서 제외한다.

나. 당해 회계기간중 휴업을 하거나 협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일수는 배당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다. 신입회원은 연금회비를 납부한 다음달로부터 배당한다.

라. 배당받을 회원의 유고시에는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 11 조(퇴직연금의 지급)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연금의 지급액은 이미 배당된 증서의

표기금액과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해년도분의 중도 배당액과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당해년도분의 중도 배당액은 직전년도 배당액을 당해년도 경과 월수로 등분하여 계산한다.

3. 당해년도 경과 월수는 당해년도의 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제 12 조(복지연금의 지급) 복지연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연금의 지급 금액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하되 지급초년도는 월 60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입년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text{복지연금 지급액} = \text{기준액} \times \frac{\text{가입년수}}{20})$$

2. 복지연금은 퇴직연금 일시 지급시까지 지급할 수 있다.

3. 복지연금 수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수령한 복지연금액은 배당증서 액면가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신설)

4. 복지연금 수혜자는 배당증서를 협회에 보관시켜야 한다. (신설)

제 13 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사망위로금은 배당금 총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복지연금 수혜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제 14 조(연금운영 위원회의 설치) ① 이 규정에 의한 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1. 연금회비 납부 : 1987년 1월 1일
2. 퇴직연금 지급 : 1988년 1월 1일
3. 복지연금 지급 : 1990년 1월 1일
4. 사망위로금 지급 : 1990년 1월 1일 (신설)

제2회 신인·학생 건축설계작품 현상공모

본협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신인 및 학생들의 건축설계작품
현상공모를 통하여
우리나라 건축문화예술 발전과
새로운 건축풍토 조성 및
후진양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인 및 학생건축설계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니
신인 및 학생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부 문

○신인 : 지체부자유자 복지시설 및 기타,
(도심지내 소규모건축물 연면적 1,000㎡이하)

○학생 : 제한없음(자유)

■ 지 격

○신인 : 대학원생과 대학 및 전문대학건축과 졸업후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제외)

○학생 : 각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과 재학생

■ 후원 : 건설부

■ 제작출품요령

○패널규격 : 90×90cm(가로×세로, 규격 엄수)

○출품내용 : 1 작품당 패널 3 개 이내 및 간략한 작품설명서

○응모기간 : 1987. 6월중

○출품기간 : 1987. 9월중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본부 및 각시·도지부사무국

○기 타 : 모형출품은 금지하며, 모형사진과 도면을
사진으로 현상하여 패널화하지 말 것.

■ 작품전시

○전시기간 : 1987. 10~1988. 4.

○전시장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인천,
춘천에서 '87건축사설계작품순회전과 동시에 전시.

■ 시상내용

○신인

금 상 : 1 점(기념메달 및 상패, 상금)

은 상 : 1 점(기념메달 및 상패, 상금)

동 상 : 1 점(기념메달 및 상패, 상금)

장려상 : 다수(기념메달 및 상패)

가 작 : 다수(기념메달 및 상패)

○학생

금 상 : 1 점(기념메달 및 상패, 상금)

은 상 : 1 점(기념메달 및 상패, 상금)

동 상 : 1 점(기념메달 및 상패, 상금)

장려상 : 다수(기념메달 및 상패)

가 작 : 다수(기념메달 및 상패)

■ 심사발표 : 1987. 10월중

■ 시 상 : 1987. 10월중

※ 문의처 : 대한건축사협회출판사업부

(전화 : 581 : 5711~4)